미래를 여는 현력교육

2026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기준 재정공시

2026. 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목차

Ⅰ. 기본편제 및 일반현황 ····· 3

Ⅱ. 공통공시 ····· 9

1. 공통공시 총괄 ····· 9
2. 세입·세출 운용상황 ····· 12
3. 재무제표 ····· 45
4. 채권관리 ····· 49
5. 기금운용 ····· 52
6. 공유재산 및 물품 ····· 55
7. 지역통합재정통계 ····· 62
8. 성인지 결산 ····· 63
9. 예산 편성 기준별 운영상황 ····· 64
10. 재정운용상황 ····· 65
11. 재정건전화 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해당없음) ····· 79
1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해당없음) ····· 79
13.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80
14. 지방보조금(민간보조) ····· 117
15.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22

Ⅲ. 특수공시 ····· 138

[붙임] 1. 시·도교육청 개별공시 예·결산 공시항목 비교

2. 지방교육재정 공시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기준 개별공시 기본 편제

■ 결산기준 재정공시 기본편제는 **일반현황, 공통공시, 특수공시**로 구분

구분		결산 기준 (82개)	
		분류	항목명
일반현황		1-1. 학교수 및 학급수	1. 학교수 및 학급수(공·사립)
		1-2. 학생수	1. 학생수(공·사립)
		1-3. 교육행정기관수	1. 교육행정기관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1-4. 교직원수	1. 교직원수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공통공시	**총괄**	1. 공통공시 총괄	1. 공통공시 총괄
	세입·세출 운용상황	2-1. 재정규모	1. 총계 2. 순계 3. 통합재정규모
		2-2. 교육비특별회계 장별 세입	1. 총괄 2. 이전수입 3. 자체수입 4. 차입 및 기타 5. 내부거래
		2-3.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세출	1. 정책사업별 세출 2. 세부사업별 세출
		2-4.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1. 총괄 2. 인건비 3. 물건비 4. 이전지출 5. 자본지출 6. 상환지출 7. 전출금등 8. 예비비및기타 9. 내부거래
		2-5. 성과보고서	1. 총괄 2.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재무제표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2-1. 기능별 재정운영표 2-2. 성질별 재정운영표 3. 순자산변동표
	채권관리	4. 채권관리	1. 총괄 2. 채권 연도별 현황
	기금	5. 기금운용	1. 기금 조성 총괄 2.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 3. 기금 연도별 현황
	공유재산	6. 공유재산 및 물품	1-1. 공유재산 현재액 1-2. 물품 현재액

구분	결산 기준 (82개)	
	분류	항목명
		2-1. 공유재산 연도별 현황 2-2. 물품 연도별 현황 3. 폐교자산 4. 폐교자산 연도별 활용률
지역통합 재정통계	7. 지역통합재정통계	1. 지역통합재정통계
성인지	8. 성인지 결산	1. 성인지 결산
예산 편성 기준별 운영 상황	9. 예산 편성 기준별 운영상황	1. 업무추진비
재정운용 상황	10-1. 재정지표	1. 재정자주도 2. 통합재정수지 3. 행정운영경비 비율 4. 예비비 비율 5. 기금전출금 비율
	10-2. 지방부채	1. 통합부채 2. 우발부채 3. 지방채 부담률 4. 민간투자사업(BTL)
	10-3. 재정분석	1. 재정분석
	10-4.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1. 감사원 및 교육부 등 각종 감사결과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10-7. 예산 집행비율	1. 예산 집행비율
재정건전화 관리계획	11. 재정건전화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2.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3-1. 투자심사 대상사업	1. 투자심사 대상사업
	13-2. 지방채 발행사업	1. 지방채 발행사업
	13-3. 민간투자사업(BTL)	1. 민간투자사업(BTL)
	13-4. 보증채무사업	1. 보증채무사업 2. 보증채무연도별 현황 3. 보증채무 세부내역
지방 보조금	14. 지방보조금(민간보조)	1. 지방보조금(민간보조)연도별 현황 2.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집행내역

구분		결산 기준 (82개)	
		분류	항목명
			3. 지방보조금(민간보조)성과평가 결과 4. 지방보조금(민간보조)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1. 지자체 법정이전수입	1. 법정이전수입 연도별 현황 2. 법정이전수입 미전입내역
		15-2. 학교회계전출금	1. 총괄 2. 공립학교 전출금(성질별) 3. 공립학교 전출금(학교급별) 4. 사립학교 지원금(성질별) 5. 사립학교 지원금(학교급별)
		15-3.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1.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15-4. 이월액	1. 이월액
		15-5. 집행잔액	1. 집행잔액
		15-6. 금고 현황	1. 금고지정 현황 2. 금고 협력사업비 현황
		15-7. 연말지출 비율	1. 연말지출 비율 2. 연말지출 연도별 현황
특수공시		○ 당해 시·도교육청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및 사업 등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선정한 공시항목(가급적 3건 이상)	

■ 일반현황

1. 학교수 및 학급수

(단위 : 개교, 학급)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합계	**2,147**	**40,722**	**2,151**	**40,490**	**2,125**	**39,686**	**2,109**	**38,793**	**2,095**	**37,808**
공립	**1,261**	**29,065**	**1,283**	**29,011**	**1,279**	**28,351**	**1,280**	**27,629**	**1,284**	**26,886**
사립	**886**	**11,657**	**868**	**11,479**	**846**	**11,335**	**829**	**11,164**	**811**	**10,922**
유치원 소계	787	3,704	788	3,704	769	3,618	754	3,576	740	3,510
공립	274	1,193	293	1,269	296	1,255	298	1,263	301	1,275
사립	513	2,511	495	2,435	473	2,363	456	2,313	439	2,235
초등학교 소계	605	18,337	607	18,308	606	17,825	607	17,376	607	16,868
공립	567	17,561	569	17,529	568	17,043	569	16,589	569	16,080
사립	38	776	38	779	38	782	38	787	38	788
중학교 소계	387	8,519	388	8,455	388	8,314	388	8,189	388	8,016
공립	278	6,418	279	6,382	279	6,273	279	6,183	279	6,046
사립	109	2,101	109	2,073	109	2,041	109	2,006	109	1,970
고등학교 소계	317	9,134	317	8,996	317	8,902	315	8,704	315	8,467
공립	117	3,345	117	3,282	117	3,239	115	3,140	115	3,032
사립	200	5,789	200	5,714	200	5,663	200	5,564	200	5,435
특수학교 소계	29	755	29	755	29	753	29	755	29	754
공립	11	357	11	359	11	359	11	360	11	359
사립	18	398	18	396	18	394	18	395	18	395
기타학교 소계	22	273	22	272	16	189	16	193	16	193
공립	14	191	14	190	8	97	8	94	9	94
사립	8	82	8	82	8	92	8	99	7	99

※ 해당연도 4. 1.자 교육통계연보 기준
※ 기타학교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 분교장 수는 학교수 본 수에 불포함

2. 학생수

(단위 :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899,956**	**877,255**	**852,152**	**830,322**	**805,653**
공립	**628,317**	**615,296**	**595,388**	**575,124**	**553,688**
사립	**271,639**	**261,959**	**256,764**	**255,198**	**251,965**
유치원 소계	69,958	66,524	62,880	61,128	59,392
공립	16,724	15,971	14,286	13,827	13,716
사립	53,234	50,553	48,594	47,301	45,676
초등학교 소계	398,203	392,340	379,234	361,970	339,358
공립	377,124	370,770	357,553	340,193	317,644
사립	21,079	21,570	21,681	21,777	21,714
중학교 소계	208,770	204,443	197,754	194,850	198,681
공립	158,324	154,871	149,766	147,964	150,967
사립	50,446	49,572	47,988	46,886	47,714
고등학교 소계	214,646	205,751	204,119	205,635	201,430
공립	72,407	70,108	70,288	71,186	69,398
사립	142,239	135,643	133,831	134,449	132,032
특수학교 소계	3,999	3,996	4,006	4,040	4,037
공립	1,731	1,757	1,800	1,847	1,850
사립	2,268	2,239	2,206	2,193	2,187
기타학교 소계	4,380	4,201	2,572	2,699	2,755
공립	2,007	1,819	108	107	113
사립	2,373	2,382	2,464	2,592	2,642

※ 해당연도 4. 1.자 교육통계연보 기준

3. 교육행정기관수

(단위 : 개)

2021				2022				2023				2024				2025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지원청	소속기관			지원청	소속기관			지원청	소속기관			지원청	소속기관			지원청	소속기관
1	29	11	0	1	29	11	0	1	29	11	0	1	29	11	0	1	29	11	0

※ 해당연도 4. 1.자 교육통계연보 기준

4. 교직원수

(단위 :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A+B+C+D)	**84,199**	**84,823**	**83,695**	**81,815**	**81,264**
교원(A)	74,411	74,371	73,704	72,378	71,105
공립	50,705	50,875	50,361	49,324	48,377
사립	23,706	23,496	23,343	23,054	22,728
교육전문직원(B)	561	595	588	588	592
지방공무원(C)	7,212	7,347	6,747	6,773	6,801
사립학교 직원(D)	2,015	2,510	2,656	2,076	2,766

※ 해당연도 4. 1.자 교육통계연보 기준
※ 현원 기준, 기간제 교원 포함, 학교회계직원 등은 제외
※ 사립유치원 직원은 사립학교 직원 수에 불포함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공시(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공시 제1호(2026. 08.)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 (인)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살림규모(이전수입+자체수입+차입 및 기타+내부거래)는 12조 6,9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0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이전수입(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은 11조 5,348억 원입니다.
  ○ 자체수입(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은 1,438억 원입니다.
  ○ 차입은 0원이고 기타는 1조 195억 원입니다.
  ○ 내부거래는 0원입니다.

◈ 2025년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채는 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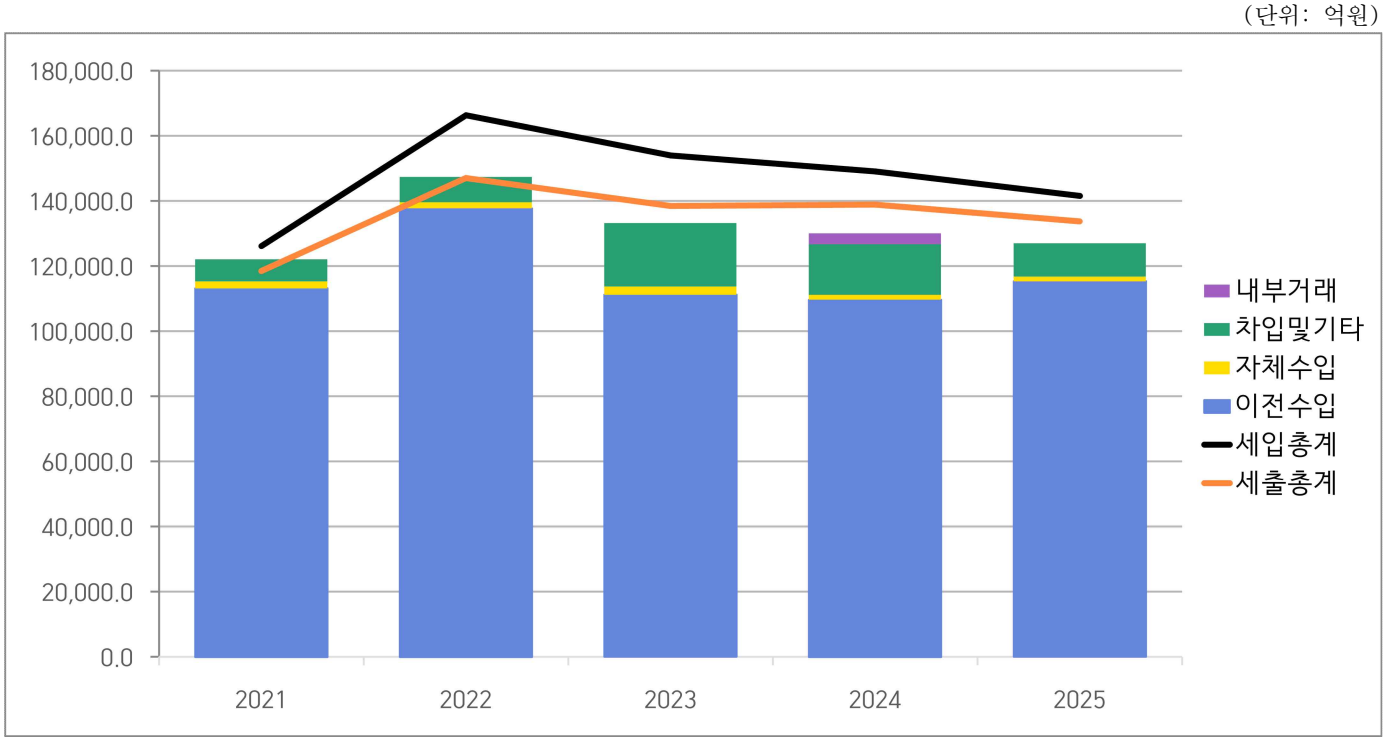
◈ 공유재산은 2025년도에 4,790억 원을 취득하고, 1,979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32조 5,455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교육비특별회계+기금)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896억 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은
  ◦ 세입 규모는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라 2023회계연도부터 감소 추세이며, 2025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3,106억원(2.4%) 감소하였습니다.
  ◦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90.9%) 자체수입이 1.1%에 불과하여 외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이며,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법정전입금 적기 전입 및 자체재원 증액 노력이 요구됩니다.
  ◦ 세출 측면에서 인건비가 7조 5,663억원으로 63.5%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큰 교육재정 구조상, 한정된 비경직성 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 살림살이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재정운영 결과		2024(A)	2025(B)	증감(C=B-A)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보증채무현재액	0	0	0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민간보조)	36,025	33,868	-2,15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자체법정이전수입	4,079,067	4,183,654	104,588
	학교회계전출금	4,646,019	4,428,270	-217,749
	사립학교법인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29.9	30.3	0.4
	이월액	718,084	490,742	-227,342
	집행잔액(불용액)	692,250	247,119	-445,131
	금고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연말지출 비율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채권	채권보유액	170,665	172,800	2,135
기금	기금현황	1,422,000	1,249,436	-172,565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현재액	32,264,378	32,545,529	281,151
	물품 현재액	75,837	74,650	-1,187
지역통합재정통계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 결산	성인지 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	업무추진비 집행비율	0.04	0.03	-0.01
재정운용상황	재정자주도	77.6	84.3	6.7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 기준)	-157,525	-93,126	64,399
	행정운영경비비율	67.4	69.0	1.6
	예비비비율	0.043	0.261	0.218
	기금전출금비율	0.000	0.000	0.000
	통합부채	506,943	511,771	4,828
	우발부채	9,800	9,886	86
	지방채부담률	0.0	0.0	0.0
	민간투자사업(BTL)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 집행비율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 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 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 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BTL)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공시항목의 금액은 백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단위 변환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이하는 절사하였습니다.
  ○ 공시항목의 금액은 단위 변환 시 내용의 계가 총계 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시항목의 비중, 비율, 증감률은 원 단위 금액을 기준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산정 표시하였습니다.
  ○ 공시항목의 비중, 비율 증감률은 단위 변환에 따른 변동 없이 원 단위 기준으로 산정된 값을 표시하였습니다.
  ○ 공시항목의 비중, 비율, 증감률은 매우 작을 경우 값이 양수인 경우에 0.0, 음수인 경우에 -0.0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n.go.kr) 2025년 결산 게시판(정보공개>재정현황>결산현황) 또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www.eduinfo.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세입·세출 운용상황

○ 본 항목은 시·도교육청의 회계연도별 세입·세출 운용 및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호
○ 해당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기준

2-1. 재정규모

■ 해당년도 세입·세출의 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1. 총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세입총계	**12,614,750**	**16,631,468**	**31.8**	**15,397,555**	**-7.4**	**14,906,727**	**-3.2**	**14,154,909**	**-5.0**
교육비특별회계	12,202,397	14,738,178	20.8	13,314,516	-9.7	13,008,758	-2.3	12,698,113	-2.4
기금	412,353	1,893,290	359.1	2,083,039	10.0	1,897,969	-8.9	1,456,796	-23.2
세출총계	**11,857,344**	**14,704,384**	**24.0**	**13,849,536**	**-5.8**	**13,891,476**	**0.3**	**13,377,137**	**-3.7**
교육비특별회계	11,445,002	12,811,043	11.9	11,766,498	-8.2	11,993,508	1.9	11,920,342	-0.6
기금	412,341	1,893,290	359.2	2,083,039	10.0	1,897,969	-8.9	1,456,796	-23.2

세입·세출총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총계는 14,154,908백만원이며 전년대비 751,818백만원으로 순감소함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총계는 13,377,137백만원이며 전년대비 514,339백만원으로 순감소함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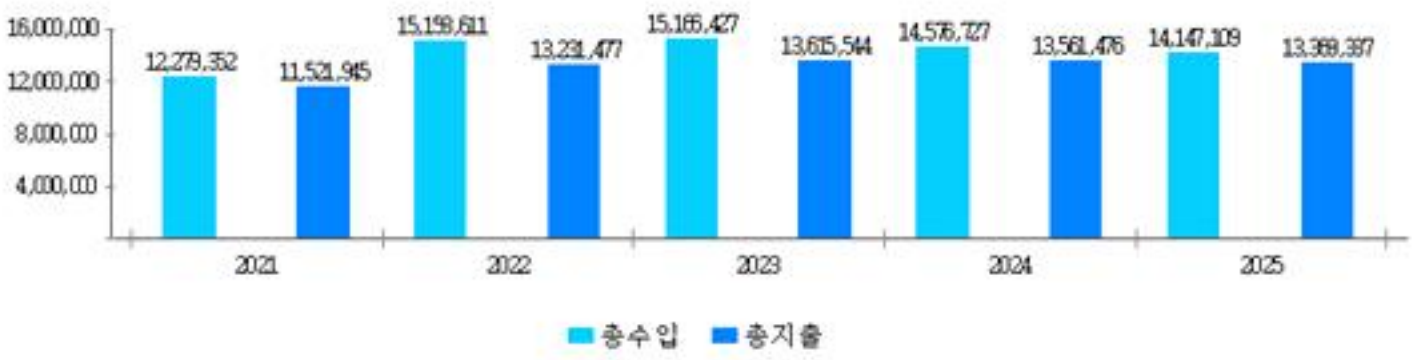
2-1-2. 순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입	**12,279,352**	**15,158,611**	**23.4**	**15,166,427**	**0.1**	**14,576,727**	**-3.9**	**14,147,109**	**-2.9**
교육비특별회계	12,202,397	14,738,178	20.8	13,314,516	-9.7	12,678,758	-4.8	12,698,113	0.2
기금	76,955	420,433	446.3	1,851,911	340.5	1,897,969	2.5	1,448,996	-23.7
총지출	**11,521,945**	**13,231,477**	**14.8**	**13,615,544**	**2.9**	**13,561,476**	**-0.4**	**13,369,337**	**-1.4**
교육비특별회계	11,109,604	11,338,186	2.1	11,535,370	1.7	11,993,508	4.0	11,912,542	-0.7
기금	412,341	1,893,290	359.2	2,080,174	9.9	1,567,969	-24.6	1,456,796	-7.1

총수입·총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총수입은 14,147,109백만원이며 전년대비 429,618백만원으로 순감소함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총지출은 13,369,337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92,139백만원으로 순감소함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1-3. 통합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세입총계(A=B+C)	**12,614,750**	**16,631,468**	**31.8**	**15,397,555**	**-7.4**	**14,906,727**	**-3.2**	**14,154,909**	**-5.0**
내부거래(B)	335,398	1,472,857	339.1	231,127	-84.3	330,000	42.8	7,800	-97.6
총수입(순계)(C=D+E)	12,279,352	15,158,611	23.4	15,166,427	0.1	14,576,727	-3.9	14,147,109	-2.9
통합재정수입(D)	11,536,888	13,996,621	21.3	11,438,957	-18.3	11,202,828	-2.1	11,709,858	4.5
보전수입(E)	742,464	1,161,990	56.5	3,727,470	220.8	3,373,899	-9.5	2,437,250	-27.8
세출총계(F=G+H)	**11,857,344**	**14,704,334**	**24.0**	**13,849,536**	**-5.8**	**13,891,476**	**0.3**	**13,377,137**	**-3.7**
내부거래(G)	335,398	1,472,857	339.1	233,992	-84.1	330,000	41.0	7,800	-97.6
총지출(순계)(H=I+J)	11,521,945	13,231,477	14.8	13,615,544	2.9	13,561,476	-0.4	13,369,337	-1.4
통합재정지출(I)	10,709,001	11,387,857	6.3	11,744,357	3.1	12,123,560	3.2	12,099,502	-0.2
보전지출(J)	812,944	1,843,619	126.8	1,871,187	1.5	1,437,917	-23.2	1,269,835	-11.7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총계는 전년대비 751,818백만원 순감소한 14,154,908백만원이며, 세입총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7,800백만원을 제외한 총수입(순계)은 14,147,109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총계는 전년대비 514,339백만원 순감소한 13,377,137백만원이며, 세출총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7,800백만원을 제외한 총지출(순계)은 13,369,337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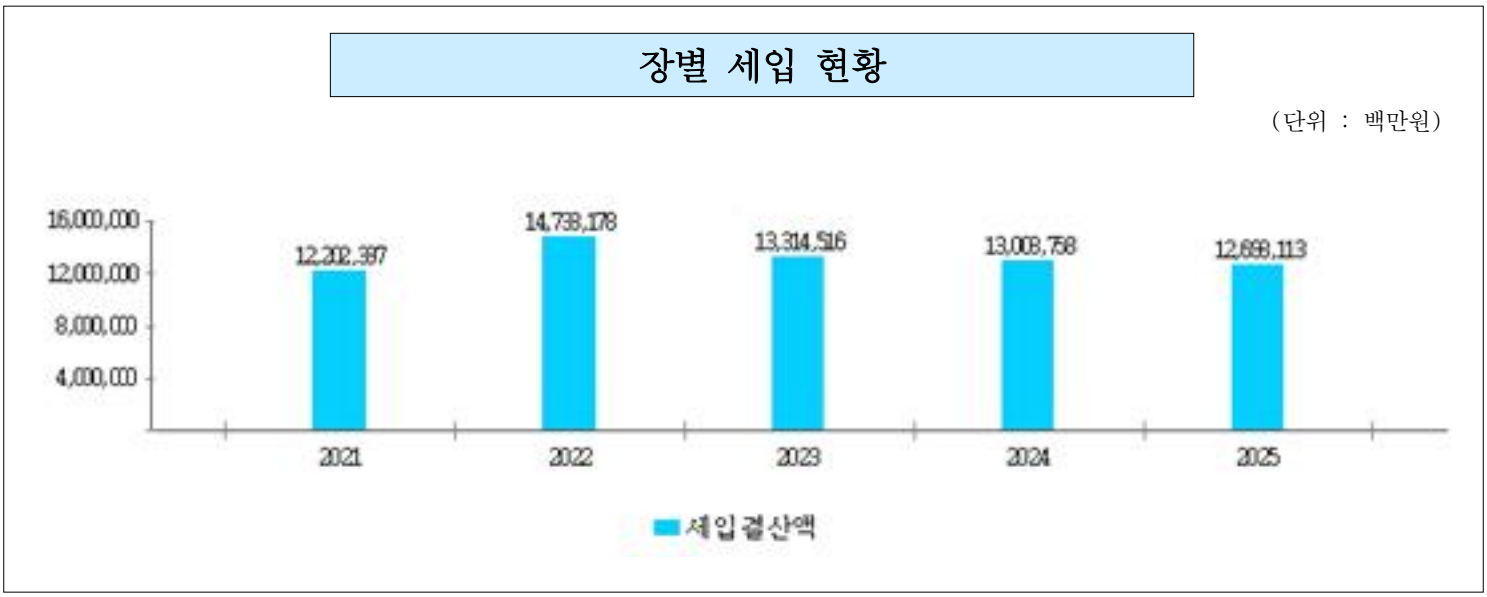
2-2. 교육비특별회계 장별 세입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연도별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입결산액	**12,202,397**	**100.0**	**14,738,178**	**100.0**	**13,314,516**	**100.0**	**13,008,758**	**100.0**	**12,698,113**	**100.0**
이전수입	11,320,595	92.8	13,773,118	93.5	11,120,692	83.5	10,964,741	84.3	11,534,826	90.8
자체수입	208,338	1.7	196,765	1.3	250,028	1.9	155,867	1.2	143,785	1.1
차입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673,464	5.5	768,294	5.2	1,943,795	14.6	1,558,151	12.0	1,019,502	8.0
내부거래	0	0.0	0	0.0	0	0.0	330,000	2.5	0	0.0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이전수입 11,534,826백만원, 자체수입 143,785백만원, 차입 0백만원, 기타 1,019,502백만원, 내부거래 0백만원으로 총 12,698,113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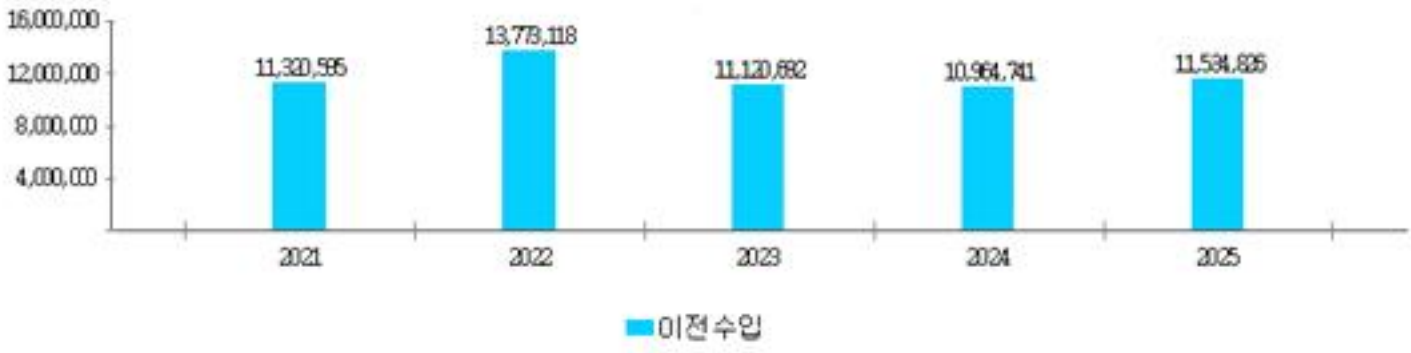
2-2-2. 이전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입결산액	12,202,397	100.0	14,738,178	100.0	13,314,516	100.0	13,008,758	100.0	12,698,113	100.0
이전수입(A=B+C+D)	**11,320,595**	**92.8**	**13,773,118**	**93.5**	**11,120,692**	**83.5**	**10,964,741**	**84.3**	**11,534,826**	**90.8**
중앙정부이전수입(B)	6,796,722	55.7	8,655,189	58.7	6,444,361	48.4	6,439,194	49.5	6,910,961	5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72,594	50.6	8,019,377	54.4	5,897,309	44.3	5,960,314	45.8	6,428,314	50.6
보통교부금	5,788,157	47.4	7,589,590	51.5	5,486,912	41.2	5,551,715	42.7	6,068,601	47.8
특별교부금	207,727	1.7	267,470	1.8	247,644	1.9	232,475	1.8	282,086	2.2
증액교부금	176,710	1.4	162,317	1.1	162,753	1.2	176,123	1.4	77,627	0.6
국고보조금	60,050	0.5	90,412	0.6	70,914	0.5	32,772	0.3	40,550	0.3
특별회계전입금	564,078	4.6	545,400	3.7	476,139	3.6	446,109	3.4	442,098	3.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C)	4,504,171	36.9	5,098,816	34.6	4,662,403	35.0	4,498,278	34.6	4,603,140	36.3
법정이전수입	4,137,623	33.9	4,651,503	31.6	4,264,388	32.0	4,079,067	31.4	4,183,654	32.9
지방교육세전입금	1,968,541	16.1	2,034,549	13.8	1,848,346	13.9	1,808,657	13.9	1,902,908	15.0
담배소비세전입금	261,754	2.1	266,449	1.8	275,335	2.1	259,320	2.0	239,292	1.9
시도세전입금	1,772,211	14.5	2,211,744	15.0	2,010,587	15.1	1,868,058	14.4	1,909,662	15.0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7,386	0.1	8	0.0	0	0.0	1,984	0.0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02,994	0.8	114,500	0.8	104,426	0.8	114,044	0.9	118,863	0.9
교육급여보조금	8,171	0.1	9,220	0.1	10,435	0.1	10,492	0.1	9,436	0.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567	0.1	15,034	0.1	15,258	0.1	16,512	0.1	3,493	0.0
비법정이전수입	366,548	3.0	447,313	3.0	398,014	3.0	419,211	3.2	419,485	3.3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34,695	1.9	278,421	1.9	240,713	1.8	238,396	1.8	248,556	2.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31,853	1.1	168,892	1.1	157,301	1.2	180,815	1.4	170,929	1.3
기타이전수입(D)	19,702	0.2	19,113	0.1	13,928	0.1	27,269	0.2	20,725	0.2
민간이전수입	15,346	0.1	15,008	0.1	9,963	0.1	19,141	0.1	16,810	0.1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356	0.0	4,105	0.0	3,965	0.0	8,129	0.1	3,916	0.0

이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570,085백만원 순증가한 11,534,826백만원임
○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항목은 6,910,961백만원(54.4%)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기타이전수입 항목은 20,725백만원(0.2%)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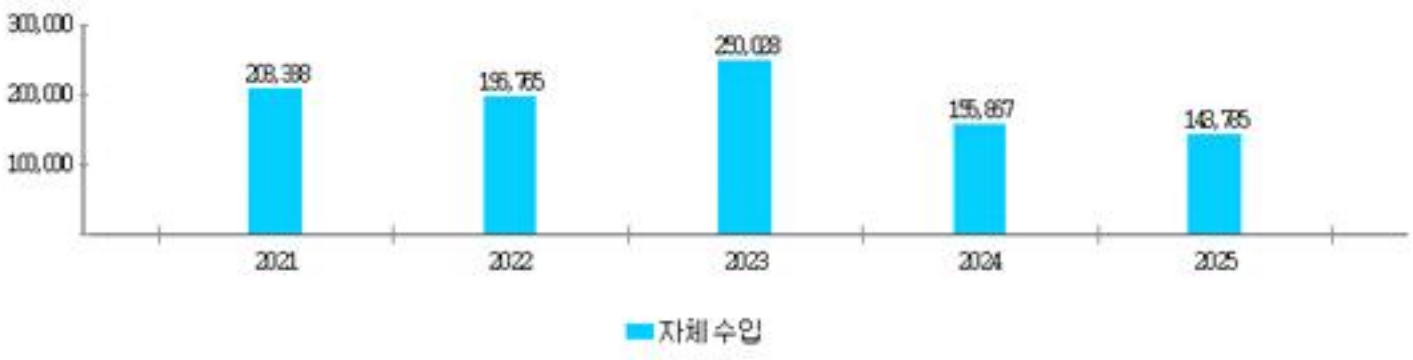
2-2-3. 자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입결산액	12,202,397	100.0	14,738,178	100.0	13,314,516	100.0	13,008,758	100.0	12,698,113	100.0
자체수입	**208,338**	**1.7**	**196,765**	**1.3**	**250,028**	**1.9**	**155,867**	**1.2**	**143,785**	**1.1**
입학금및수업료	155	0.0	17	0.0	2	0.0	2	0.0	1	0.0
사용료및수수료	3,781	0.0	5,339	0.0	5,795	0.0	7,384	0.1	6,997	0.1
자산수입	2,829	0.0	22,438	0.2	31,830	0.2	9,721	0.1	13,420	0.1
이자수입	6,265	0.1	19,560	0.1	44,866	0.3	26,351	0.2	20,327	0.2
기타수입 등	195,307	1.6	149,411	1.0	167,536	1.3	112,409	0.9	103,040	0.8

자체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2,081백만원 순감소한 143,785백만원임

○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 등 항목은 103,040백만원(0.8%)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입학금및수업료 항목은 1백만원 미만(0.0%)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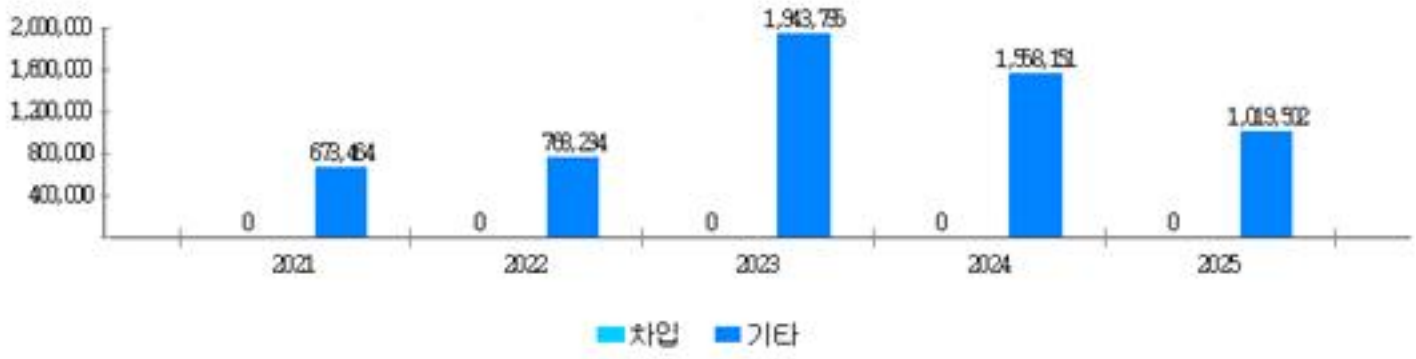
2-2-4. 차입 및 기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입결산액	12,202,397	100.0	14,738,178	100.0	13,314,516	100.0	13,008,758	100.0	12,698,113	100.0
차입및기타(A=B+C)	673,464	5.5	768,294	5.2	1,943,795	14.6	1,558,151	12.0	1,019,502	8.0
차입(B)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C)	**673,464**	**5.5**	**768,294**	**5.2**	**1,943,795**	**14.6**	**1,558,151**	**12.0**	**1,019,502**	**8.0**
전년도이월금	0	0.0	757,394	5.1	1,927,134	14.5	1,548,019	11.9	1,015,251	8.0
순세계잉여금	326,309	2.7	461,269	3.1	1,321,431	9.9	763,207	5.9	296,518	2.3
보조금사용잔액	0	0.0	0	0.0	3,560	0.0	1,323	0.0	649	0.0
이월금	347,155	2.8	296,125	2.0	602,144	4.5	783,489	6.0	718,084	5.7
금융자산회수	0	0.0	10,900	0.1	16,661	0.1	10,132	0.1	4,251	0.0

차입 및 기타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차입 및 기타는 전년대비 -538,649백만원 순감소한 1,019,502백만원임

○ 차입 및 기타 중 이월금 항목은 718,084백만원(5.7%)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보조금사용잔액 항목은 649백만원(0.0%)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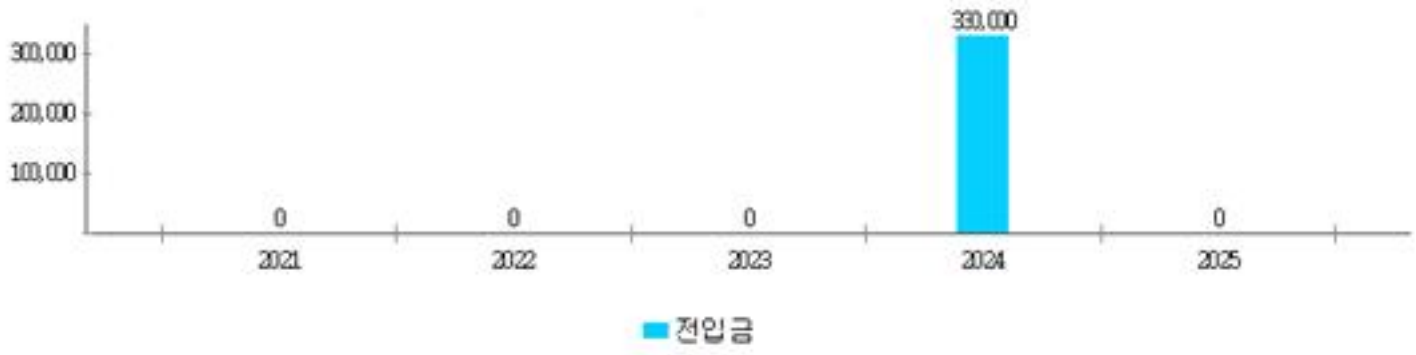
2-2-5. 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입결산액	12,202,397	100.0	14,738,178	100.0	13,314,516	100.0	13,008,758	100.0	12,698,113	100.0
내부거래	0	0.0	0	0.0	0	0.0	330,000	2.5	0	0.0
전입금	**0**	**0.0**	**0**	**0.0**	**0**	**0.0**	**330,000**	**2.5**	**0**	**0.0**
기금전입금	0	0.0	0	0.0	0	0.0	330,000	2.5	0	0.0
예탁금및예수금	**0**	**0.0**	**0**	**0.0**	**0**	**0.0**	**0**	**0.0**	**0**	**0.0**
예수금수입	0	0.0	0	0.0	0	0.0	0	0.0	0	0.0
예탁금회수	0	0.0	0	0.0	0	0.0	0	0.0	0	0.0

내부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30,000백만원 순감소한 0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2-3.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세출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 합니다. 최근 5개년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을 위해 집행한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3-1. 정책사업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유아및초중등교육	**10,708,876**	**93.6**	**5,784,422**	**45.2**	**5,827,185**	**49.5**	**5,938,736**	**49.5**	**5,732,266**	**48.1**
인적자원운용	4,944,785	43.2	61,671	0.5	67,119	0.6	68,242	0.6	64,145	0.5
교수학습활동지원	741,195	6.5	662,990	5.2	703,072	6.0	782,860	6.5	779,315	6.5
교육복지	1,472,672	12.9	807,153	6.3	767,205	6.5	861,322	7.2	848,579	7.1
보건급식	193,567	1.7	1,159,269	9.0	1,096,716	9.3	886,575	7.4	912,838	7.7
학교재정지원관리	2,102,014	18.4	2,249,533	17.6	2,285,902	19.4	2,297,700	19.2	2,302,901	19.3
학교시설여건개선	1,254,642	11.0	843,807	6.6	907,171	7.7	1,042,038	8.7	824,489	6.9
평생교육	**31,386**	**0.3**	**37,047**	**0.3**	**33,196**	**0.3**	**32,039**	**0.3**	**29,521**	**0.2**
평생교육	30,529	0.3	37,047	0.3	33,196	0.3	32,039	0.3	29,521	0.2
직업교육	858	0.0	0	0.0	0	0.0	0	0.0	0	0.0
교육일반	**612,557**	**5.4**	**1,778,758**	**13.9**	**509,656**	**4.3**	**280,982**	**2.3**	**272,812**	**2.3**
교육행정일반	128,143	1.1	143,371	1.1	205,501	1.7	200,902	1.7	199,846	1.7
기관운영	59,260	0.5	58,442	0.5	72,115	0.6	79,167	0.7	62,270	0.5
재무활동	425,154	3.7	1,576,945	12.3	232,040	2.0	913	0.0	10,696	0.1
예비비 및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92,184**	**0.8**	**43,283**	**0.3**	**45,307**	**0.4**	**15,917**	**0.1**	**20,400**	**0.2**
예비비및기타	92,184	0.8	43,283	0.3	45,307	0.4	15,917	0.1	20,400	0.2
인건비	**0**	**0.0**	**5,167,533**	**40.3**	**5,351,154**	**45.5**	**5,725,834**	**47.7**	**5,865,343**	**49.2**
인건비	0	0.0	5,167,533	40.3	5,351,154	45.5	5,725,834	47.7	5,865,343	49.2

※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 인건비 별도 관리 위해 인건비 부문 신설(2021년까지는 금액 없음)
※ 2021년 '예비비' 분야 및 부문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일반 부문 예비비 및 기타는 2021년부터 금액 없음
※ 2022년 유사성격 사업 통폐합, 상·하위 간 항목 정합성 개선 등을 위한 사업별 예산 재구조화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73,166백만원 순감소한 11,920,342백만원임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전년대비 206,471백만원(3.5%) 순감소한 5,732,266백만원임
- 평생교육 : 전년대비 2,518백만원(7.9%) 순감소한 29,521백만원임
- 교육일반 : 전년대비 8,170백만원(2.9%) 순감소한 272,812백만원임
- 예비비 : 전년대비 4,483백만원(28.2%) 순증가한 20,400백만원임
- 인건비 : 전년대비 139,509백만원(2.4%) 순증가한 5,865,343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3-2. 세부사업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세출결산액	0	12,811,043	0.0	11,766,498	-8.2	11,993,508	1.9	11,920,342	-0.6
인적자원운용	0	61,671	0.0	67,119	8.8	68,242	1.7	64,145	-6.0
교직원역량강화	0	10,664	0.0	12,938	21.3	13,694	5.8	11,595	-15.3
교원연수운영	0	8,164	0.0	10,130	24.1	10,947	8.1	8,960	-18.2
지방공무원연수운영	0	2,500	0.0	2,809	12.4	2,747	-2.2	2,635	-4.1
근로자연수운영	0	0	0.0	0	0.0	0	0.0	0	0.0
교직원인사	0	10,713	0.0	14,109	31.7	15,532	10.1	15,995	3.0
교원인사관리	0	8,685	0.0	11,187	28.8	12,332	10.2	13,319	8.0
순회교사제운영	0	0	0.0	0	0.0	0	0.0	0	0.0
지방공무원인사관리	0	1,632	0.0	1,694	3.8	1,787	5.4	1,451	-18.8
근로자인사관리	0	396	0.0	1,228	210.4	1,413	15.1	1,224	-13.4
교직원복지	0	40,294	0.0	40,072	-0.6	39,016	-2.6	36,555	-6.3
교직원복지지원	0	40,294	0.0	40,072	-0.6	39,016	-2.6	36,555	-6.3
교수학습활동지원	0	662,990	0.0	703,072	6.0	782,860	11.3	779,315	-0.5
교육과정운영	0	147,931	0.0	128,760	-13.0	97,553	-24.2	91,093	-6.6
교육과정운영지원	0	64,500	0.0	66,900	3.7	61,620	-7.9	59,872	-2.8
교육자료개발보급	0	341	0.0	505	48.4	315	-37.7	690	119.1
특색교육과정운영	0	61,210	0.0	27,378	-55.3	14,436	-47.3	14,606	1.2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0	21,880	0.0	33,976	55.3	21,181	-37.7	15,924	-24.8
학력신장및평가	0	89,503	0.0	119,053	33.0	69,499	-41.6	57,651	-17.0
교실수업개선	0	3,743	0.0	1,647	-56.0	873	-47.0	893	2.3
학력향상지원	0	74,089	0.0	105,211	42.0	55,874	-46.9	41,201	-26.3
학력평가관리	0	11,670	0.0	12,196	4.5	12,752	4.6	15,557	22.0
장학및연구	0	24,842	0.0	20,441	-17.7	6,531	-68.1	5,491	-15.9
현장중심장학지원	0	18,092	0.0	13,699	-24.3	2,462	-82.0	1,767	-28.2
연구시범학교운영	0	7	0.0	7	0.0	5	-28.9	5	-5.2
교육연구운영지원	0	4,781	0.0	5,055	5.7	3,945	-22.0	3,648	-7.5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0	1,961	0.0	1,679	-14.4	118	-93.0	71	-39.7
유아교육	0	71,998	0.0	72,245	0.3	80,525	11.5	86,411	7.3
유아교육운영	0	7,554	0.0	7,194	-4.8	11,052	53.6	18,374	66.2

2-3-2. 세부사업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0	9,158	0.0	9,552	4.3	9,330	-2.3	7,117	-23.7
유치원교육여건개선	0	1,997	0.0	0	-100.0	0	0.0	0	0.0
사립유치원지원	0	53,288	0.0	55,500	4.2	60,143	8.4	60,920	1.3
특수교육	0	29,799	0.0	37,169	24.7	39,602	6.5	35,986	-9.1
특수교육운영	0	10,181	0.0	12,811	25.8	15,116	18.0	9,239	-38.9
특수교육복지	0	19,618	0.0	20,419	4.1	21,650	6.0	23,949	10.6
특수교육여건개선	0	0	0.0	3,939	0.0	2,836	-28.0	2,798	-1.3
영재교육	0	3,953	0.0	3,497	-11.5	3,546	1.4	3,241	-8.6
영재교육운영	0	3,953	0.0	3,497	-11.5	3,546	1.4	3,241	-8.6
독서교육	0	40,958	0.0	5,281	-87.1	3,693	-30.1	1,299	-64.8
독서논술교육운영	0	589	0.0	4,935	738.2	3,432	-30.5	1,207	-64.8
학교도서관운영	0	40,369	0.0	346	-99.1	261	-24.8	92	-64.7
직업교육	0	69,805	0.0	70,455	0.9	45,584	-35.3	32,510	-28.7
직업교육운영	0	15,407	0.0	18,051	17.2	11,627	-35.6	7,371	-36.6
취업역량강화	0	18,507	0.0	20,734	12.0	11,653	-43.8	8,687	-25.4
직업교육환경개선	0	35,891	0.0	31,671	-11.8	22,304	-29.6	16,451	-26.2
학교정보화	0	73,818	0.0	128,387	73.9	310,693	142.0	359,761	15.8
학교정보화여건개선	0	31,411	0.0	36,315	15.6	22,775	-37.3	19,102	-16.1
ICT 활용교육지원	0	42,406	0.0	92,072	117.1	287,918	212.7	340,658	18.3
특별활동지원	0	55,218	0.0	59,929	8.5	56,897	-5.1	46,144	-18.9
문화예술교육활동	0	15,899	0.0	16,297	2.5	14,049	-13.8	7,940	-43.5
각종체육활동	0	37,291	0.0	41,112	10.2	41,283	0.4	36,775	-10.9
학생단체활동	0	2,028	0.0	2,520	24.3	1,565	-37.9	1,429	-8.7
학생생활지도	0	19,666	0.0	17,470	-11.2	29,876	71.0	22,133	-25.9
학생생활지도지원	0	2,117	0.0	1,337	-36.9	1,595	19.3	1,213	-23.9
성폭력예방교육등	0	763	0.0	691	-9.6	492	-28.8	308	-37.3
학교폭력예방및교육	0	7,449	0.0	9,420	26.5	11,332	20.3	11,416	0.7
학생상담활동	0	5,734	0.0	4,192	-26.9	3,525	-15.9	3,149	-10.7
학생안전관리	0	3,603	0.0	1,831	-49.2	12,933	606.2	6,046	-53.3
대안교육	0	9,415	0.0	15,654	66.3	15,274	-2.4	14,307	-6.3

2-3-2. 세부사업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대안교육운영	0	9,415	0.0	15,654	66.3	15,274	-2.4	14,307	-6.3
진로진학교육	0	6,137	0.0	6,956	13.3	6,975	0.3	6,050	-13.3
진로진학교육운영	0	6,137	0.0	6,956	13.3	6,975	0.3	6,050	-13.3
학생선발배정	0	19,948	0.0	17,774	-10.9	16,612	-6.5	17,238	3.8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0	1,056	0.0	1,159	9.7	988	-14.7	860	-13.0
대학수학능력시험	0	18,891	0.0	16,615	-12.0	15,624	-6.0	16,378	4.8
교육복지	0	807,153	0.0	767,205	-4.9	861,322	12.3	848,579	-1.5
학비지원	0	89,640	0.0	95,306	6.3	92,965	-2.5	91,521	-1.6
교육비지원	0	60,963	0.0	66,246	8.7	62,548	-5.6	60,014	-4.1
교육급여지원	0	28,677	0.0	29,060	1.3	30,417	4.7	31,508	3.6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0	54,555	0.0	76,582	40.4	184,132	140.4	139,582	-24.2
방과후학교운영	0	13,040	0.0	14,870	14.0	125,818	746.1	3,295	-97.4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0	15,177	0.0	16,604	9.4	12,053	-27.4	14,228	18.0
돌봄교실운영	0	26,339	0.0	45,108	71.3	46,261	2.6	0	-100.0
늘봄학교운영	0	0	0.0	0	0.0	0	0.0	122,058	0.0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0	0	0.0	0	0.0	0	0.0	0	0.0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0	0	0.0	0	0.0	0	0.0	0	0.0
기숙형학교운영	0	0	0.0	0	0.0	0	0.0	0	0.0
교육복지지원	0	662,958	0.0	595,317	-10.2	584,225	-1.9	617,476	5.7
교육복지우선지원	0	41,255	0.0	38,162	-7.5	31,554	-17.3	22,477	-28.8
급식비지원	0	7,158	0.0	7,095	-0.9	6,628	-6.6	6,675	0.7
정보화지원	0	3,706	0.0	3,215	-13.3	2,920	-9.2	2,724	-6.7
누리과정지원	0	549,052	0.0	480,192	-12.5	472,528	-1.6	486,786	3.0
교과서지원	0	54,719	0.0	59,090	8.0	62,679	6.1	91,891	46.6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0	7,068	0.0	7,562	7.0	7,917	4.7	6,922	-12.6
기타교육복지지원	0	0	0.0	0	0.0	0	0.0	0	0.0
보건급식	0	1,159,269	0.0	1,096,716	-5.4	886,575	-19.2	912,838	3.0
보건관리	0	201,537	0.0	129,047	-36.0	41,323	-68.0	30,481	-26.2
학교보건관리	0	156,842	0.0	53,929	-65.6	13,111	-75.7	9,081	-30.7

2-3-2. 세부사업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학교환경위생관리	0	44,492	0.0	74,593	67.7	27,701	-62.9	20,890	-24.6
산업안전보건관리	0	204	0.0	526	157.4	511	-2.8	509	-0.3
급식관리	0	957,731	0.0	967,669	1.0	845,252	-12.7	882,357	4.4
학교급식운영	0	874,031	0.0	901,271	3.1	764,924	-15.1	800,873	4.7
학교급식환경개선	0	83,700	0.0	66,398	-20.7	80,327	21.0	81,484	1.4
학교재정지원관리	0	2,249,533	0.0	2,285,902	1.6	2,297,700	0.5	2,302,901	0.2
학교운영비지원	0	743,031	0.0	735,309	-1.0	736,622	0.2	715,074	-2.9
학교운영비지원	0	743,031	0.0	735,309	-1.0	736,622	0.2	715,074	-2.9
사학재정지원	0	1,506,501	0.0	1,550,593	2.9	1,561,078	0.7	1,587,827	1.7
인건비재정결함지원	0	1,280,814	0.0	1,284,237	0.3	1,310,203	2.0	1,340,236	2.3
운영비재정결함지원	0	225,687	0.0	266,356	18.0	250,875	-5.8	247,591	-1.3
학교시설여건개선	0	843,807	0.0	907,171	7.5	1,042,038	14.9	824,489	-20.9
학생배치시설	0	118,662	0.0	46,475	-60.8	88,977	91.5	52,402	-41.1
학교신증설	0	118,662	0.0	46,475	-60.8	88,977	91.5	52,402	-41.1
학교시설개선	0	725,145	0.0	860,696	18.7	953,060	10.7	772,086	-19.0
학교시설확충	0	40,305	0.0	37,418	-7.2	29,382	-21.5	13,470	-54.2
학교시설환경개선	0	684,840	0.0	823,279	20.2	923,678	12.2	758,617	-17.9
평생교육	0	37,047	0.0	33,196	-10.4	32,039	-3.5	29,521	-7.9
평생교육운영	0	28,785	0.0	24,359	-15.4	24,335	-0.1	23,080	-5.2
평생교육시설및운영	0	20,333	0.0	16,312	-19.8	16,388	0.5	16,022	-2.2
평생학습운영	0	6,205	0.0	5,974	-3.7	5,778	-3.3	4,548	-21.3
방송통신중고운영	0	1,224	0.0	1,151	-5.9	1,279	11.0	1,637	28.0
검정고시운영	0	1,023	0.0	922	-9.8	891	-3.4	873	-2.0
독서문화	0	8,261	0.0	8,837	7.0	7,704	-12.8	6,441	-16.4
도서관운영	0	8,261	0.0	8,837	7.0	7,704	-12.8	6,441	-16.4
교육행정일반	0	143,371	0.0	205,501	43.3	200,902	-2.2	199,846	-0.5
정책기획및비상계획	0	7,128	0.0	19,312	170.9	19,377	0.3	21,579	11.4
교육정책기획관리	0	1,430	0.0	1,342	-6.1	1,345	0.2	1,201	-10.7
교육정책홍보	0	5,552	0.0	5,865	5.6	4,326	-26.2	4,216	-2.6
비상대비계획운영	0	147	0.0	12,105	8,150.3	13,706	13.2	16,162	17.9

2-3-2. 세부사업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감사법무관리	0	1,599	0.0	2,312	44.6	1,748	-24.4	1,659	-5.1
감사관리	0	823	0.0	1,426	73.2	694	-51.4	496	-28.6
법무관리	0	776	0.0	886	14.2	1,054	19.0	1,163	10.3
기관평가및조직관리	0	5,626	0.0	5,962	6.0	5,920	-0.7	7,404	25.1
기관및학교평가관리	0	425	0.0	323	-24.0	243	-24.6	826	239.1
조직및성과관리	0	118	0.0	137	16.3	179	31.2	550	206.6
행정개선활동지원	0	5,083	0.0	5,503	8.2	5,497	-0.1	6,028	9.7
의회협력및선거관리	0	29,660	0.0	121	-99.6	44,057	36,432.1	4,392	-90.0
의회협력	0	74	0.0	121	63.3	100	-16.9	81	-19.2
선거관리	0	29,586	0.0	0	-100.0	43,957	0.0	4,312	-90.2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0	27,406	0.0	42,725	55.9	47,651	11.5	74,868	57.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0	16,962	0.0	24,027	41.6	11,503	-52.1	15,378	33.7
정보보안관리	0	7,477	0.0	14,743	97.2	32,850	122.8	55,727	69.6
교육행정기록물관리	0	2,765	0.0	3,487	26.1	2,996	-14.1	3,406	13.7
민원행정서비스관리	0	203	0.0	469	131.4	302	-35.7	356	18.2
예결산관리	0	4,858	0.0	5,280	8.7	3,708	-29.8	1,613	-56.5
예산관리	0	4,732	0.0	5,147	8.8	3,579	-30.5	1,478	-58.7
결산관리	0	126	0.0	133	5.6	129	-3.5	135	4.9
재무관리	0	16,538	0.0	69,418	319.8	22,034	-68.3	24,785	12.5
재무회계관리	0	6,530	0.0	7,084	8.5	10,893	53.8	16,802	54.3
공유재산및물품관리	0	10,007	0.0	62,335	522.9	11,142	-82.1	7,982	-28.4
학생배치계획	0	9,839	0.0	8,950	-9.0	8,976	0.3	8,692	-3.2
학생배치계획관리	0	7,293	0.0	5,693	-21.9	6,060	6.4	5,025	-17.1
적정규모학교육성	0	2,545	0.0	3,257	28.0	2,916	-10.5	3,666	25.7
사학기관관리	0	763	0.0	886	16.0	745	-15.8	463	-37.9
사학기관지도지원	0	763	0.0	886	16.0	745	-15.8	463	-37.9
교육협력	0	3,312	0.0	3,958	19.5	2,983	-24.6	3,491	17.0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0	2,633	0.0	3,147	19.5	1,319	-58.1	2,096	58.9
교육협력관리	0	0	0.0	27	0.0	27	-2.3	19	-29.9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0	679	0.0	784	15.4	1,637	108.9	1,377	-15.9

2-3-2. 세부사업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시설사업관리	0	26,179	0.0	33,757	28.9	35,299	4.6	41,709	18.2
시설사업운영	0	26,179	0.0	33,757	28.9	35,299	4.6	41,709	18.2
특별교육재정수요	0	9,799	0.0	12,290	25.4	8,090	-34.2	8,985	11.1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0	9,799	0.0	12,290	25.4	8,090	-34.2	8,985	11.1
교직원단체관리	0	665	0.0	529	-20.5	315	-40.5	206	-34.5
교직원단체관리	0	665	0.0	529	-20.5	315	-40.5	206	-34.5
기관운영	0	58,442	0.0	72,115	23.4	79,167	9.8	62,270	-21.3
기본운영비	0	34,106	0.0	36,843	8.0	36,344	-1.4	39,321	8.2
기관기본운영비	0	34,106	0.0	36,843	8.0	36,344	-1.4	39,321	8.2
교육행정기관시설	0	24,336	0.0	35,272	44.9	42,823	21.4	22,949	-46.4
기관시설유지관리	0	24,336	0.0	35,272	44.9	42,823	21.4	22,949	-46.4
재무활동	0	1,576,945	0.0	232,040	-85.3	913	-99.6	10,696	1,071.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104,088	0.0	913	-99.1	913	0.0	2,896	217.2
지방채상환	0	0	0.0	0	0.0	0	0.0	0	0.0
민간투자사업상환	0	104,088	0.0	913	-99.1	913	0.0	2,896	217.2
일시차입금관리	0	0	0.0	0	0.0	0	0.0	0	0.0
내부거래지출	0	1,472,857	0.0	231,127	-84.3	0	-100.0	7,800	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0	0	0.0	0	0.0	0	0.0	0	0.0
기금전출금	0	1,472,857	0.0	231,127	-84.3	0	-100.0	7,800	0.0
예탁금	0	0	0.0	0	0.0	0	0.0	0	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및기타	0	43,283	0.0	45,307	4.7	15,917	-64.9	20,400	28.2
예비비및기타	0	43,283	0.0	45,307	4.7	15,917	-64.9	20,400	28.2
예비비	0	0	0.0	0	0.0	0	0.0	0	0.0
제지출금등	0	43,283	0.0	45,307	4.7	15,917	-64.9	20,400	28.2
내부유보금	0	0	0.0	0	0.0	0	0.0	0	0.0
인건비	0	5,167,533	0.0	5,351,154	3.6	5,725,834	7.0	5,865,343	2.4
공무원인건비	0	4,339,272	0.0	4,453,665	2.6	4,601,730	3.3	4,653,717	1.1
교원인건비	0	3,761,532	0.0	3,848,442	2.3	3,965,519	3.0	3,982,209	0.4
지방공무원인건비	0	513,466	0.0	537,818	4.7	566,255	5.3	588,828	4.0

2-3-2. 세부사업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교육전문직원인건비	0	64,274	0.0	67,405	4.9	69,955	3.8	82,680	18.2
근로자인건비	0	828,261	0.0	897,488	8.4	1,124,104	25.3	1,211,626	7.8
계약제교원인건비	0	334,735	0.0	362,288	8.2	385,643	6.4	392,664	1.8
계약제근로자인건비	0	27,463	0.0	27,972	1.9	34,760	24.3	30,921	-11.0
교육공무직원인건비	0	466,062	0.0	507,228	8.8	703,702	38.7	788,041	12.0

※ 2022년부터 유사성격 사업 통폐합, 상·하위 간 항목 정합성 개선, 사업 간소화, 명칭정비 등 사업별 예산재구조화에 따라 2021년 이전과 다른(2-3-2.(구)세부사업별세출, 2-3-2.(신)세부사업별세출) 기준으로 작성됨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의 세부사업 중 기관및학교평가관리 항목은 826백만원(239.1%)으로 증감률이 가장 높고, 선거관리 항목은 4,312백만원(-90.2%)으로 증감률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4.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 최근 5개년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한 내역입니다.

2-4-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인건비	6,264,944	54.7	6,655,359	52.0	6,841,763	58.1	7,239,156	60.4	7,566,336	63.5
100. 인건비	3,687,719	32.2	3,823,251	29.8	3,885,314	33.0	4,413,789	36.8	4,522,100	37.9
200. 물건비	94,684	0.8	136,950	1.1	157,741	1.3	167,447	1.4	171,382	1.4
300. 이전지출	717,775	6.3	778,698	6.1	871,146	7.4	1,029,554	8.6	1,039,066	8.7
600. 전출금등	1,764,767	15.4	1,916,461	15.0	1,927,562	16.4	1,628,366	13.6	1,833,789	15.4
물건비	294,288	2.6	415,258	3.2	303,252	2.6	302,827	2.5	346,641	2.9
200. 물건비	218,355	1.9	339,038	2.6	302,339	2.6	301,914	2.5	344,226	2.9
500. 상환지출	75,933	0.7	76,220	0.6	913	0.0	913	0.0	2,415	0.0
이전지출	510,759	4.5	520,746	4.1	467,199	4.0	532,942	4.4	506,148	4.2
200. 물건비	0	0.0	0	0.0	0	0.0	0	0.0	20	0.0
300. 이전지출	489,802	4.3	506,750	4.0	459,191	3.9	523,245	4.4	498,795	4.2
500. 상환지출	6,420	0.1	0	0.0	0	0.0	0	0.0	0	0.0
600. 전출금등	14,537	0.1	13,996	0.1	8,008	0.1	9,697	0.1	7,333	0.1
자본지출	1,099,779	9.6	968,872	7.6	1,092,956	9.3	1,375,577	11.5	1,229,888	10.3
300. 이전지출	40,896	0.4	11,145	0.1	24,452	0.2	11,772	0.1	13,424	0.1
400. 자본지출	568,792	5.0	464,249	3.6	614,258	5.2	873,241	7.3	864,631	7.3
600. 전출금등	490,090	4.3	493,478	3.9	454,246	3.9	490,564	4.1	351,833	3.0
상환지출	316,177	2.8	0	0.0	0	0.0	0	0.0	0	0.0
500. 상환지출	316,177	2.8	0	0.0	0	0.0	0	0.0	0	0.0
전출금등	2,531,474	22.1	2,734,668	21.3	2,784,893	23.7	2,527,089	21.1	2,243,128	18.8
200. 물건비	26,624	0.2	27,868	0.2	0	0.0	0	0.0	481	0.0
600. 전출금등	2,504,850	21.9	2,706,800	21.1	2,784,893	23.7	2,527,089	21.1	2,242,648	18.8
예비비및기타	92,184	0.8	43,283	0.3	45,307	0.4	15,917	0.1	20,400	0.2
700. 예비비및기타	92,184	0.8	43,283	0.3	45,307	0.4	15,917	0.1	20,400	0.2
내부거래	335,398	2.9	1,472,857	11.5	231,127	2.0	0	0.0	7,800	0.1
800.내부거래	335,398	2.9	1,472,857	11.5	231,127	2.0	0	0.0	7,800	0.1

성질별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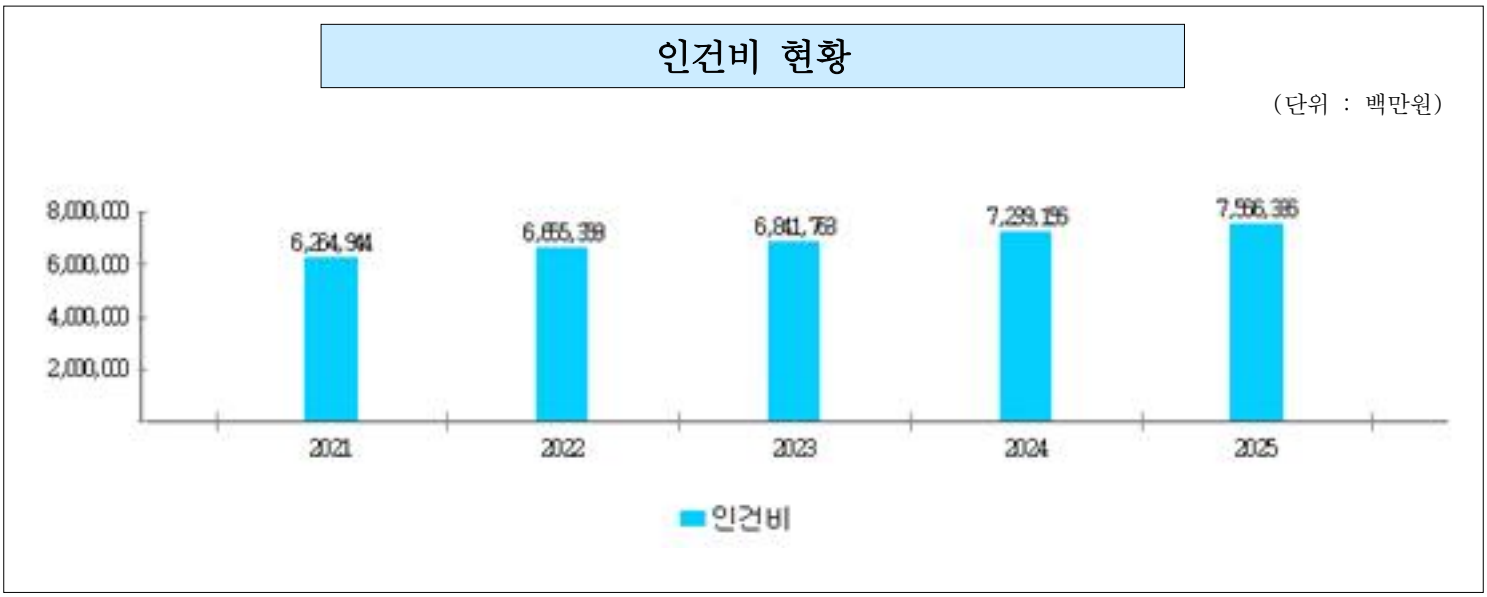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결산 분류 시 인건비 항목은 7,566,336백만원(63.5%)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내부거래 항목은 7,800백만원(0.1%)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4-2. 인건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인건비	**6,264,944**	**54.7**	**6,655,359**	**52.0**	**6,841,763**	**58.1**	**7,239,156**	**60.4**	**7,566,336**	**63.5**
교원	3,861,218	33.7	4,070,856	31.8	4,169,700	35.4	4,311,147	35.9	4,331,807	36.3
교육전문직원	60,414	0.5	63,579	0.5	66,538	0.6	69,083	0.6	81,564	0.7
지방공무원	490,346	4.3	505,806	3.9	527,892	4.5	556,356	4.6	578,626	4.9
사립학교교직원	1,287,732	11.3	1,358,935	10.6	1,362,380	11.6	1,393,236	11.6	1,542,139	12.9
교육공무직원	369,163	3.2	413,546	3.2	448,275	3.8	642,258	5.4	720,152	6.0
그 외 기타직	112,433	1.0	149,691	1.2	150,180	1.3	151,937	1.3	194,102	1.6
맞춤형복지비	83,636	0.7	92,946	0.7	116,798	1.0	115,138	1.0	117,945	1.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327,180백만원 순증가한 7,566,336백만원임

○ 인건비 중 교원 항목은 4,331,807백만원(36.3%)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교육전문직원 항목은 81,564백만원(0.7%)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4-3. 물건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물건비	**294,288**	**2.6**	**415,258**	**3.2**	**303,252**	**2.6**	**302,827**	**2.5**	**346,641**	**2.9**
운영비	280,929	2.5	399,199	3.1	286,845	2.4	286,430	2.4	331,856	2.8
여비	3,046	0.0	3,971	0.0	4,673	0.0	4,578	0.0	4,951	0.0
업무추진비	4,402	0.0	5,232	0.0	5,432	0.0	4,904	0.0	4,394	0.0
직무수행경비	853	0.0	860	0.0	909	0.0	925	0.0	937	0.0
복리후생비 등	5,059	0.0	5,996	0.0	5,394	0.0	5,990	0.0	4,503	0.0

물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중 물건비는 전년대비 43,815백만원 순증가한 346,641백만원임

○ 물건비 중 운영비 항목은 331,856백만원(2.8%)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직무수행경비 항목은 937백만원(0.0%)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4-4. 이전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이전지출	**510,759**	**4.5**	**520,746**	**4.1**	**467,199**	**4.0**	**532,942**	**4.4**	**506,148**	**4.2**
자치단체보육료보조	345,232	3.0	321,189	2.5	257,069	2.2	241,214	2.0	235,072	2.0
자치단체경상보조	33,588	0.3	29,078	0.2	22,436	0.2	22,465	0.2	20,498	0.2
기타이전지출	131,940	1.2	170,479	1.3	187,694	1.6	269,262	2.2	250,578	2.1

이전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중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26,794백만원 순감소한 506,148백만원임

○ 이전지출 중 기타이전지출항목은 250,578백만원(2.1%)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자치단체경상보조항목은 20,498백만원(0.2%)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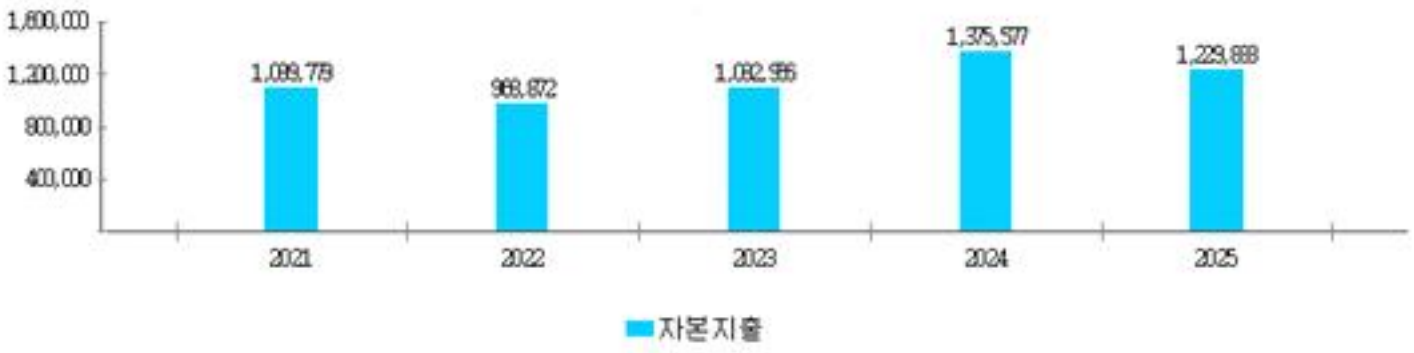
2-4-5. 자본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자본지출	**1,099,779**	**9.6**	**968,872**	**7.6**	**1,092,956**	**9.3**	**1,375,577**	**11.5**	**1,229,888**	**10.3**
토지매입비	12,717	0.1	5,580	0.0	625	0.0	39,685	0.3	7,418	0.1
건설비	1,027,194	9.0	934,800	7.3	994,592	8.5	1,194,941	10.0	919,914	7.7
유·무형자산취득비	18,527	0.2	16,974	0.1	72,643	0.6	128,679	1.1	288,452	2.4
기타자산취득비	41,340	0.4	11,518	0.1	25,096	0.2	12,272	0.1	14,103	0.1

자본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중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145,689백만원 순감소한 1,229,888백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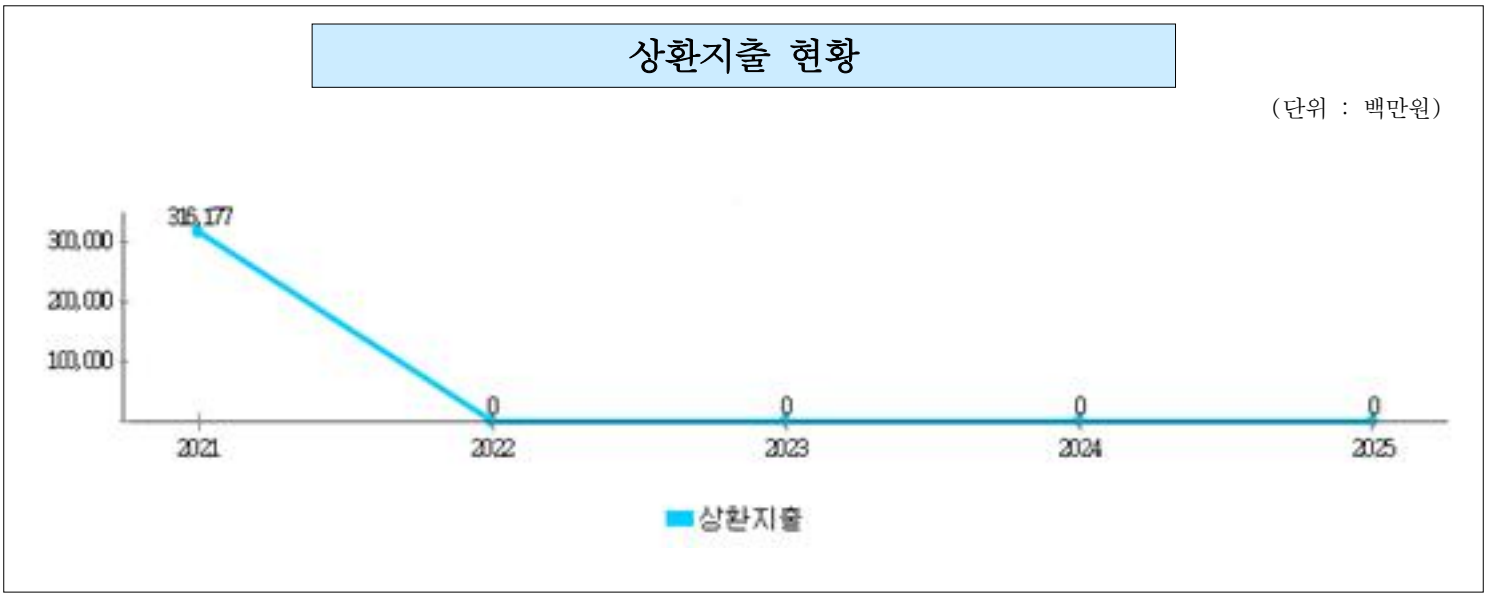
○ 자본지출 중 건설비 항목은 919,914백만원(7.7%)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토지매입비 항목은 7,418백만원(0.1%)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4-6. 상환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상환지출	**316,177**	**2.8**	**0**	**0.0**	**0**	**0.0**	**0**	**0.0**	**0**	**0.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중 상환지출은 해당없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4-7. 전출금 등

■ '전출금등'은 인건비 등 타성질 경비를 제외한 것으로 세출과목상의 '학교회계전출금'과는 상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전출금등	**2,531,474**	**22.1**	**2,734,668**	**21.3**	**2,784,893**	**23.7**	**2,527,089**	**21.1**	**2,243,128**	**18.8**
공립학교	1,673,726	14.6	1,806,566	14.1	1,827,400	15.5	1,600,208	13.3	1,455,896	12.2
사립학교	857,748	7.5	928,101	7.2	957,493	8.1	926,882	7.7	787,232	6.6

전출금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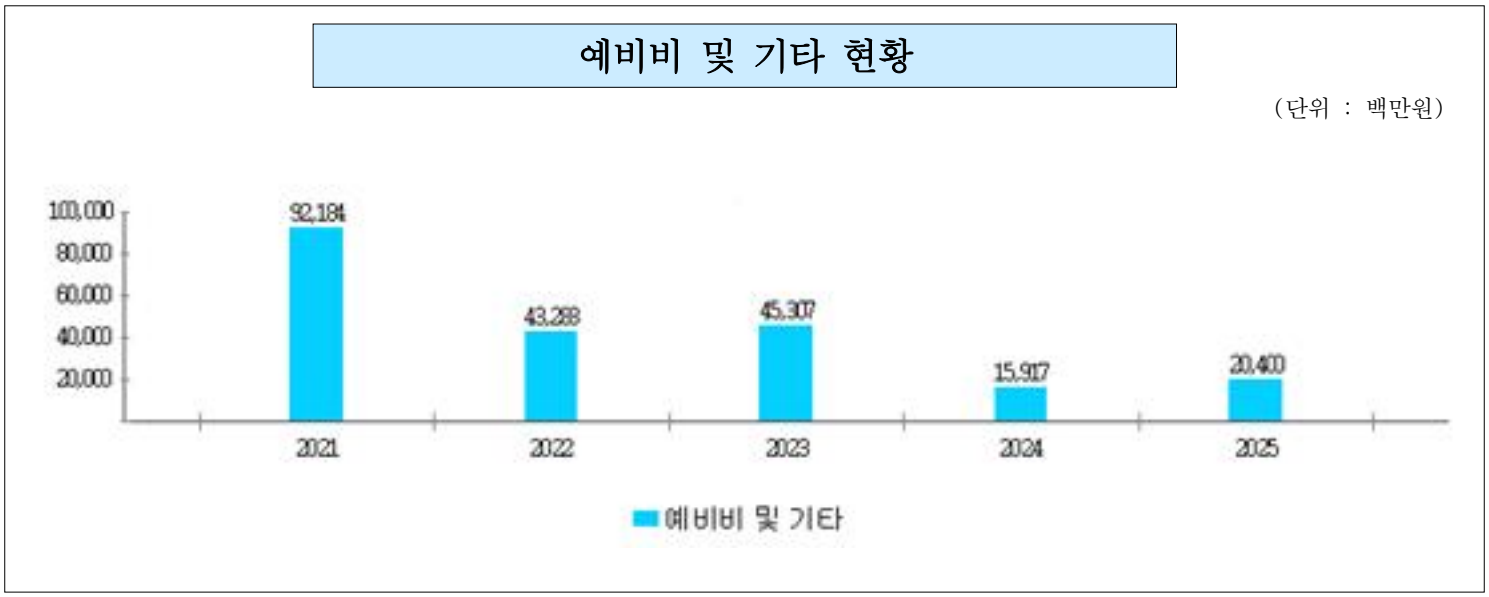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중 전출금등은 전년대비 283,961백만원 순감소한 2,243,128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4-8. 예비비 및 기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예비비및기타	**92,184**	**0.8**	**43,283**	**0.3**	**45,307**	**0.4**	**15,917**	**0.1**	**20,40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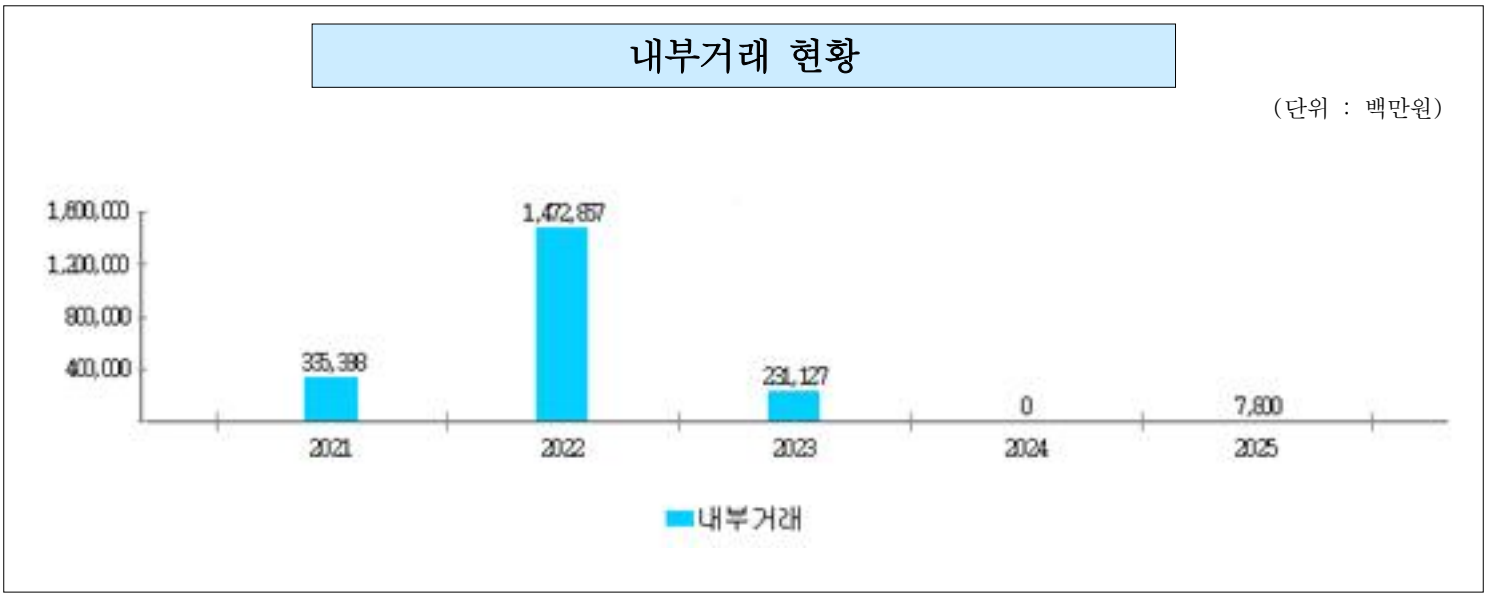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중 ‘예비비및기타’는 전년대비 4,483백만원 순증가한 20,400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4-9. 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내부거래	**335,398**	**2.9**	**1,472,857**	**11.5**	**231,127**	**2.0**	**0**	**0.0**	**7,800**	**0.1**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중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800백만원 순증가한 7,800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2-5. 성과보고서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하는 성과보고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2-5-1. 총괄

(단위 : 개, %)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①	달성②	미달성③
5	15	84	5	68	11
		100.0%	6.0%	81.0%	13.1%

○ 우리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운영해왔으며, 성과지표별 달성도는 초과달성 5건(6.0%), 달성 68건(81.0%), 미달성 11건(13.1%)입니다.
○ 성과목표별 달성 현황, 미흡 원인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현황>결산현황) 2025년 결산 게시판에 탑재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나영	02-6033-6363

*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2-5-2.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달성성과	2025년 달성률(%)	2025년 결산액
전략목표 Ⅰ: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			1,083,874
1. 기초학력 향상(I-1)			204,029
① 유치원 교육과정 수업지원사업 만족도	○	113.6	
② 자유학기 연수실적	○	108.5	
③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을 통한 맞춤형 진로진학 활동 지원 참여교 만족도	X	85.2	
④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양화·특성화 학교 비율	○	100.2	
⑤ 교과교실제 운영 만족도	○	106.3	
⑥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지원대상 학교 확대	○	103.5	
⑦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복합·특수요인 학생 지원	○	119.5	
⑧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	101.5	
⑨ 특수교육과정 및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누적 이수율	○	100.2	
⑩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율	X	31.8	
2. 교육격차 해소(I-2)			298,485
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율	○	100	
② 지역교육복지공동체 협력 학교	○	101.2	
③ 교육취약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율	○	100.3	
④ 초중학교 무상교과용도서 재고율(하향지표)	◎	147.6	
⑤ 학급당 적정 학생수(하향지표)	○	100	
3. 교육기회보장(I-3)			581,360
①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 대상 다문화(이중)언어강사 배치율	○	102.8	
② 다문화학생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율	○	101.4	
③ 학업지속 프로그램 참여자 수	X	98	
④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율	○	122.4	
⑤ 방과후 과정 유아 참여율	○	103.6	
⑥ 방송통신중·고 인터넷 콘텐츠 활용 만족도	○	100	
⑦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지원 학급 수	◎	425	
전략목표 Ⅱ: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교육			1,453,445
1. 미래를 위한 주도적 역량 증진(Ⅱ-1)			444,861
①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추진율	○	108.4	

구 분	2025년 달성성과	2025년 달성률(%)	2025년 결산액
②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률	○	112.7	
③ 교육용 노후PC교체에 대한 학교 만족도	○	113.8	
④ 개인정보 암호화 및 현장지원율	○	101.4	
⑤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	107.8	
⑥ 수업 개선 중심 교사 학습공동체 수	○	120	
⑦ 외국어교원 역량 강화	○	103.3	
⑧ 2025 '생각을 키우는 교실 실천연구팀' 참여율 및 만족도	○	104.7	
⑨ 자체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및 학술적 기여도 평가	○	104.4	
⑩ AI맞춤형교수학습플랫폼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서비스 생태계 조성률	○	116.7	
⑪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율	○	101	
⑫ 나이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지원 노력	○	102.4	
⑬ 창의융합형 과학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제고	○	100.3	
⑭ 학생교육원 시설 이용률	○	118.7	
2.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강화(Ⅱ-2)			524
① 교육(지원)청 주관 역사교육 프로그램 교원·학생 만족도	○	109.8	
② 역사교육자료센터 탑재 콘텐츠 증가율	X	-	
3. 다양한 공교육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Ⅱ-3)			205,486
① 늘봄학교 학생참여율	○	104	
② 혁신학교(혁신미래학교) 성장 지원	X	97.9	
③ 학생 1인당 진로체험 참여 횟수	◎	137.5	
④ 직업계고 교원 연수 이수율	X	99.5	
⑤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성과 발표(영상 제작 포함) 참여 비율	○	100.2	
⑥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X	84	
⑦ 학생건강체력 저체력학생 비율(하향지표)	X	96	
4.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 강화(Ⅱ-4)			802,575
① 국제공동수업 참여 학교 수	○	108	
② 생태전환교육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	110.2	
③ 급식식품비 단가 인상률	○	117.9	
전략목표 Ⅲ: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118,809
1. 함께하는 학교자치 실현(Ⅲ-1)			1,778
① 학생자치참여예산제 학생 회장 공약 사항 이행 및 학생 제안 사업 반영률	○	113.3	

구 분	2025년 달성성과	2025년 달성률(%)	2025년 결산액
② 학교평가계획의 학교교육계획 포함률	○	100.1	
2. 시민이 참여하는 학교자치 실현(Ⅲ-2)			53,850
① 지역연계 학습일 운영교 증가율	○	107.3	
②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건수	○	103	
③ 자료대출 및 프로그램 참여율	○	100.5	
④ 학교시설 개방률	○	104.6	
3. 누구나 존중받는 학교자치 실현(Ⅲ-3)			40,903
① 심리상담프로그램 참여도	○	122.8	
② 학생(노동)인권교육 학교 참여율	◎	132	
③ 수요자 맞춤 학습방식 다양화 비율	○	104.5	
4.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치 지원(Ⅲ-4)			22,279
① 학습연구년 운영 만족도	○	101.2	
②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만족도	○	101.2	
전략목표 Ⅳ: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946,680
1. 건강하고 평화로운 학교 조성(Ⅳ-1)			44,845
① 심리정서 위기학생 상담활동	○	101.4	
②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2차 연계율	X	99.7	
③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학생 예방교육 및 교원 컨설팅·연수 지원	○	100	
④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의 소송, 행정심판 직접(단독) 수행 비율	○	100	
⑤ 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 만족도	○	100	
⑥ 과대학교 학교보건지원강사 운영 만족도	○	108.3	
⑦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운영 만족도	○	111	
2.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Ⅳ-2)			901,835
①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확대	○	104	
② 교육환경개선사업 만족도	○	103	
③ 노후시설 정밀점검 실적	○	102.6	
④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달성률	○	107.5	
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 충실도	○	104.4	
전략목표 Ⅴ: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			42,492
1. 공감과 소통을 통한 현장 지원(Ⅴ-1)			15,938
① 언론기사의 광고가치 증가율	○	103	

구 분	2025년 달성성과	2025년 달성률(%)	2025년 결산액
② 주요 매체별 홍보 건수	○	107.1	
③ 콜센터 운영성과 지수	○	100.9	
④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만족도	○	111.9	
⑤ 학부모 지원 사업 참여 학부모 비율	◎	243	
⑥ 신규채용 교육공무직원 직무적응 교육훈련 이수율	○	118	
2. 자율적 조직문화를 통한 현장 지원(V-2)			26,553
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	100	
②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이용률 제고	X	83	
③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	100	
④ 중요기록물 DB 구축률	○	102.8	
⑤ 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의견 반영률	X	91.7	
⑥ 불법 사교육 및 공교육 저해요인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도·감독실시건수	○	105.4	
⑦ 사학기관 운영평가 노력지표 평가결과 향상도	X	99.3	

※ 1. 달성성과는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초과달성(130% 이상)은 ◎, 달성(100%~130%미만)은 ○, 미달성(100% 미만)은 X로 표기
2. '25년 결산액은 '전략목표명' 및 '성과목표명' 줄에만 표기, '지표명' 줄에는 표기하지 않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나영	02-6033-6363

3. 재무제표

○ 복식부기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자산, 부채, 비용 및 수익 정보 기준
○ 법적근거 :「지방회계법」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해당연도 재무제표 기준

3-1. 재정상태표

■ 특정 시점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당연도 (2025년도)	직전연도 (2024년도)	증 감
자산	**18,588,884**	**18,079,374**	**509,509**
유동자산	2,733,429	2,770,381	-36,952
투자자산	158,755	162,266	-3,511
유형자산	15,695,374	15,144,911	550,464
무형자산	66	35	31
기타비유동자산	1,260	1,782	-522
부채	**511,771**	**506,943**	**4,828**
유동부채	148,641	133,807	14,834
장기차입부채	268,934	286,251	-17,317
기타비유동부채	94,196	86,886	7,310
순자산	**18,077,113**	**17,572,431**	**504,682**
고정순자산	15,355,822	14,791,733	564,089
특정순자산	1,300,840	1,441,009	-140,169
일반순자산	1,420,451	1,339,689	80,762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8,588,884**	**18,079,374**	**509,509**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총자산은 18,588,884백만원이고, 총부채는 511,771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8,077,113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3-2. 재정운영표

■ 2025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 및 운영차액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됩니다.

3-2-1. 기능별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당연도 (2025년도)	직전연도 (2024년도)	증 감
수익	**12,466,877**	**11,555,674**	**911,203**
이전수익	12,112,653	11,252,824	859,829
자체수익	7,778	7,301	477
기타수익	346,446	295,548	50,898
비용	**11,962,195**	**12,113,036**	**-150,841**
인적자원운용	62,360	65,686	-3,327
교수학습활동지원	503,913	666,242	-162,329
교육복지	847,831	860,081	-12,250
보건급식	862,745	845,875	16,870
학교재정지원관리	2,302,901	2,297,700	5,202
학교시설여건개선	320,980	385,342	-64,362
평생교육	25,126	27,456	-2,330
교육행정일반	192,439	193,502	-1,063
기관운영	39,667	37,425	2,242
재무활동	1,359	42,783	-41,424
예비비및기타	0	0	0
인건비	5,865,343	5,725,834	139,509
기타비현금지출비용	937,530	965,109	-27,579
운영차액	**504,682**	**-557,363**	**1,062,044**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총수익은 12,466,877백만원이고, 총비용은 11,962,195백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04,682백만원임
○ 수익은 이전수익 12,112,653백만원(97.1%), 자체수익 7,778백만원(0.1%), 기타수익 346,446백만원(2.8%)으로,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용은 인건비 5,865,343백만원(49.0.%), 학교재정지원관리 2,302,901백만원(19.3%), 보건급식 862,745백만원(7.2%) 등으로 인건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3-2-2.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당연도 (2025년도)	직전연도 (2024년도)	증 감
수익		**12,466,877**	**11,555,674**	**911,203**
	이전수익	12,112,653	11,252,824	859,829
	자체수익	7,778	7,301	477
	기타수익	346,446	295,548	50,898
비용		**11,962,195**	**12,113,036**	**-150,841**
	인건비	4,522,352	4,412,710	109,642
	복리후생비	1,219,832	1,206,642	13,190
	운영관리비	1,248,136	1,277,540	-29,404
	이전비용	4,845,980	5,105,633	-259,653
	기타비용	125,895	110,512	15,383
운영차액		**504,682**	**-557,363**	**1,062,044**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익총계는 전년대비 911,203백만원 순증가한 12,466,877백만원이고, 비용총계는 전년대비 -150,841백만원 순감소하여 11,962,195백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062,044백만원 순증가한 504,682백만원임

○ 이러한 재정운영차액의 증가는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익 증가(859,829백만원)와 자치단체나 학교 등으로 지출되는 이전비용의 감소(259,653백만원)에 의한 것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3-3. 순자산변동표

■ 2025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변동(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증가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에 관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당연도 (2025년도)	직전연도 (2024년도)	증 감
고정순자산			
전기이월고정순자산	14,791,733	14,564,182	227,551
고정순자산의 증가	1,067,091	691,588	375,503
고정순자산의 감소	503,002	464,037	38,965
차기이월고정순자산	15,355,822	14,791,733	564,089
특정순자산			
수정후전기이월특정순자산	1,441,009	1,849,239	-408,230
운영차액	-54,017	-382,045	328,029
특정순자산의 증가	65,161	67,238	-2,077
특정순자산의 감소	151,313	93,422	57,891
차기이월특정순자산	1,300,840	1,441,009	-140,169
일반순자산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1,339,689	1,716,373	-376,684
운영차액	558,698	-175,317	734,016
일반순자산의 증가	503,002	462,609	40,393
일반순자산의 감소	980,939	663,975	316,963
차기이월일반순자산	1,420,451	1,339,689	80,762
기말순자산	**18,077,113**	**17,572,431**	**504,682**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차기이월고정순자산은 전기대비 564,089백만원 순증가하여 15,355,822백만원이고, 차기이월특정순자산은 전기대비 140,169백만원 순감소하여 1,300,840백만원이며, 차기이월일반순자산은 전기이월일반순자산은 1,420,451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기말 순자산은 차기이월고정순자산, 차기이월특정순자산, 차기이월일반순자산을 합하여 18,077,113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4. 채권관리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1호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기준

4-1. 총괄

■ 우리교육청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융자하고 회수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70,665**	**2,135**	**20,265**	**18,130**	**172,800**
교육비특별회계	170,416	2,135	20,265	18,130	172,552
기금	248	0	0	0	248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 채권 보유액은 전년대비 2,135백만원 순증가한 172,800백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대비 2,135백만원 순증가한 172,552백만원이고, 기금 채권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24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없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나영	02-6033-6363

4-2. 채권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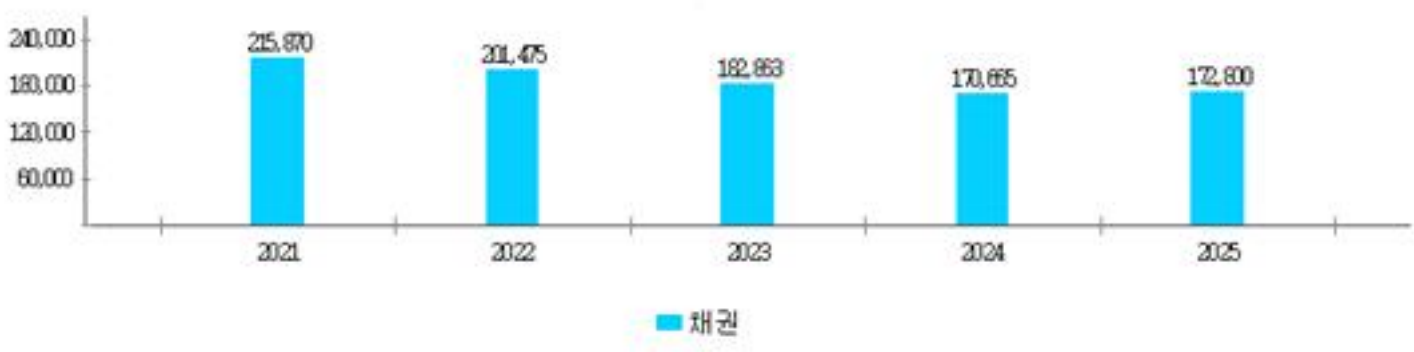
■ 연도별 채권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채권	**215,870**	**201,475**	**182,863**	**170,665**	**172,800**
보증금	6,098	4,208	2,708	1,828	1,223
융자금	195,117	185,867	170,786	161,534	157,903
미수금	2,373	313	455	151	722
기타채권	12,282	11,087	8,915	7,152	12,952
교육비특별회계	215,622	201,227	182,615	170,416	172,552
보증금	5,850	3,960	2,460	1,580	975
융자금	195,117	185,867	170,786	161,534	157,903
미수금	2,373	313	455	151	722
기타채권	12,282	11,087	8,915	7,152	12,952
기금	248	248	248	248	248
보증금	248	248	248	248	248
융자금	0	0	0	0	0
미수금	0	0	0	0	0
기타채권	0	0	0	0	0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 최근 5년간 우리교육청의 채권 보유액은 2021년 대비 42,762백만원(-19.8%) 순감소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채권 1,223백만원, 융자금 채권 157,903백만원, 미수금 채권 722백만원, 기타 채권 12,952백만원으로, 융자금채권이 가장 많으며 그 이유는 학자대여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나영	02-6033-6363

5. 기금운용

○ 본 항목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인 기금운용 관련 정보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해당연도 기금 결산서 기준

5-1. 기금 조성 총괄

■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A+B)
		소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계	**1,422,000**	**-172,564**	**34,796**	**207,360**	**1,249,43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114,626	-71,799	14,372	86,171	42,827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3,522	4,669	18,165	13,496	8,19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45,962	-105,434	2,259	107,693	840,528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51	0	0	0	45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57,440	0	0	0	357,44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49,436백만원이고 전년 대비 172,564백만원 순감소함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총무과	백화	02-6033-5118
안전총괄담당관	조설아	02-6033-535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송태은	02-6033-5461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박이연	02-6033-5832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우효진	02-6033-6402

5-2.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년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년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상황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	2016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공유재산처분대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	114,626	14,372	128,998	86,171	42,827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학교안전공제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 충당 등	2007	공제료 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3,522	18,165	21,686	13,496	8,190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MMT, 보통예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시설법 제30조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	202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945,962	2,259	948,221	107,693	840,528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지원	202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1	0	451	0	451	정기예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 운용	202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357,440	0	357,440	0	357,440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5개이며,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신청사 건립기금 42,827백만원,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8,190백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40,528백만원, 생태전환교육기금 451백만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57,440백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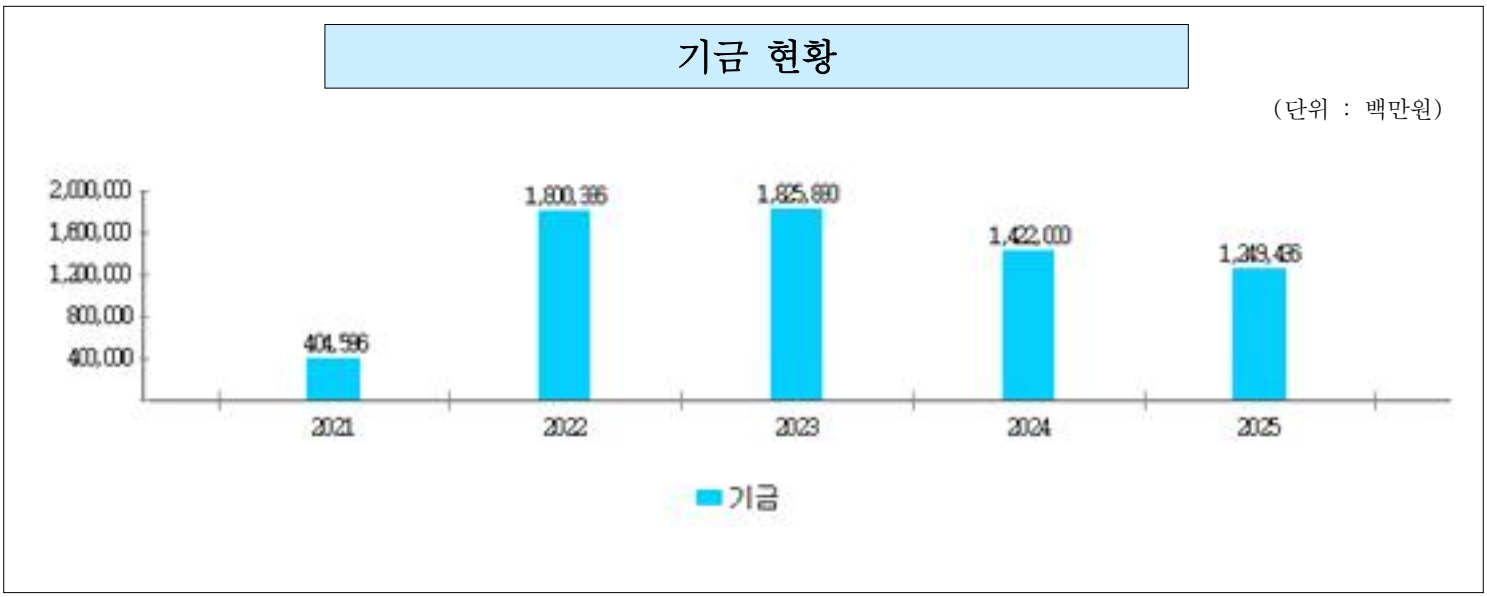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총무과	백화	02-6033-5118
안전총괄담당관	조설아	02-6033-535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송태은	02-6033-5461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박이연	02-6033-5832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우효진	02-6033-6402

5-3. 기금 연도별 현황

■ 연도별 ’ 기금 결산서’ 총괄 현황의 기준연도 조성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404,596**	**1,800,336**	**1,825,880**	**1,422,000**	**1,249,43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75,777	115,169	140,161	114,626	42,827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8,472	7,312	3,532	3,522	8,19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18,411	1,209,504	1,016,105	945,962	840,528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0	418	420	451	45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0	465,100	665,663	357,440	357,44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은 전년 대비 71,799백만원 순감소한 42,827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전년 대비 4,669백만원 순증가한 8,190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전년 대비 105,434백만원 순감소한 840,528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전년 대비 변동 없이 451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변동 없이 357,440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총무과	백화	02-6033-5118
안전총괄담당관	조설아	02-6033-535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송태은	02-6033-5461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박이연	02-6033-5832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우효진	02-6033-6402

6. 공유재산 및 물품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제5호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기준

■ 공유재산이란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종류별로 현재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6-1-1. 공유재산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32,264,378**		**281,151**		**479,002**		**197,851**		**32,545,529**
토지	㎡	14,071,456	22,452,776	12,206	74,014	60,887	204,136	48,682	130,122	14,083,662	22,526,791
건물	㎡	11,301,541	9,403,129	-1,294	191,177	133,885	246,808	135,178	55,631	11,300,247	9,594,306
공작물	식	395,399	351,192	75,842	16,778	77,715	26,519	1,873	9,741	471,241	367,970
입목죽	본	1,289,974	50,221	2,960	-728	25,845	1,314	22,885	2,043	1,292,934	49,492
기계·기구	점	248	5,030	0	-44	9	184	9	229	248	4,986
선박·항공기	척(대)	0	0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건	4,460	1,007	-226	-46	201	40	427	86	4,234	961
유가증권	주	0	0	0	0	0	0	0	0	0	0
지상권 등 용익물권	건	4	1,020	0	0	0	0	0	0	4	1,020
특허권등 기타권리	건	10	3	0	0	0	0	0	0	10	3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281,151백만원 순증가한 32,545,529백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신승엽	02-6033-6379

6-1-2. 물품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위	내용 연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매각	관리 전환	양여	폐기	기타	
합계				**수량**	**26258**	**662**	**12**	**2**	**34**	**17**	**23**	**122**	**1748**	**96**	**24962**
				금액	**75,837**	**3,344**	**25**	**8**	**172**	**226**	**47**	**230**	**4,026**	**207**	**74,650**
25101501	미니버스		8년	수량	15	0	0	0	0	1	0	0	0	0	14
				금액	618	0	0	0	0	115	0	0	0	0	503
25101502	버스		8년	수량	28	2	0	0	0	1	0	0	1	0	28
				금액	4,230	460	0	0	0	80	0	0	166	0	4,443
25101503	일반승용차		8년	수량	22	0	0	0	0	0	0	0	0	0	22
				금액	557	0	0	0	0	0	0	0	0	0	557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7년	수량	6	0	0	0	0	0	0	0	1	0	5
				금액	164	0	0	0	0	0	0	0	28	0	135
25101509	전기승용자동차		6년	수량	3	0	0	0	0	0	0	0	0	0	3
				금액	153	0	0	0	0	0	0	0	0	0	153
25101518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		8년	수량	7	0	0	0	1	0	0	0	0	0	8
				금액	371	0	0	0	53	0	0	0	0	0	424
25101521	전기미니버스		9년	수량	1	1	0	0	0	0	0	0	0	0	2
				금액	128	203	0	0	0	0	0	0	0	0	331
25101611	화물트럭		7년	수량	12	0	0	0	0	0	0	0	0	3	9
				금액	247	0	0	0	0	0	0	0	0	58	190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10년	수량	581	63	0	0	1	0	0	0	29	10	606
				금액	1,868	121	0	0	1	0	0	0	104	1	1,885
43211501	컴퓨터서버		6년	수량	478	12	0	0	2	0	0	5	48	5	434
				금액	7,894	119	0	0	19	0	0	11	355	8	7,658
44101501	복사기		6년	수량	1867	95	4	0	3	6	4	0	206	11	1742
				금액	5,819	349	8	0	10	15	8	0	585	19	5,557
45101507	인쇄기		11년	수량	1150	51	1	1	7	1	1	1	75	5	1127
				금액	5,886	281	5	5	29	5	5	5	351	25	5,816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8년	수량	16398	268	6	0	17	2	14	112	1172	42	15347
				금액	39,788	1,204	11	0	56	4	30	211	2,152	75	38,586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위	내용 연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매각	관리 전환	양여	폐기	기타	
45121516	디지탈캠코더또는비디오 카메라		9년	수량	5179	94	1	1	2	6	4	4	184	20	5059
				금액	7,269	136	0	2	4	6	3	2	243	20	7,135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6년	수량	511	76	0	0	1	0	0	0	32	0	556
				금액	844	471	0	0	1	0	0	0	40	0	1,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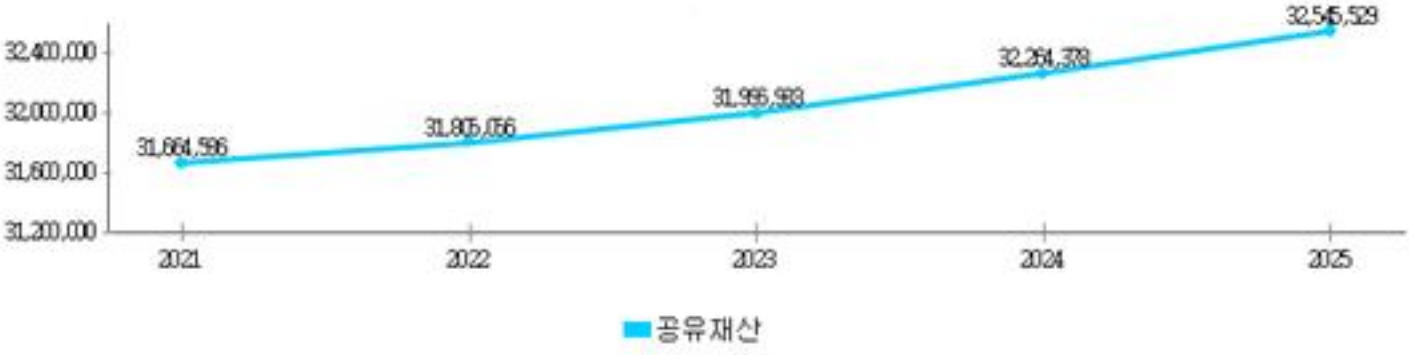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전년대비 1,187백만원 순감소한 74,650백만원으로, 취득의 구매(3,344백만원), 관리전환(25백만원), 양여(8백만원), 기타(172백만원)의 합계가 처분의 매각(226백만원), 관리전환(47백만원), 양여(230백만원), 폐기(4,026백만원), 기타(207백만원)의 합계보다 작아서 물품 현재액이 순감소함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희연	02-6033-6372

6-2-1. 공유재산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당해연도말 현재액	31,664,586	31,805,056	31,996,983	32,264,378	32,545,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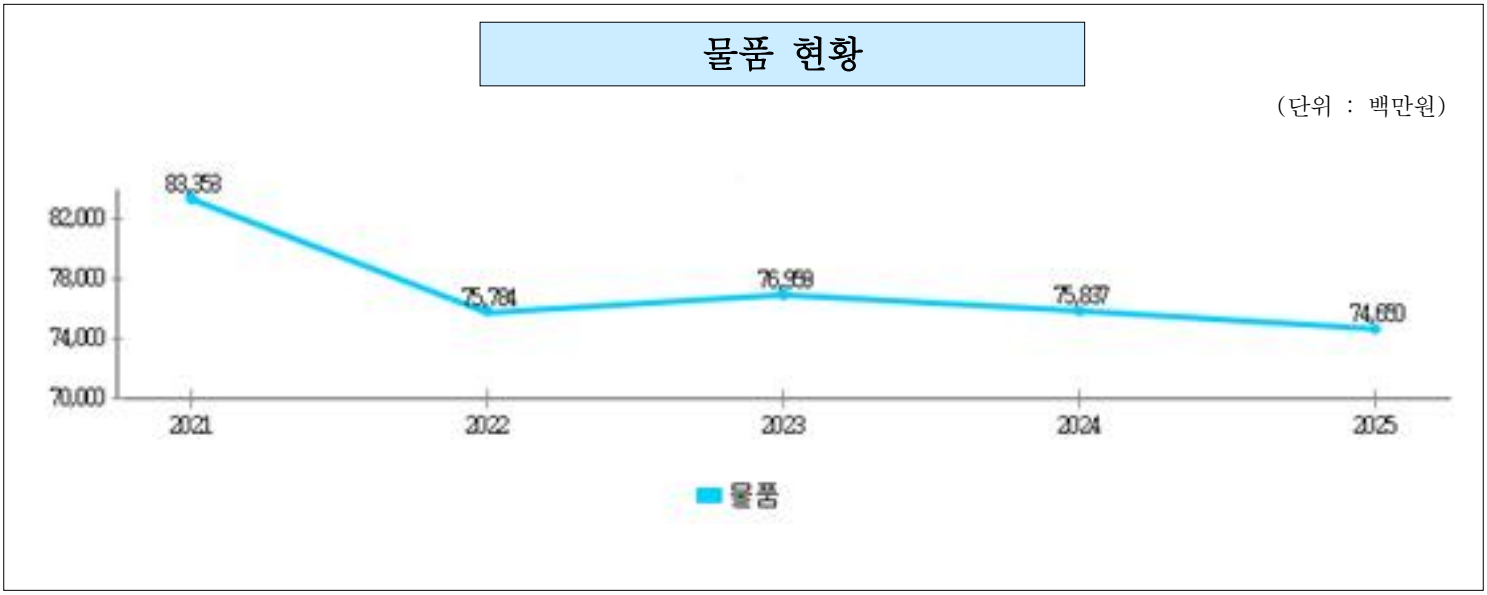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281,151백만원 순증가한 32,545,529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신승엽	02-6033-6379

6-2-2. 물품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당해연도말 현재액	83,353	75,784	76,969	75,837	74,65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전년대비 1,187백만원 순감소한 74,650백만원임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된 2014년이후 정수관리대상 물품액 기준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희연	02-6033-6372

6-3. 폐교자산

(단위 : 개교)

구분	폐지 학교수 (E=A+D)	처분현황				관리현황								
		매각	반환	교환	계 (A)	활용현황			미활용 폐교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					계 (D=B+C)
						대부 (임대)	자체 활용	소계 (B)	매각	대부	자체 활용	보존	소계 (C)	
2024년까지	7	1	0	0	1	1	5	6	0	0	0	0	0	6
2025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7**	**1**	**0**	**0**	**1**	**1**	**5**	**6**	**0**	**0**	**0**	**0**	**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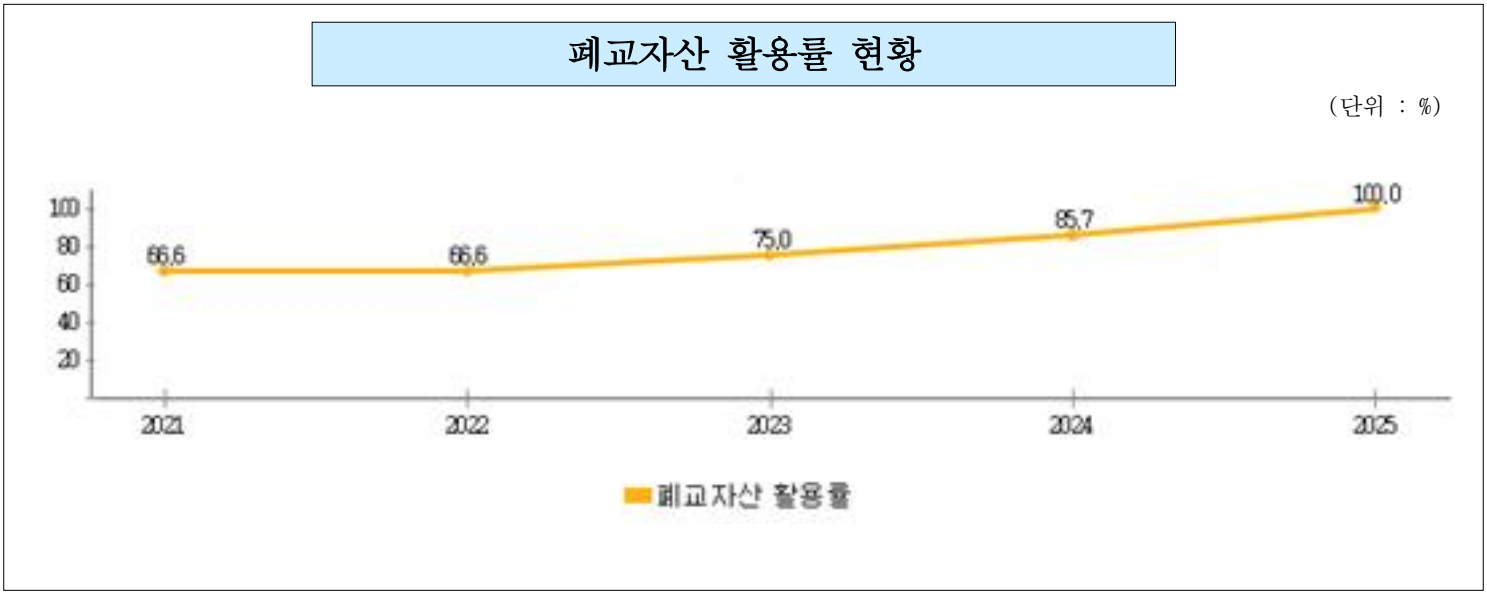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폐교자산 활용현황 중 처리종결은 7개교이며, 관리중인 폐교는 7개교로 활용률은 100%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최종민	02-6033-6376

6-4. 폐교자산 연도별 활용률

(단위 :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폐교자산 활용률	66.6	66.6	75.0	85.7	100.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폐교자산 활용률은 전년대비 14.3% 순증가한 00%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최종민	02-6033-6376

7. 지역통합재정통계

○ 본 항목은 지방정부(일반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교육재정 부문을 포괄하는 지역단위의 재정통계를 공개하는 정보임
○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제6호
○ 해당연도 교육청 및 지자체 결산 기준

■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교육재정 부문을 포괄하는 지역단위의 재정통계를 산출·공개하는 정보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입 (A)	세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합계		0	0	0	0	0	0.0

○ 해당 금액은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연계한 자료로,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교육재정/내부거래별 금액은 각 시·도별 자치단체 홈페이지 내 재정공시 보고서 참고_추후 작성
※ 단, 지방재정365 및 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자료 내 '교육재정' 금액은 실제 시·도교육청별 세입, 세출, 자산, 부채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해당 항목은 자치단체별 결산기준 재정공시 완료 후 별도 공시 예정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나영	02-6033-6363

8. 성인지 결산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제9호 및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 (B/A)*100
합 계	**32**	**289,894**	**292,991**	**189,060**	**64.5**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7	52,693	52,693	50,044	95.0
성별영향평가사업	6	185,140	186,782	86,684	46.4
교육부지정사업	15	40,841	40,841	39,826	97.5
자체선정사업	4	11,220	12,675	12,506	98.7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성인지 사업 분류 중 교육부지정사업은 사업 수 15개로 가장 많고, 자체선정사업은 사업 수 4개로 가장 적음
○ 자체선정사업은 예산현액 12,675백만원 대비 지출액 12,506백만원으로 집행률(98.7%)이 높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예산현액 186,782백만원 대비 지출액 86,684백만원으로 집행률(46.4%)이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나영	02-6033-6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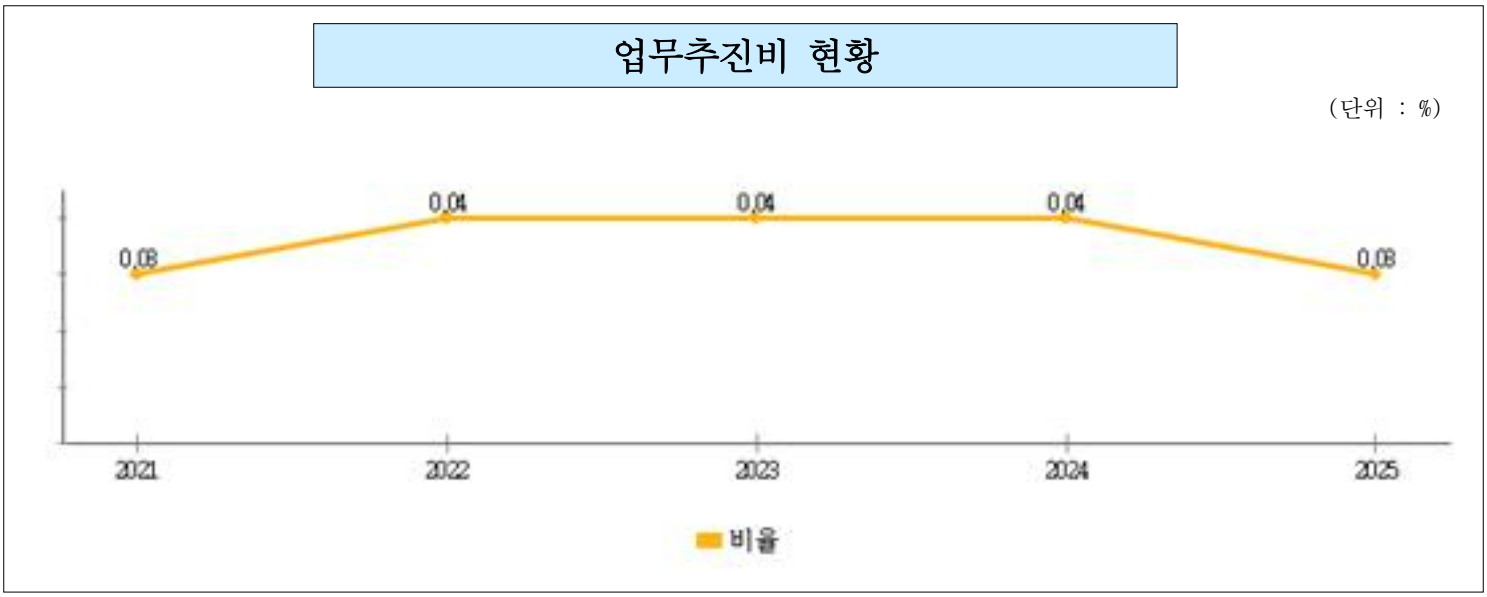
9. 예산 편성 기준별 운영상황

○ 본 항목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60조제1항제10호
○ 해당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임

9-1. 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세출결산액(A)	11,445,002	12,811,043	11.9	11,766,498	-8.2	11,993,508	1.9	11,920,342	-0.6
업무추진비(B)	3,706	4,497	21.3	4,941	9.9	4,406	-10.8	3,895	-11.6
비율(B/A×100)	**0.03**	**0.04**	**8.4**	**0.04**	**19.6**	**0.04**	**-12.5**	**0.03**	**-11.1**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11백만원 순감소한 3,895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0.03%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10. 재정운용상황

10-1. 재정지표

○ 본 항목은 시·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알 수 있는 재정자주도와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알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 그리고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알 수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정보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60조제1항제11호 등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기금 포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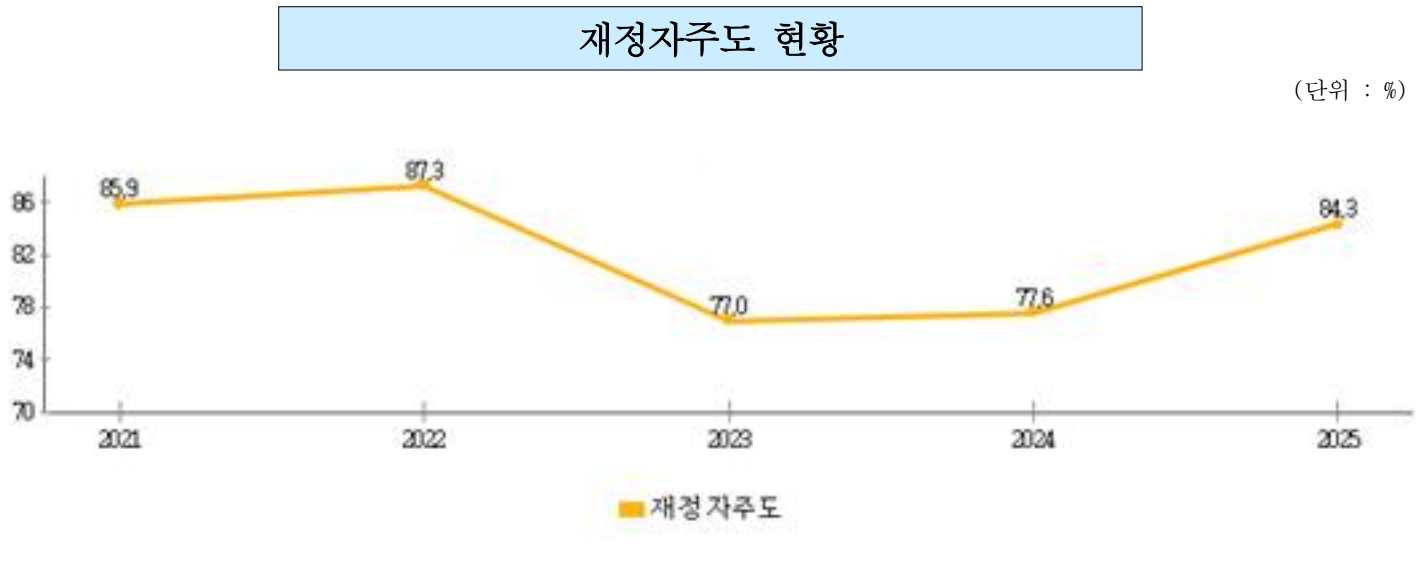
10-1-1.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시·도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재정자주도((B+C+D)/A×100)	**85.9**	**87.3**	**1.5**	**77.0**	**-11.7**	**77.6**	**0.7**	**84.3**	**8.6**
세입결산액(A)	12,202,397	14,738,178	20.8	13,314,516	-9.7	13,008,758	-2.3	12,698,113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B)	6,172,594	8,019,377	29.9	5,897,309	-26.5	5,960,314	1.1	6,428,314	7.9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목적성 경비 제외, (C))	4,105,499	4,627,242	12.7	4,238,695	-8.4	4,050,079	-4.4	4,170,725	3.0
자체수입(D)	208,843	215,878	3.4	121,033	-43.9	85,969	-29.0	103,784	20.7

*본 항목의 '자체수입'은 장별 세입의 '자체수입(2-2-1 및 2-2-3)'과 상이함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8.6% 순증가한 84.3%로 이는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2.4%) 감소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7.9%),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3.0%) 등 주요 자주재원이 일제히 증가한 것에 의한 것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10-1-2.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합니다.

■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시·도교육청으로 유입되는 비상환성 수입을 말하며, 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으로 구분되고,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에 시·도교육청이 지출하는 비상환성 지출로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되며, 융자회수 및 융자지출은 유동성이 목적이 아닌 정책목적의 대출 및 대출금의 회수를 의미합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통합재정수지Ⅰ(A=B-C)	**827,887**	**2,608,763**	**215.1**	**-305,400**	**-111.7**	**-920,731**	**-201.5**	**-389,644**	**57.7**
통합재정수입(B)	11,536,888	13,996,621	21.3	11,438,957	-18.3	11,202,828	-2.1	11,709,858	4.5
경상수입	214,615	209,938	-2.2	284,351	35.4	243,440	-14.4	175,382	-28.0
이전수입	11,300,893	13,754,006	21.7	11,106,764	-19.2	10,940,086	-1.5	11,517,373	5.3
자본수입	2,183	21,777	897.6	31,181	43.2	9,170	-70.6	12,852	40.1
융자회수	19,197	10,900	-43.2	16,661	52.9	10,132	-39.2	4,251	-58.0
통합재정지출(C)	10,709,001	11,387,857	6.3	11,744,357	3.1	12,123,560	3.2	12,099,502	-0.2
경상지출	9,608,194	10,335,275	7.6	10,514,047	1.7	10,720,324	2.0	10,783,428	0.6
자본지출	1,100,807	1,052,583	-4.4	1,230,310	16.9	1,403,235	14.1	1,316,059	-6.2
융자지출	0	0	0.0	0	0.0	0	0.0	15	0.0
통합재정수지Ⅱ(D=A+E)	**1,155,196**	**3,070,045**	**165.8**	**1,016,031**	**-66.9**	**-157,525**	**-115.5**	**-93,126**	**40.9**
순세계잉여금(E)	327,309	461,281	40.9	1,321,431	186.5	763,207	-42.2	296,518	-61.1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531,087백만원 순증가한 -389,644백만원으로 적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10-1-3. 행정운영경비 비율

■ 행정운영경비는 시·도교육청의 행정기관 및 단위학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경비와 기관(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세출결산액(A)	11,445,002	12,811,043	11.9	11,766,498	-8.2	11,993,508	1.9	11,920,342	-0.6
행정운영경비 비율(B/A×100)	**61.2**	**58.2**	**-4.9**	**65.4**	**12.3**	**67.4**	**3.0**	**69.0**	**2.4**
행정운영경비(B=C+D)	7,006,150	7,462,027	6.5	7,696,527	3.1	8,079,384	5.0	8,222,972	1.8
교육기관(C)	6,400,050	6,823,440	6.6	7,030,466	3.0	7,379,971	5.0	7,487,081	1.5
인력운영경비	5,465,935	5,787,768	5.9	5,922,796	2.3	6,288,107	6.2	6,417,789	2.1
기본경비	934,115	1,035,672	10.9	1,107,670	7.0	1,091,864	-1.4	1,069,293	-2.1
행정기관(D)	606,100	638,586	5.4	666,061	4.3	699,413	5.0	735,891	5.2
인력운영경비	569,953	596,125	4.6	618,425	3.7	652,298	5.5	685,252	5.1
기본경비	36,147	42,461	17.5	47,635	12.2	47,115	-1.1	50,639	7.5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 기준 행정운영경비는 교육기관 7,487,081백만원(91.1%), 행정기관 735,891백만원(8.9%)으로 총 8,222,972백만원이며, 세출결산 대비 69.0%의 비율을 보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10-1-4. 예비비 비율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세출결산액(A)				11,766,498	0.0	11,993,508	1.9	11,920,342	-0.6
예비비 비율(B/A×100)				0.130	0.0	0.043	-66.9	0.261	507.0
예비비(B=C+D)				15,278	0.0	5,114	-66.5	31,169	509.5
일반 예비비(C)				12,623	0.0	2,021	-84.0	23,109	1043.6
재해재난목적예비비(D)				2,655	0.0	3,093	16.5	8,060	160.5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기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3,109백만원(74.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60백만원(25.9%)으로 총 31,169백만원이며, 세출결산 대비 (0.26%)의 비율을 보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민선	02-6033-5457

10-1-5. 기금전출금 비율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설치 운영 관리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전출금 결산액(A)	세출결산액(B)	기금전출금 비율 (A/B*100)	전출 근거
합계	7,800	11,920,342	0.06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7,800	11,920,342	0.06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0	11,920,342	0.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11,920,342	0.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0	11,920,342	0.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0	11,920,342	0.00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기준 기금전출금은 7,800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총무과	백화	02-6033-5118
안전총괄담당관	조설아	02-6033-535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송태은	02-6033-5461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박이연	02-6033-5832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우효진	02-6033-6402

10-2. 지방부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44조의2제2항2~3호 및 동법 시행령제49조의3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기준

10-2-1. 통합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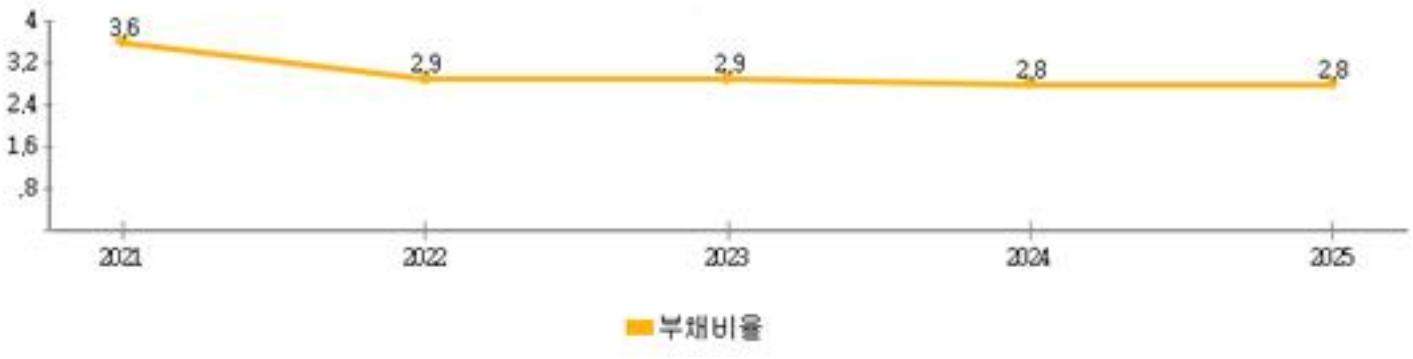
■ 부채는 가지고 있는 총재산 중 외부에서 빌려온 재산을 현시점 또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상대방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부채의 분류는 상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1년 이내 상환)와 장기차입부채(1년 이상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통합자산(A)	16,837,625	19,195,859	14.0	18,678,032	-2.7	18,079,374	-3.2	18,588,884	2.8
통합부채(B)	**613,837**	**557,125**	**-9.2**	**548,239**	**-1.6**	**506,943**	**-7.5**	**511,771**	**1.0**
유동부채	133,336	127,743	-4.2	115,599	-9.5	133,807	15.8	148,641	11.1
장기차입부채	480,435	417,331	-13.1	352,891	-15.4	286,251	-18.9	268,934	-6.0
기타비유동부채	67	12,051	17,889.0	79,749	561.8	86,886	8.9	94,196	8.4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3.6**	**2.9**	**-19.4**	**2.9**	**0.0**	**2.8**	**-3.4**	**2.8**	**-1.8**

부채비율 현황

(단위 : %)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부채는 전년대비 4,828백만원 순증가한 511,771백만원으로 부채의 증가의 주요 요인은 유동부채의 증가(14,834백만원)에 의한 것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10-2-2. 우발부채

■ 우발부채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따른 잠재적인 부채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통합자산	18,079,374	18,588,884	2.8
우발부채	**9,800**	**9,886**	**0.9**
지급보증	0	0	0.0
채무부담행위	0	0	0.0
계약상 약정	0	0	0.0
소송사건	9,800	9,886	0.9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우발부채는 소송사건 관련인 9,88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안성훈	02-6033-6365

10-2-3. 지방채 부담률

■ 최근 5년간의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담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방채 부담률(B/A×100)	0.0	0.0	0.0	0.0	0.0
통합자산(A)	0	0	0	0	18,588,884
지방채 기말잔액(B=C+D-E)	**0**	**0**	**0**	**0**	**0**
직전연도 상환잔액(C)	0	0	0	0	0
발행액(D)	0	0	0	0	0
상환액(E)	0	0	0	0	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채 부담률은 0.0%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윤진주	02-6033-6362

10-2-4. 민간투자사업(BTL)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시·도교육청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시·도교육청이 임차(Lease)하고 정부지급금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추진 학교수			총 민간투자 사업비(A)			21년 이전 기 상환액 (B)	상환액(C)					향후 상환 예정액 (D)	합계 (B+C+D)
	신설	증·개축등	계	당초 (a)	조정 (b)	최종 (a+b)		2021	2022	2023	2024	2025		
민자사업지급금	33	110	143	1,039,234	0	1,039,234	487,689	60,084	61,616	63,092	64,430	66,694	339,552	1,143,157

○ 민간투자사업 추진 학교수는 143개교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은 66,694백만원이며 향후 잔액은 339,552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이현민	02-6033-6412

10-3. 재정분석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 해당연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기준

■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6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지표 및 항목명		교육청	전국평균	지역평균	실적
재정건전성(3개)	1.통합재정수지 비율	0.0	0.0	0.0	
	2.경상적 지출 비율	0.0	0.0	0.0	
	3.관리채무 비율	0.0	0.0	0.0	
재정효율성(9개)	4.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4-1.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0.0	0.0	0.0	
	4-2.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0.0	0.0	0.0	
	5.본예산 편성 비율				
	5-1.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	0.0	0.0	0.0	
	5-2.시설비 본예산 편성 비율	0.0	0.0	0.0	
	5-3.인건비 본예산 편성 비율	0.0	0.0	0.0	
	6.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및 증감률	0.0	0.0	0.0	
	7.지방세(법정) 분기별 전입 비율(예비)	0.0	0.0	0.0	
	8.예산집행 비율 및 증감률				
	8-1. 이·불용액 비율 및 증감률	0.0	0.0	0.0	
	8-2. 시설비 집행 비율 및 증감률	0.0	0.0	0.0	
	8-3. 학교회계 이·불용액 비율	0.0	0.0	0.0	
	8-4. 예산 신속집행 비율('26회계연도 기준)	0.0	0.0	0.0	
	8-5. 하반기 재정집행 비율(예비)	0.0	0.0	0.0	
	9.개교 3-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수용 학교수 비율	0.0	0.0	0.0	
	10.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의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	0.0	0.0	0.0	
	11.기금 운용 현황	0.0	0.0	0.0	
	12.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	0.0	0.0	0.0	
재정책무성(3개)	13.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14.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실적				
	15.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비율	0.0	0.0	0.0	
감점지표(1개)	재정 법령 준수 및 재정분석 대응도				
가점지표(1개)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제고를 위한 노력도				

※ 10-3. 재정분석은 해당연도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
※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최종 데이터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 자료실 확인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권수진	02-6033-5462

10-4.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2항제5호

■ 우리 교육청이 감사원,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 감사기관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분야 감사 처분 결과는 해당사항 없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감사관	김연재	02-6033-5288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 법적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8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 감 액 : 법령위반 과다 지출 및 징수 태만,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이·불용률)
※ 인센티브 : ①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2025회계연도에 우리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보통교부금 자체노력으로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주요내용	교부금액
감액	자체노력수요	재정집행효율화(이·불용률)	-15,000
증액	자체노력수요	통합운영학교지원	1,000
증액	자체노력수요	외부교육투자 유치	4,371
증액	지방교육재정분석	지방교육재정 개선사례 우수 교육청	50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정집행효율화(이·불용률) 목표 미달성으로 교부금이 15,000백만원 감소하였고, 통합운영학교지원, 외부교육투자유치, 지방교육재정 개선사례 우수 교육청 등으로 5,871백만원 증액됨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송태은	02-6033-5461

10-7. 예산 집행비율

■ 우리 교육청의 2025년 예산 집행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현액(A)	당해연도 세출결산액(B)	당해연도 예산집행률 (C= (B/A)×100)	전년도 예산집행률(D)	비율 증감률 ((C-D)/D)×100
12,658,203	11,920,342	94.2	89.5	5.2

○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률은 94.2%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11. 재정건전화 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해당없음

1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해당없음

13.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3-1. 투자심사 대상사업

○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추진 중인 사업 기준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의4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 우리 교육청에서 202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2]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투자 심사연도	전년도까지 집행사업비	당해연도 집행사업비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합계	**1,328,087**		**4,681**	**5,753**	**1,317,653**		
(가칭)성진학교 신설	52,560	2025	59	0	52,501	2029	0.1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개최	2,697	2025	661	668	1,368	2025	49.3
(가칭)서울강솔초 강현캠퍼스 신설	26,894	2025	34	74	26,785	2029	0.4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신설	28,630	2025	41	8	28,582	2029	0.2
서울대모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9,192	2025	25	104	9,063	2027	1.4
서울영문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4,671	2025	20	0	4,651	2028	0.4
서울용강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특별교실 증축	5,166	2025	19	0	5,147	2029	0.4
서울남부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19,140	2025	87	49	19,004	2028	0.7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 조성(신길5구역)	38,487	2025	181	46	38,260	2030	0.6
서울용마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649,852	2025	160	0	649,692	2031	0.0
서울화곡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47,474	2025	961	1,377	45,136	2029	4.9
서울구로초 공간혁신 개축사업	35,698	2025	40	0	35,658	2031	0.1
장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21,666	2025	65	86	21,515	2028	0.7
노원평생학습관증축 및 리모델링	19,633	2025	40	0	19,593	2029	0.2
대천임해교육원 별관동 리모델링	18,924	2025	0	0	18,924	2028	0.0
일신여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체육관동 리모델링	22,120	2025	100	44	21,976	2028	0.7
광운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15,947	2025	632	1,576	13,739	2032	13.8
(가칭)강율초 신설	29,023	2025	0	0	29,023	2029	0.0
영파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34,715	2025	813	1,424	32,478	2029	6.4
서울도솔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개축 사업	40,074	2025	152	0	39,923	2030	0.4

2) 투자심사는 시·도교육청의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자체 또는 상급기관이 동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함

사업명	총사업비	투자 심사연도	전년도까지 집행사업비	당해연도 집행사업비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영동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33,245	2025	116	3	33,126	2029	0.4
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16,006	2025	0	0	16,006	2028	0.0
서울안평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29,544	2025	72	0	29,472	2029	0.2
신현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	5,564	2025	0	18	5,545	2028	0.3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4,340	2025	30	190	4,120	2027	5.1
신서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6,060	2025	189	42	5,829	2027	3.8
서울특별시교육청 AI센터 구축	8,861	2025	0	44	8,817	2027	0.5
서울용두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34,011	2025	80	0	33,931	2031	0.2
서울한천초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67,894	2025	106	0	67,788	2030	0.2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사업 건수는 29건임
○ 2024년까지의 집행사업비는 4,681백만원이고, 2025년도의 사업비는 5,753백만원이고, 이후 사업비는 1,317,653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권수진	02-6033-5462

2) 투자심사는 시·도교육청의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자체 또는 상급기관이 동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함

□ 개별 투자심사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가칭)성진학교 신설	담당자	학교지원과 선혜영(☎6033-63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지체장애 특수학교 지역별 균형배치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2. ~ 2029. 3.

○ 위 치 : 서울 성수동2가 333-128(성수공고 이전적지)

○ 규 모 : 총 연면적 16,178.,4㎡

(지하1층) 주차장 4,500㎡

(지상) 교사 연면적 6392.25㎡, 급식실 및 식당(252㎡)

(공용면적) 5,034.1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560백만원(개축, 이전적지 활용으로 용지비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52,560	58	0	2,024	50,478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25,060	58	0	2,024	22,978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교부금)	27,500	0	0	0	27,5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1%)

○ (2025. 7.) 공유재산 심의 통과(적정)

○ (2025. 9.)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원안가결)

○ (2025. 9. ~ 2026. 1.) 설계공모 공고, 당선작 선정

□ 향후계획

○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 2026. 2. ~ 2029. 2.

○ 개교(예정) : 2029. 3.

□ 사업변경 내역

○ 자료 제출일 기준 해당 없음

사업명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담당자	진로직업교육과 정재은(☎6033-61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체험 중심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함양

☐ 사업개요

○ 기 간 : 2025. 7. 16.(수) ~ 7. 19.(토) [4일간]

○ 위 치 : aT센터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규 모 : 40,000명 참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2,696	661	667	667	700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2,696	666.2	665.7	665.7	700.0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9.3%)

○ 2025년 박람회 개최완료

☐ 향후계획

○ 매년 7월 중 시행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가칭)강솔초 강현캠퍼스 신설	담당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혜란(☎3434-43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덕강일 3지구는 주택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도시형캠퍼스를 조성하여 고덕강일 3지구 12BL 입주('26.10월)에 따른 학생 수요에 대응하고,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5. ~ 2029. 2.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77-56 외

○ 규 모 : 총 연면적:8,586.31㎡

(1층) 교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2922.59㎡

(2층) 교실 및 체육관 3,066.00㎡

(3층) 교실 1,646.73㎡

(4층) 교실 950.9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용지비 제외) : 26,893백만원[용지비 33,682백만원 제외(SH무상공급)]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26,893	34	74	3,351	23,434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26,893	34	74	3,351	23,434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4%)

○ 설계 진행 중(~26. 10.)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2027. 2.

○ 공사 준공: 2029. 2.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해당없음

사업명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신설	담당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동영(☎3434-43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중학생 증가가 예상되나, 정규 중학교 설립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도시형캠퍼스를 조성하여 학생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여건 및 통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5. ~ 2029. 2.

○ 위 치 : 강동구 둔촌동 180-4 일대

○ 규 모 : 총 연면적 9,146㎡

(지하1층) 주차장 1,359㎡

(1~4층) 교사동 7,78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6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28,629	40	7	3,532	25,050
국고보조금	-				
특별교부금	-				
자체재원	28,629	40	7	3,532	25,050
지방보조금	-				
지방채	-				
기타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2%)

○ 설계 진행 중(~26. 9.)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26. 10.

○ 공사 준공 : 2029. 2.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해당없음

사업명	서울대모초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담당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영운(☎02-3015-34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규모 다목적실 및 체육시설을 체육관으로 개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

○ 지하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 증축하여 HACCP시설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실 및 학생식당 조성

○ 본관동과 증축 건물 사이 연결통로가 특별교실(과학실)에 설치되어 이전 설치가 필요하나, 본관동 교실 부족으로 증축 건물에 특별교실 이전 설치

□ 사업개요

○ 기 간 : 2025. 10. ~ 2027. 11.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0길 27

○ 규 모 : 총 연면적 1,957.89㎡

(1층) 필로티 및 계단실 115.21㎡

(2층) 급식실, 학생식당 및 특별교실 980.00㎡

(3층) 체육관 861.9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19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9,192	24	104	1,270	7,794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9,192	24	104	1,270	7,794
지방보조금					
지방교육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4%)

○ 설계완료(100%)

○ 조달청 공사 계약 중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26. 10.

○ 공사 준공 : 2027. 11.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서울영문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담당자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권창우(☎02-2165-034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식환경의 질적 제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HACCP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9. ~ 2028. 4.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로 56

○ 규 모 : 사업면적 1,13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4,671	20	-	210	4,441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4,671	20	-	210	4,441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4%)

○ 2026. 5. 추가경정예산 설계비 및 설계공모보상비 편성 이후 설계공모 준비 중

☐ 향후계획

- 설계공모: 2026. 7. ~ 10.
- 설계용역: 2026.10. ~ 2027. 4.
- 공사착공: 2027. 7.
- 공사준공: 2028. 4.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서울용강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특별교실 증축	담당자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상현(☎390-56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식실, 식당을 설치하여 HACCP 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 특별교실 확보를 통한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8. ~ 2029. 3.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7길 9

○ 규 모 :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595.4㎡

- (1층 308㎡) 급식실 250㎡, 공용면적 58㎡
- (2층 387㎡) 학생식당 329㎡, 공용면적 58㎡
- (3층 450.2㎡) 특별교실 270㎡, 공용면적 180.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165백만원 (용지비 2,491백만원 제외) (투자심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5,165	18		298	4,849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5,165	18		298	4,849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4%)

○ 사전기획 완료(100%)

○ 설계공모 발주 예정

☐ 향후계획

○ 설계공모 : 2026. 7. ~ 2026. 11.

○ 설계 : 2026. 12. ~ 2027. 7.

○ 발주(입찰, 계약 포함) : 2027. 7. ~ 2027. 10.

○ 시굴조사(방학 중) : 2027. 12. ~ 2028. 3.

○ 공사 : 2028. 3. ~ 2029. 3.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서울남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담당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나의인(☎810-847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여건 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3.~2028. 2.

○ 위 치 :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길 14

○ 규 모 : 총면적 8,373.34㎡(본관 리모델링: 7,852.14㎡, 연결통로 증축 352.00㎡, 창고 철거 169.2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1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19,140	87	49	2,203	16,801
국고보조금	2,242	87	49		2,106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16,898			2,203	14,695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7%)

○ 설계 진행(2026. 1.~2026. 9.)

□ 향후계획

○ 공사 추진(2027. 1.~2028. 2.)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해당없음

사업명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 건립	담당자	영등포구청 미래공간과 이진희 (☎3457-723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및 생활 편의 증진 기여

○ 권역 내 초등학교 대부분이 필수교육 과정인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인근 타 자치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0. ~ 2030. 4.

○ 위 치 : 신길동 4961, 4960번지

○ 규 모 : 지하2층, 지상 4층, 대지면적 3,008.6㎡ [신길동 4961(1,027.6㎡), 4960(1981㎡)], 연면적 6,196.52㎡

(지하2층) 수영장, 기계실, 공용면적 등 2,022.17㎡
(지하1층) 주차장, 그로그램실, 공용면적 등 2,150.22㎡
(1층) 로비, 공용면적 209.73㎡
(2층) 주민편의공간, 사무실, 공용면적 등 604.8㎡
(3층) 프로그램실, 공용면적 등 604.8㎡
(4층) 체육관, 공용면적 604.8㎡
※ 설계공모 완료 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각 층별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487백만원(용지비 5,842백만원 제외, *2026.1.1. 기준 공시지가 5,685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38,487	181	46	2,419	35,841
국고보조금	15,591	-	-	2,300	13,291
특별교부금	-	-	-	-	-
자체재원	17,646	181	46	119	17,300
지방보조금(시비)	5,250	-	-	-	5,250
지방채	-	-	-	-	-
기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6%)

○ 설계공모 진행 중

□ 향후계획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2026. 9.

○ 기본・실시설계: 2026. 9. ~ 2028. 1. (17개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2028. 2. ~ 2030. 4. (27개월) ※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당초)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4,730㎡ (현재)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6,196.52㎡

○ 사 업 비: (당초) 28,899백만원 (현재) 38,487백만원

○ 사업기간: (당초) 2023. 10. ~ 2029. 6. (현재) 2023. 10. ~ 2030. 4.

사업명	용마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담당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이영진(☎02-2286-372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여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활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학생식당, 체육관 미보유로 열악한 교육 공간으로 인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마련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8. 2.(착공) ~ 2031. 1.(준공)

○ 위 치 : 광진구 천호대로113길 10

○ 규 모 : 총 연면적 15,884㎡

(지하1층) 주차장 2,640㎡

(교사동) 교실 등 13,24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64,985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64,985	160			64,825
국고보조금	19,495				19,495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45,490	160			45,330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0.02 %)

○ 2026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재보고)

○ 2026년 제2차 중앙투자심사(조건부 통과)

□ 향후계획

○ 행정절차(공유재산심의 등) 이행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학급수 변경(당초: 31학급,유치원 4학급→변경: 23학급, 유치원 미운영)으로 향후 진행 계획 협의중

사업명	서울화곡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담당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조영진(☎02-2600-097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건물(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개축하여 미래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적합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복합화 시설(지하공영주차장)연계 병행하여 지역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 및 교통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21.12. ~ 2029.1.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28(화곡동)

○ 규 모 : 지하2층, 지상4층 / 연면적 13,71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기존 학교용지로 용지비 해당없음) : 47,4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47,474	961	1,377	12,541	32,595
국고보조금	9,957	555	612	1,609	7,181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23,234	406	72	8,432	14,324
지방보조금	9,998		693	2,500	6,805
지방채					
기타 (공모보상)	4,285				4,28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9%)

○ 설계완료(100%)

○ 공사중(7%)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29. 1.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해당없음

사업명	서울구로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	담당자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최민하(☎02-2165-03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개축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을 구현하여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2 ~2031. 6.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7나길9

○ 규 모 : 7,47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69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35,698	40		1,357	34,301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35,698	40		1,357	34,301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1%)

○ 공유재산관리계획 완료 후 설계공모 집행 예정

☐ 향후계획

○ 설계공모 26년 하반기 집행 예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해당없음

사업명	장평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담당자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태연(☎2210-03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48년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을 구현하여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

○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써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2. ~ 2028. 3.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72길 158

○ 규 모 : 총 9,458.08㎡(리모델링 8,206㎡, 존치동 특화 및 재배치 1,24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6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21,666	65	85	438	21,078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21,666	65	85	438	21,078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7%)

○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 후 설계용역 추진 중

○ 설계경제성(VE) 검토 용역 추진 중

☐ 향후계획

○ 금년도 내 설계용역 완료 및 모듈러 설치 착수

○ 시공사 선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노원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담당자	행정지원과 김종삼(☎ 6958-89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시설 개선 요구)** 평생학습관(건립 35년 경과) 시설 노후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한 학습공간 부족 문제 해결

○ **(이용자 수용 공간 부족)** 타 기관과 비교할 때 연간 이용자 수에 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지역 내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 어려움

□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 2029년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4길 13(중계동)

○ 규 모 : 연면적 5,015.16㎡ ※별관 3~4층(809.7㎡) 증축 및 전체 리모델링(4,205.4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196	4	-	8	184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10				10.00
자체재원	186	4	-	8	174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2%)

○ 사전기획용역 완료(100%)

□ 향후계획

○ 설계공모 : 2026.7.~2026.11.

○ 설계용역 : 2026.12~2027.11.

○ 공사 발주 및 건축 공사 : 2027.12.~2029.11.

○ 개관(예정): 2029.12.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총사업비(단위, 백만원) : 180.2(당초) → 196.32(변경)

○ 변경사유 : '24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용 기준 단가는 2024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부재(격년 발행)로 2022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기준단가 적용하게 되었으나, ' 25년 1월 배부된 24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단가 적용 공사비를 현실화 시킴.

사업명	대천임해교육원 별관동 리모델링	담당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박상희(☎041-928-851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별관동 시설 노후화(29년 경과)로 내진 보강 등 **안전성 확보** 필요

○ 사회환경 변화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현대화된 시설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서울교육가족의 쉼과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소통・휴식・문화의 공간** 구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5. 7. ~ 2028. 8.(약 38개월)

○ 위 치 : [건물]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020(해수욕장2길 19)

[유휴부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018

○ 규 모 : [건물] 연면적 5,922㎡ [지하 1층 ~ 지상 4층] , [유휴부지] 1,78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924백만원(189.2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18,924			797	18,127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18,924			797	18,127
지방보조금					
지방교육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설계공모 진행 중

○ 설계공모 공고: 2026. 4. 22. ○ 1차 설계심사: 2026. 6. 24.

□ 향후계획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2026. 1. ~ 2026. 12.

○ 건축 인·허가: 2027. 1. ~ 2.

○ 입찰 공고 및 계약: 2027. 3. ~ 5.

○ 착공 및 준공: 2027. 6. ~ 2028. 8.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일신여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체육관동 리모델링	담당자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2과 하주옥(☎2178-904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주시민 역량 및 학교 자치 역량을 강화

○ 본관2동과 체육관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학교 공간을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3. ~ 2027. 9.

○ 위 치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8길 8(송파동)

○ 규 모 : 총 연면적 7,460.26㎡

(본관2동) 4,398.3㎡, 4층

(체육관) 3,061.96㎡, 지하1층 지상 3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총사업비 : 22,120백만원(용지비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22,120	100	44	663	21,313
국고보조금	100	100			0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22,020		44	663	21,313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7%)

○ 설계공모 예정(2026. 7.)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28. 1.

○ 공사 준공 : 2028.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광운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담당자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2과 하주옥(☎2178-904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58년 이상 경과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을 통한 서울형 미래학교 교육전환의 기초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7. ~ 2032. 3.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월계동)

○ 규 모 : 총 연면적 5,337.34㎡

(리모델링) 4,190.8㎡ (증축) 1,346.5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용지비제외) : 15,947백만원(용지비 667백만원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15,947	632	1,576	5,399	8,340
국고보조금	4,784	282			4,502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11,163	350	1,576	5,399	3,838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3.8%)

○ 설계진행 중(90%)

○ 광운중 및 광운인공지능고의 사업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광운중의 착공시기는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의 사업완료 이후 시점으로 지연 및 모듈러 미사용으로 변경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30. 4.

○ 공사 준공 : 2032. 3.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가칭)강율초 신설	담당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혜란(☎3434-43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덕강일2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신설 추진

○ 강빛초의 과밀을 해소하고 고덕강일2지구 3단지 입주('27.3월)에 따른 학생을 적정 배치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2. ~ 2029. 2.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3-1

○ 규 모 : 총 연면적:8,567.36㎡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290.49㎡

(1층) 교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3,514.64㎡ / (보안관실) 14.40㎡

(2층) 교실 및 체육관 2,904.91㎡

(3층) 교실 1,842.9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용지비 제외) : 29,023백만원[용지비 36,108백만원 제외(SH무상공급)]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29,023			983	28,040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29,023			983	28,040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설계중(~26. 11.)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2027. 2.

○ 공사 준공: 2029. 2.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해당없음

사업명	영파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담당자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2과 하주옥(☎2178-904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58년 이상 된 교사동의 노후화에 따른 개축의 필요성 및 사회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활동 요구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한 미래학교 구현 필요

○ 원격수업의 안정적 운영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수방법 등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교육시설 체계 전환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9. ~ 2029. 3.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65(풍납동)

○ 규 모 : 총 연면적 6,880.00㎡

(본관) 5,880㎡

(지하주차장) 1,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용지비제외) : 34,715백만원(용지비 1,651백만원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34,715	813	1,424	747	31,731
국고보조금	669	669			0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34,046	144	1,424	747	31,731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4%)

○ 사업비 단가변경 및 학급수 감소로 인한 중앙투자 심사 대상이 되어 설계용역 중지

○ 중앙투자심사 결과(적정)에 따라 설계용역 중지 해제 예정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27. 7.

○ 공사 준공 : 2029. 3.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서울도솔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개축 사업	담당자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박건호(☎3499-69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에 따라 적합한 시설 기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축 필요

○ 학생의 안전 확보 및 특수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호 및 교육지원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6. 10. ~ 2030. 12.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화로 15번길 9-26

○ 규 모 : 9,420㎡(교사동 7,660㎡, 지하주차장 1,76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40,074	152	-	-	39,922
국고보조금	-	-	-	-	-
특별교부금	-	-	-	-	-
자체재원	40,074	152	-	-	39,922
지방보조금	-	-	-	-	-
지방채	-	-	-	-	-
기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4%)

○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예정 : 2026. 7. ~ 8.

□ 향후계획

○ 설계 진행 : 2026. 10. ~ 2027. 12.

○ 공사 진행 : 2028. 4. ~ 2030. 12.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규모	8,740㎡ (교사동 7,660㎡, 지하주차장 1,080㎡)	9,420㎡ (교사동 7,660㎡, 지하주차장 1,760㎡)	특수교육과 및 학교의견에 따라 지하주차장 면적조정
총사업비	38,123백만원	40,074백만원	
사업기간	2026. 1. ~ 2030. 2.	2026. 10. ~ 2030. 12.	행정절차 기간 추가소요

사업명	영동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담당자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2과 하주옥(☎2178-904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속 가능하며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IT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미래학교를 조성하고, 미래교육의 목표인 다양성, 창의융합, 시민교육 구현이 가능한 학교시설

☐ 사업개요

○ 기 간 : 2025. 9. ~ 2029. 2.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42(청담동)

○ 규 모 : 총 연면적 13,325.57㎡

(본관) 5,664,47㎡, 지하1층 지상4층

(별관) 3,442.00㎡, 지하1층 지상4층

(해청관) 4,219.10㎡, 지하1층 지상6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용지비제외) : 33,245백만원(용지비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33,245	116	3	5,198	27,928
국고보조금	44	44			0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33201	72	3	5,198	27,928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4%)

○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 학교 내 제반 여건상 추진 불가하다고 철회 의사 제출

☐ 향후계획

○ 사업 취소 절차에 따라 본청 컨설팅 협의 후 재 협의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담당자	진로직업교육과 박가람(☎ 6033-613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27년 3월 서울반도체고 개교를 위한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인 마이스터고의 필수적인 기숙사 시설 확보

○ 서울시 내 유일한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로서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위한 기숙사 시설 확보로 안정적인 주거・학습 환경 조성

○ 기숙사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한 서울반도체고 4학급 64명 3개 학년 총 192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 완비

□ 사업개요

○ 기 간 : 2025. 8월 ~ 2028. 2.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겸재로 21, 서울반도체고 내

○ 규 모 : (기숙사 증축) 건축 연면적 3,471.35m^2(지하 1층 / 지상 5층)

(기숙사 리모델링) 건축 연면적 1060.5$m^{2,}$ 실습동 4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용지비제외)16,0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16,006			3,973	12,033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16,006			3,973	12,033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기숙사 리모델링) 철거공사 완료, 내부 습식공사 마감, 8월 말 완공 예정

○ (기숙사 증축) 설계 중, 2026. 10월 설계 완료 예정

□ 향후계획

○ 기숙사 증축 착공: 2026. 12월, 기숙사 증축 준공: 2028. 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서울안평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담당자	학교시설지원과 이찬희 (☎2210-138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준공 후 41년이 경과되어 기능과 외관이 노후됨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및 학습과정을 수용하기 열악하여 현재 교육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공간변화 및 시설환경 조성이 필요함

○ 추가로 열악한 급식환경을 동시 개선하여 HACCP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급식 제공이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6.01. ~ 2029.10.(45개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4길 61, 서울안평초등학교 내

○ 규 모 : 10,207.44㎡(지상 4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5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29,544	72	-	621	28,851
국고보조금	-	-	-	-	-
특별교부금	-	-	-	-	-
자체재원	29,544	72	-	621	28,851
지방보조금	-	-	-	-	-
지방채	-	-	-	-	-
기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2%)

○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 완료,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

□ 향후계획

○ 금년도 내 설계완료 및 입찰공고 등록 · 시공업체 선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

사업명	신현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담당자	학교시설지원과 이수경(☎2210-139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본관동 내 위치한 다목적강당은 다양한 실내 체육을 하기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원활한 교육 활동 공간으로서 수행 능력이 부족함

○ 체육관을 증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내·외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6. ~ 2028. 5.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62, 신현중학교 내

○ 규 모 :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153㎡

층	면적(㎡)	용도
1층	122	(공용면적) 122㎡ (필로티) 800㎡ [연면적제외]
2층	1,031	(체육관) 922㎡ (연결통로) 10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5,563		18	209	5,336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5,563		18	209	5,336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0.3%)

○ 설계공모 완료 및 보상비 지급,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 예정

□ 향후계획

○ 설계용역 추진: 26. 7. ~ 27. 1

○ 착공 및 준공: 27. 3. ~ 28. 5.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비 변경:

연결복도 단가 수정(증 4,092천원), 인증비 단가 수정(증 8,819천원), 연결복도와 인증비 단가 수정으로 총사업비 변경되어 예비비 변경(증1,291천원) → 총14,202천원 증액됨

○ 사업면적 변경: 세부면적은 동일하나, 연결통로 면적(109㎡) 건축 연면적에 포함(1,044㎡→1,153㎡)

사업명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담당자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상현(☎390-56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식실, 식당을 설치하여 HACCP 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3. ~ 2027. 9.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6길 21

○ 규 모 : 지상 2층, 전체면적 1,180㎡, 건축 연면적 780㎡

- (1층 729㎡)급식실 250㎡, 공용면적 79㎡, 필로티 400㎡(연면적 제외)
- (2층 451㎡)학생식당 301㎡, 교직원식당 41㎡, 공용면적 7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339백만원 (투자심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4,339	29	190	2,000	2,120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4,339	29	190	2,000	2,120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 (추진단계 및 진도 : 5.1%)

○ 본설계 완료(100%), 기존 급식실 리모델링 설계 예정

○ 공사 발주 예정

☐ 향후계획

○ 해체공사 : 2026. 7. ~ 2026. 8.

○ 시굴조사 : 2026. 8. ~ 2027. 10.

○ 발주(입찰, 계약 포함) : 2026. 7. ~ 2026. 10.

○ 공사 : 2026. 11. ~ 2027. 9.

☐ 사업변경 내역

○ 2025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 변경심의 (원안가결)

(변경 사유) 추진 도중 학생배치계획 변동 및 물가상승분 반영, 현장 여건(사면보강 등) 반영

사업명	신서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담당자	학교시설지원과박효진(☎2600-0086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실 배식교로 학생식당 증축이 필요하며, 급식실은 노후되어 원활한 급식 제공이 어려움

○ HCCP기준에 부합하는 위생적인 급식시설 확충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12~2027.2.

○ 위 치 : 서울 양천구 중앙로 206

○ 규 모 : 지상3층 / 연면적 1,982.0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기존 학교용지로 용지비 해당없음) : 6,0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6,060	189	42	3,690	2,139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6,060	189	42	3,690	2,139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공모보상)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8%)

○ 설계완료(100%)

○ 공사중(30%)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27.2.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해당없음

사업명	AI교육센터 구축	담당자	창의미래교육과 최영진(☎6033-570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기반 AI 문제 해결 학습을 통한 미래 역량 강화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AI 교육 생태계 조성

○ 다양한 계층이 활용 가능한 열린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AI 교육 환경 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2025.7. ~ 2027.12.

○ 위 치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2-77), 서울시교육청 구(舊)청사

○ 규 모 : 총 연면적 2,251㎡

(1층) 전시·체험공간, 운영공간, 안내공간 1,125㎡

(2층) 교육공간, 창작·체험공간, 사무공간 1,12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86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8,861	-	44	402	8,415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8,861	-	44	402	8,415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5%)

○ 건축기획용역(100%): '25. 11.

○ 본청 구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총무과): '25. 11.~ '26. 6.

□ 향후계획

○ 본청 구청사 내진 설계(중부교육지원청): 2026. 6.~

○ 공사 착공 : 2027. 3. 예정

○ 공사 준공 : 2027. 12. 예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본청 구 청사 내진 성능 평가가 지연되어 내진 설계 및 공사가 늦어져 AI교육 센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사업명	용두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담당자	학교시설지원과 신재욱(☎2210-13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교사동 개축을 통한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을 구현하여 학생 안전과 학습권확보

○ 공립 병설유치원 신설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6. ~ 2031. 2.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호 13길 43

○ 규 모 : 6,700㎡ [초 18학급(일반17, 특수1), 병설유 4학급(일반3, 특수1)]

※ 2025년 중앙투자심사 조건부적합 기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0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34,011	80			33,931
국고보조금	10,203				10,203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23,808	80			23,728
지방보조금					
지방채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2%)

○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나 공공건축심의 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여 재심의 예정

□ 향후계획

○ 공공건축심의 재심의 예정(7월)

○ 추후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한천초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담당자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박건호(☎3499-69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천초 인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으로 학생수 증가 예상에 따라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교육공간 확보

○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에 투입되는 보수비용 절감 및 시설개선, 내진성능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6. 10. ~ 2030. 12.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45

○ 규 모 : 15,735㎡(교사동 14,225㎡, 지하주차장 1,48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7,8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액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후
계	67,894	106	-	-	67,788
국고보조금	-	-	-	-	-
특별교부금	-	-	-	-	-
자체재원	67,894	106	-	-	67,788
지방보조금	-	-	-	-	-
지방채	-	-	-	-	-
기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2%)

○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예정 : 2026. 7. ~ 8.

□ 향후계획

○ 설계 진행 : 2026. 10. ~ 2027. 12.

○ 공사 진행 : 2028. 4. ~ 2030.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13-2. 지방채 발행사업

○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사업 기준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의4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 우리 교육청에서 2025년에 추진한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특별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방 보조금	자체 재원		
		교부금 부담	자체 부담						
해당 없음	0	0	0	0	0	0	0	0	0.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채 발행사업은 해당 없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윤진주	02-6033-6362

13-3. 민간투자사업(BTL)

○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기준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9조의3제2호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상환해야 하므로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민 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전년도까지 (2024까지)	당해년도 (2025)	향후예정액 (2026이후)	
진관초외2교 신개축및유지관리업무 민간투자시설사업	㈜참교육개발	31,296	26,321	2,229	5,875	2008-07-25~2028-12-09
버들초외3교 신개축및유지관리업무 민간투자시설사업	선진교육시설관리㈜	32,508	28,607	2,405	4,747	2007-08-01~2028-01-31
수명초외4교 신개축 민간투자사업	바른길자산관리㈜	48,861	39,860	3,508	10,380	2008-03-01~2029-03-03
구촌초외3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서울꿈나무㈜	52,893	41,940	3,706	12,536	2008-08-01~2029-05-31
목운초외5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서울한빛배움터㈜	80,666	63,800	5,515	19,418	2009-02-01~2030-01-31
상림초외4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참사람㈜	50,920	39,687	3,492	12,834	2009-03-03~2030-02-11
전농초외5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	전농배움터지킴이㈜	64,994	47,694	4,232	19,567	2009-11-01~2030-07-28
금화초외4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	금화배움터지킴이㈜	35,643	25,552	2,310	11,345	2010-02-27~2031-01-27
고척초외3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	행복한배움터㈜	39,464	29,386	2,563	11,462	2009-12-21~2030-05-17
신상계초외4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	노원학교관리㈜	47,236	32,912	3,052	15,996	2010-05-01~2031-05-11
봉천초외3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	봉천배움터지킴이㈜	45,786	28,288	2,755	19,323	2010-12-24~2032-11-20
신동초외4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	참바른교육㈜	45,650	34,943	3,085	12,186	2009-01-01~2029-10-31
광장초외8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	㈜광장비티엘교육	80,600	61,616	5,442	21,602	2009-02-28~2029-12-31
경동고외7교 증개축 임대형민자사업	㈜경동라이프	60,253	45,051	4,019	17,209	2009-05-19~2030-02-19
성수고외2교 신개축 유지관리업무 임대형민자사업	반올림교육일호㈜	27,995	22,142	1,943	6,710	2009-03-01~2029-03-13
남정초외6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	마루교육㈜	67,136	43,715	4,170	25,965	2011-03-11~2032-03-09
봉화초외24교 체육관및기타시설증축 임대형민자사업	서울학교사랑㈜	43,624	31,620	2,843	13,523	2010-05-11~2030-09-09
신대림초외25교 체육관및기타시설증축 임대형민자사업	서울체육발전㈜	46,445	34,086	3,075	13,928	2010-04-01~2030-03-31
도화초(신도초)외3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뉴타운배움터㈜	47,040	33,299	2,972	15,473	2010-03-04~2031-07-31
하늘초외2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반올림교육삼호㈜	41,980	26,394	2,651	17,133	2011-04-01~2032-02-09
유현초 외 1교(수유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서울미래배움터㈜	18,455	0	255	20,045	2025-08-14~2046-04-30

청량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지에스에스서울청량중㈜	29,789	0	470	32,298	2025-07-23~2045-07-22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된 사업건수는 22건임
○ 2025년도 부담액은 66,694백만원이며,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따라 향후 2026년 이후 부담예정액은 총 339,552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이현민	02-6033-6412

13-4. 보증채무사업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3조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기준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 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4-1. 보증채무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A-B)	발생액(A)	소멸액(B)			
합계	**0**	**0**	**0**	**0**	**0**	**0**	
교육비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회계	0	0	0	0	0	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보증채무액 및 기금회계 보증채무액은 없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윤진주	02-6033-6362

13-4-2. 보증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A)	11,445,002	12,811,043	11,766,498	11,993,508	11,920,342
보증채무 현재액(B)	0	0	0	0	0
보증채무 비율(B/A×100)	0.0	0.0	0.0	0.0	0.0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증채무 현재액은 없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윤진주	02-6033-6362

13-4-3.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당없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윤진주	02-6033-6362

14. 지방보조금(민간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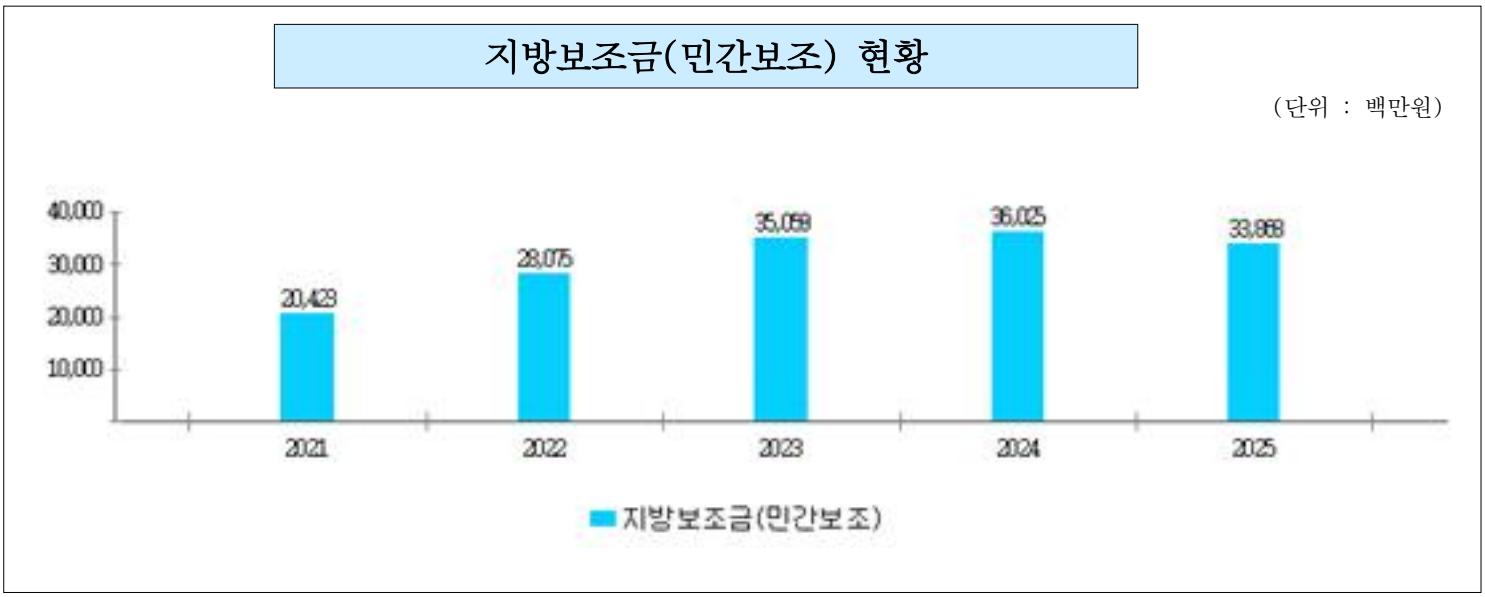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5호, 시·도교육청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 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1.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A)	11,445,002	12,811,043	11,766,498	11,993,508	11,920,342
지방보조금(민간보조)(B)	**20,423**	**28,075**	**35,059**	**36,025**	**33,868**
지방보조금 비율(B/A×100)	0.2	0.2	0.3	0.3	0.3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민간보조)은 전년대비 2,157백만원 순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등을 삭감함에 따른 것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홍정미	02-6033-5463

14-2.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1~12월)	최종정산액
합 계		**33,868**	**33,081**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3,272	3,272
교통봉사자 희망연결시스템운영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31	31
교육후견인제	향기나무 외 17개	252	193
대안교육기관지원	열방아카데미학교 외 124개	5,948	5,82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고드림학교 외 33개	5,773	5,41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 지원	학력인정 서현초등학교 외 4개	276	276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지원	학력인정 서현초등학교 외 32개	15,369	15,135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	서현학교 외 3개	80	78
평생교육기획운영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20	20
문해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살기좋은우리구만들기여성회 외 5개	17	17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외 46개	1,282	1,278
학교형태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노들장애인야학 외 5개	1,144	1,144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강서청소년회관 외 33개	85	85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우성원 외 68개	69	69
병원학교 운영 지원	삼성서울병원 외 8개	243	235
임시이사 파견 법인 법인운영비 지원	학교법인 일광학원	7	6

※ 보조금 집행액은 14-1.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연도별 현황의 금액(교부액)과 일치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홍정미	02-6033-5463

14-3.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등급
		계	보조금	사업자부담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3,272,000	3,272,000	0	보통
교통봉사자 희망연결시스템운영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31,370	31,370	0	보통
교육후견인제	향기나무 외 17개	193,498	193,498	0	보통
대안교육기관지원	열방아카데미학교 외 124개	6,188,905	5,827,981	360,924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고드림학교 외 33개	5,412,491	5,412,491	0	보통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 지원	학력인정 서현초등학교 외 4개	275,859	275,859	0	우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지원	학력인정 서현초등학교 외 32개	15,134,873	15,134,873	0	매우우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	서현학교 외 3개	80,000	80,000	0	미흡
평생교육기획운영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20,000	20,000	0	보통
문해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살기좋은우리구만들기여성회 외 5개	17,164	17,164	0	우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외 46개	1,278,416	1,278,416	0	보통
학교형태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노들장애인야학 외 5개	1,143,987	1,143,987	0	보통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강서청소년회관 외 33개	84,912	84,912	0	보통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우성원 외 68개	69,000	69,000	0	보통
병원학교 운영 지원	삼성서울병원 외 8개	234,968	234,968	0	매우우수
임시이사 파견 법인 법인운영비 지원	학교법인 일광학원	5,850	5,850	0	보통

※ 평가등급(예시) : 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90점 미만~80점), 보통(80점 미만~60점), 미흡(60점 미만~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홍정미	02-6033-5463

14-4. 지방보조금(민간보조)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교육감이 정하는 현재액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방보조금(민간보조)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방보조금(민간보조)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중요재산 :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 항공기, ④ 그 밖에 교육감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홍정미	02-6033-5463

14-5. 지방보조금(민간보조)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청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방보조금(민간보조) 교부결정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방보조금(민간보조)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홍정미	02-6033-5463

15.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법적근거 : 「지방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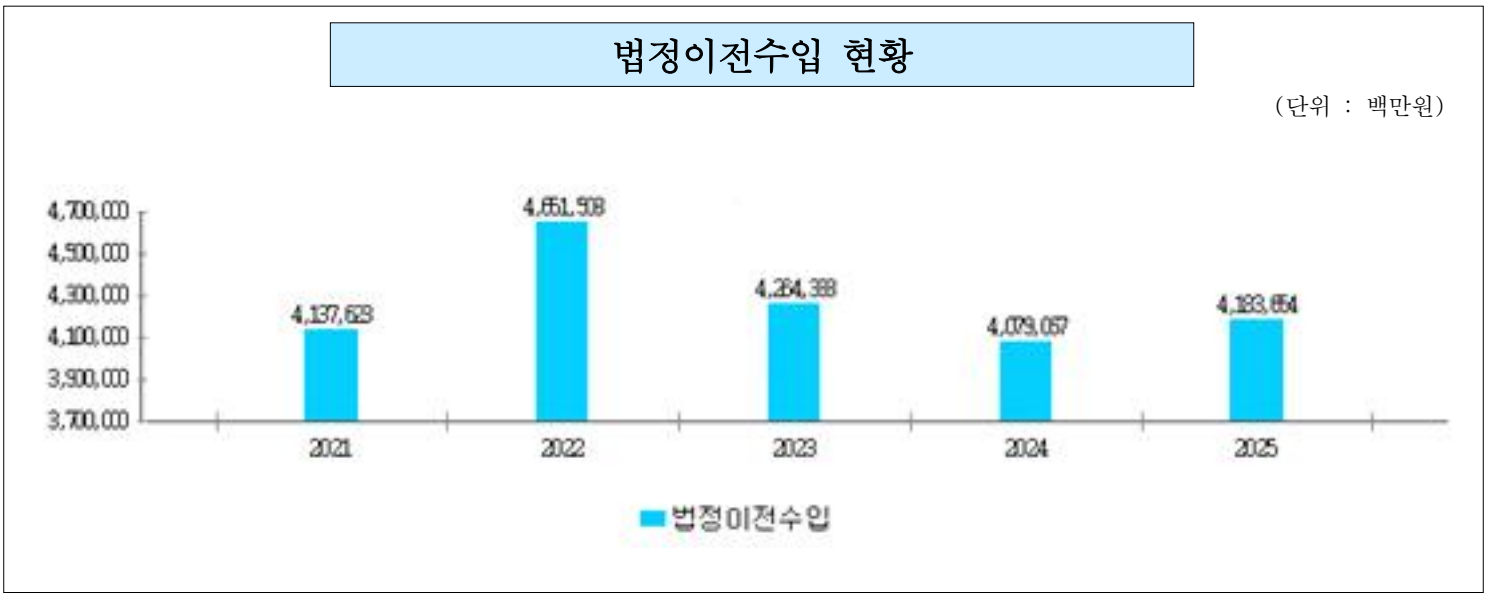
15-1. 지자체 법정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적으로 전출하도록 되어있는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1-1. 법정이전수입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세입결산액	12,202,397	14,738,178	20.8	13,314,516	-9.7	13,008,758	-2.3	12,698,113	-2.4
법정이전수입	**4,137,623**	**4,651,503**	**12.4**	**4,264,388**	**-8.3**	**4,079,067**	**-4.3**	**4,183,654**	**2.6**
지방교육세전입금	1,968,541	2,034,549	3.4	1,848,346	-9.2	1,808,657	-2.1	1,902,908	5.2
담배소비세전입금	261,754	266,449	1.8	275,335	3.3	259,320	-5.8	239,292	-7.7
시도세전입금	1,772,211	2,211,744	24.8	2,010,587	-9.1	1,868,058	-7.1	1,909,662	2.2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7,386	8	-99.9	0	-100.0	1,984	0.0	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02,994	114,500	11.2	104,426	-8.8	114,044	9.2	118,863	4.2
교육급여보조금	8,171	9,220	12.8	10,435	13.2	10,492	0.5	9,436	-10.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567	15,034	-9.3	15,258	1.5	16,512	8.2	3,493	-78.8



○ 2025회계연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입되어야 할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04,588백만원 순증가한 4,183,654백만원으로 2.6% 증가함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송태은	02-6033-5461

15-1-2. 법정이전수입 미전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A+B)	전년도 까지 미전입 누계액 (A)	2025년도 분 확정액 (B)	2025년도 전입금액			2025년도 미전입 누계액		
				2025년도 분 (C)	지난 년도분 (D)	계 (E=C+D)	2025년도 분 (F=B-C)	지난 년도분 (G=A-D)	계 (H=F+G)
합 계	**4,666,533**	**70,000**	**4,596,533**	**4,105,712**	**77,943**	**4,183,654**	**490,821**	**-7,943**	**482,879**
지방교육세전입금	2,097,525	30,000	2,067,525	1,865,511	37,397	1,902,908	202,014	-7,397	194,616
담배소비세전입금	243,300	0	243,300	242,875	-3,583	239,292	425	3,583	4,008
시도세전입금	2,193,916	40,000	2,153,916	1,865,534	44,129	1,909,662	288,383	-4,129	284,254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0	0	0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8,863	0	118,863	118,863	0	118,863	0	0	0
교육급여보조금	9,436	0	9,436	9,436	0	9,436	0	0	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3,493	0	3,493	3,493	0	3,493	0	0	0

○ 2025회계연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입되어야 할 법정이전수입으로, 당해연도 전입금액은 4,183,654백만원이며 미전입 누계액은 482,879백만원임
○ 법정이전수입의 미전입 누계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연도분 당해연도 전입액(D)이 늘어났기 때문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송태은	02-6033-5461

15-2. 학교회계전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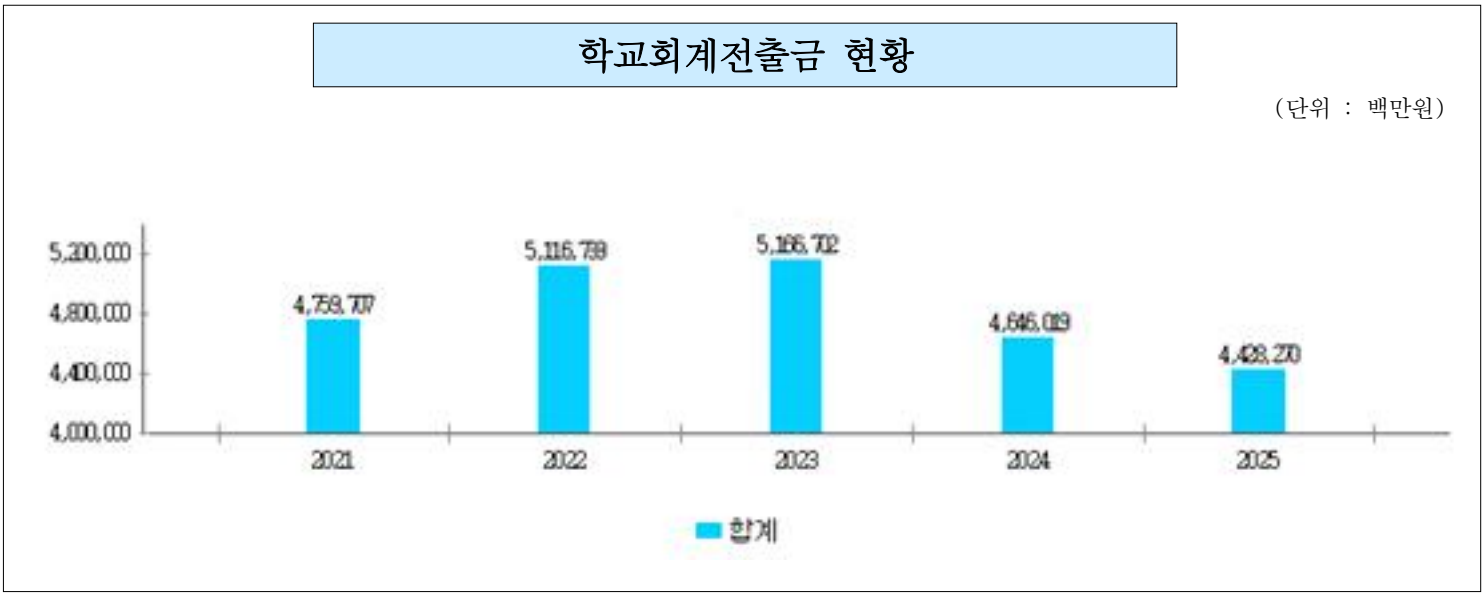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 본 항목은 '학교회계전출금' 목의 세출 정보로 성질별 세출의 '전출금등'과 상이함

■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의 교수학습활동과 운영 지원을 위해 공·사립학교로 교부하는 학교회계 전출금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2-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합계	**4,759,707**	**41.6**	**5,116,739**	**39.9**	**5,166,702**	**43.9**	**4,646,019**	**38.7**	**4,428,270**	**37.1**
공립	2,382,110	20.8	2,619,979	20.5	2,579,864	21.9	2,093,685	17.5	1,917,508	16.1
사립	2,377,597	20.8	2,496,760	19.5	2,586,838	22.0	2,552,334	21.3	2,510,761	21.1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217,749백만원 감소한 4,428,270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중은 37.1%로 감소함. 설립별로 공립은 16.1%, 사립은 21.1%의 비중을 보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이은정	02-6033-5467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박하늘	02-6033-6339

15-2-2. 공립학교 전출금(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합계	**2,382,110**	**20.8**	**2,619,979**	**20.5**	**2,579,864**	**21.9**	**2,093,685**	**17.5**	**1,917,508**	**16.1**
인건비	498,354	4.4	579,127	4.5	586,302	5.0	261,102	2.2	319,115	2.7
운영비	698,909	6.1	725,394	5.7	735,309	6.2	736,622	6.1	715,074	6.0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36,654	2.1	262,153	2.0	166,161	1.4	232,376	1.9	142,978	1.2
목적사업비 등	948,193	8.3	1,053,305	8.2	1,092,091	9.3	863,586	7.2	740,341	6.2

성질별 공립학교 전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전출금의 총 규모는 1,917,508백만원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목적사업비 등 항목이 740,341백만원(6.2%)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인건비 항목이 319,115백만원(2.7%)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이은정	02-6033-5467

15-2-3. 공립학교 전출금(학교급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합계	**2,382,110**	**20.8**	**2,619,979**	**20.5**	**2,579,864**	**21.9**	**2,093,685**	**17.5**	**1,917,508**	**16.1**
유치원	141,925	1.2	166,912	1.3	157,737	1.3	110,834	0.9	116,540	1.0
초등학교	1,159,728	10.1	1,358,703	10.6	1,371,988	11.7	1,154,749	9.6	1,022,629	8.6
중학교	668,510	5.8	666,571	5.2	641,773	5.5	490,009	4.1	457,361	3.8
고등학교	367,071	3.2	375,341	2.9	361,321	3.1	298,606	2.5	281,433	2.4
특수학교	33,966	0.3	40,385	0.3	36,531	0.3	28,115	0.2	26,847	0.2
기타학교	10,912	0.1	12,067	0.1	10,513	0.1	11,373	0.1	12,699	0.1

※ 기타학교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학교급별 공립학교 전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립학교 전출금의 총 규모는 1,917,508백만원이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022,629백만원(8.6%)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기타학교가 12,699백만원(0.1%)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이은정	02-6033-5467

15-2-4. 사립학교 지원금(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합계	**2,377,597**	**20.8**	**2,496,760**	**19.5**	**2,586,838**	**22.0**	**2,552,334**	**21.3**	**2,510,761**	**21.1**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266,413	11.1	1,337,334	10.4	1,341,260	11.4	1,367,264	11.4	1,514,674	12.7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96,951	1.7	225,687	1.8	266,356	2.3	250,875	2.1	247,591	2.1
사립학교시설지원	253,436	2.2	231,325	1.8	288,085	2.4	258,188	2.2	208,855	1.8
목적사업비 등	660,797	5.8	702,414	5.5	691,137	5.9	676,007	5.6	539,641	4.5

성질별 사립학교 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지원금의 총 규모는 2,510,761백만원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항목이 1,514,674백만원(12.7%)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사립학교시설지원 항목이 208,855백만원(1.8%)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박하늘	02-6033-6339

15-2-5. 사립학교 지원금(학교급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11,445,002	100.0	12,811,043	100.0	11,766,498	100.0	11,993,508	100.0	11,920,342	100.0
합계	**2,377,597**	**20.8**	**2,496,760**	**19.5**	**2,586,838**	**22.0**	**2,552,334**	**21.3**	**2,510,761**	**21.1**
유치원	235,972	2.1	280,222	2.2	285,186	2.4	289,692	2.4	305,851	2.6
초등학교	28,461	0.2	31,561	0.2	32,013	0.3	32,681	0.3	35,113	0.3
중학교	544,720	4.8	563,199	4.4	573,179	4.9	577,552	4.8	553,387	4.6
고등학교	1,457,864	12.7	1,507,035	11.8	1,575,000	13.4	1,519,133	12.7	1,479,533	12.4
특수학교	108,497	0.9	113,198	0.9	117,941	1.0	122,609	1.0	123,659	1.0
기타학교	2,083	0.0	1,545	0.0	3,519	0.0	10,666	0.1	13,218	0.1

※ 기타학교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학교급별 사립학교 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지원금의 총 규모는 2,510,761백만원이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고등학교가 1,479,533백만원(12.4%)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기타학교가 13,218백만원(0.1%)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박하늘	02-6033-6339

15-3.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제8항
○ 해당연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기준

■ 사립학교 법인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위하여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전입 현황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B/A×100)	**28.3**	**28.8**	**1.7**	**28.9**	**0.4**	**29.9**	**3.5**	**30.3**	**1.2**
법인의 법정부담금(A)	100,682	99,828	-0.8	105,425	5.6	104,514	-0.9	109,170	4.5
법정부담금 전입액(B)	28,503	28,745	0.8	30,490	6.1	31,275	2.6	33,055	5.7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인 법정부담금은 109,170백만원, 법정부담금 전입액 33,055백만원으로 법정부담 비율은 30.3%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강민구	02-6033-6336

15-4. 이월액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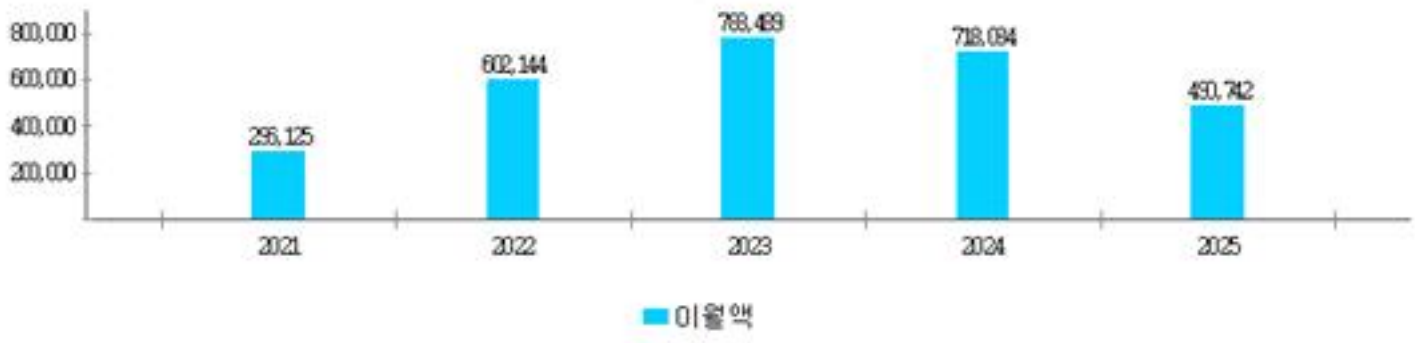
■ 이월액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월액 및 예산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산현액(A)	12,162,448	100.0	14,929,457	100.0	14,388,007	100.0	13,403,841	100.0	12,658,203	100.0
이월액(B=C+D+E)	**296,125**	**2.4**	**602,144**	**4.0**	**783,489**	**5.4**	**718,084**	**5.4**	**490,742**	**3.9**
명시이월액(C)	72,449	0.6	325,906	2.2	263,491	1.8	58,306	0.4	18,234	0.1
사고이월액(D)	223,676	1.8	276,238	1.9	519,998	3.6	659,778	4.9	472,508	3.7
계속비이월액(E)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월액은 전년대비 227,342백만원 순감소한 490,74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9%)이며, 전년대비 31.7% 감소함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이은정	02-6033-5467

15-5. 집행잔액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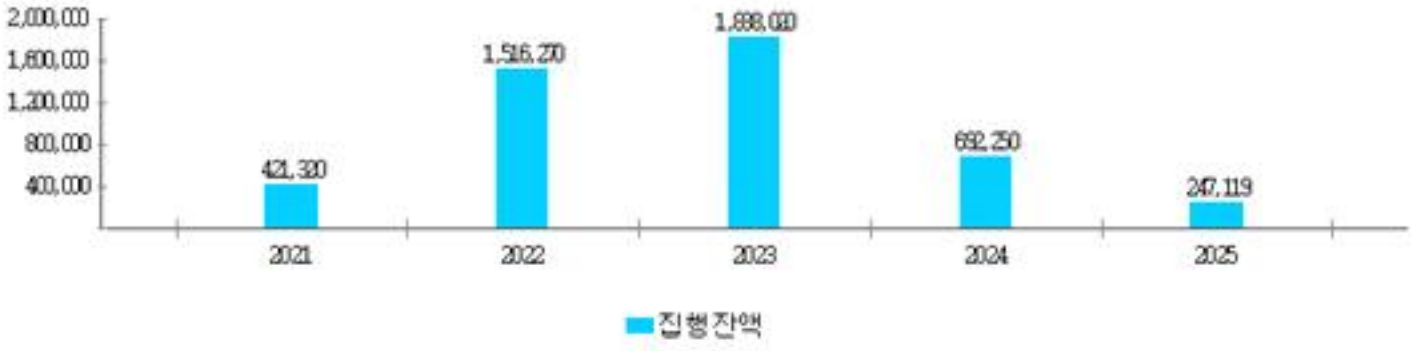
■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한 금액(계획변경 및 취소·예산절감·지급사유 미발생·사업종료에 따른 순수잔액 및 시설비 낙찰차액 등)을 말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집행잔액 및 예산현액 대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산현액(A)	12,162,448	100.0	14,929,457	100.0	14,388,007	100.0	13,403,841	100.0	12,658,203	100.0
세출결산액(B)	11,445,002	94.1	12,811,043	85.8	11,766,498	81.8	11,993,508	89.5	11,920,342	94.2
다음연도이월액(C)	296,125	2.4	602,144	4.0	783,489	5.4	718,084	5.4	490,742	3.9
집행잔액(D=A-B-C)	**421,320**	**3.5**	**1,516,270**	**10.2**	**1,838,020**	**12.8**	**692,250**	**5.2**	**247,119**	**2.0**
인건비	178,649	1.5	122,802	0.8	81,510	0.6	73,162	0.5	91,938	0.7
시설비	90,298	0.7	133,443	0.9	343,647	2.4	232,995	1.7	61,762	0.5
전출금 등	110,233	0.9	93,968	0.6	152,199	1.1	75,424	0.6	43,583	0.3
예비비 등	7,714	0.1	1,089,869	7.3	66,131	0.5	27,270	0.2	23,158	0.2
기타	34,426	0.3	76,187	0.5	1,194,532	8.3	283,399	2.1	26,677	0.2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445,131백만원 순감소한 247,119백만원(예산현액 대비 2.0%)이며, 전년대비 64.3% 감소함
○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91,938백만원, 시설비 61,762백만원, 전출금 등 43,583백만원, 예비비 등 23,158백만원, 기타 26,677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15-6. 금고현황

○ 법적근거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15-6-1. 금고 지정현황

■ 금고 지정은 금융기관 중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고명	계약방식	약정기간	약정체결일자	수의계약시 사유
농협(중앙회)	경쟁방법	4년	2024-07-25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금고는 농협은행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윤진주	02-6033-6362

15-6-2. 금고 협력사업비 현황

■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에 대한 정보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금고명	협력사업명	세입편성액	수납액	세출편성액	세출 집행액
	합계	**3,750**	**3,750**	**0**	**0**
농협(중앙회)		3,750	3,750	0	0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3,750백만원임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윤진주	02-6033-6362

15-7. 연말지출 비율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 교육청이 지출하는 일부 항목에 대한 연말(11월~12월) 집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5-7-1.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월 ~ 12월) 지출액(B)	비율(B/A)x100
합계	**10,842**	**4,318**	**39.83**
연구개발비	1,856	1,184	63.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887	525	59.2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680	179	26.34
학교특별교육지원비	5,701	1,891	33.16
사립학교특별교육비지원	1,717	539	3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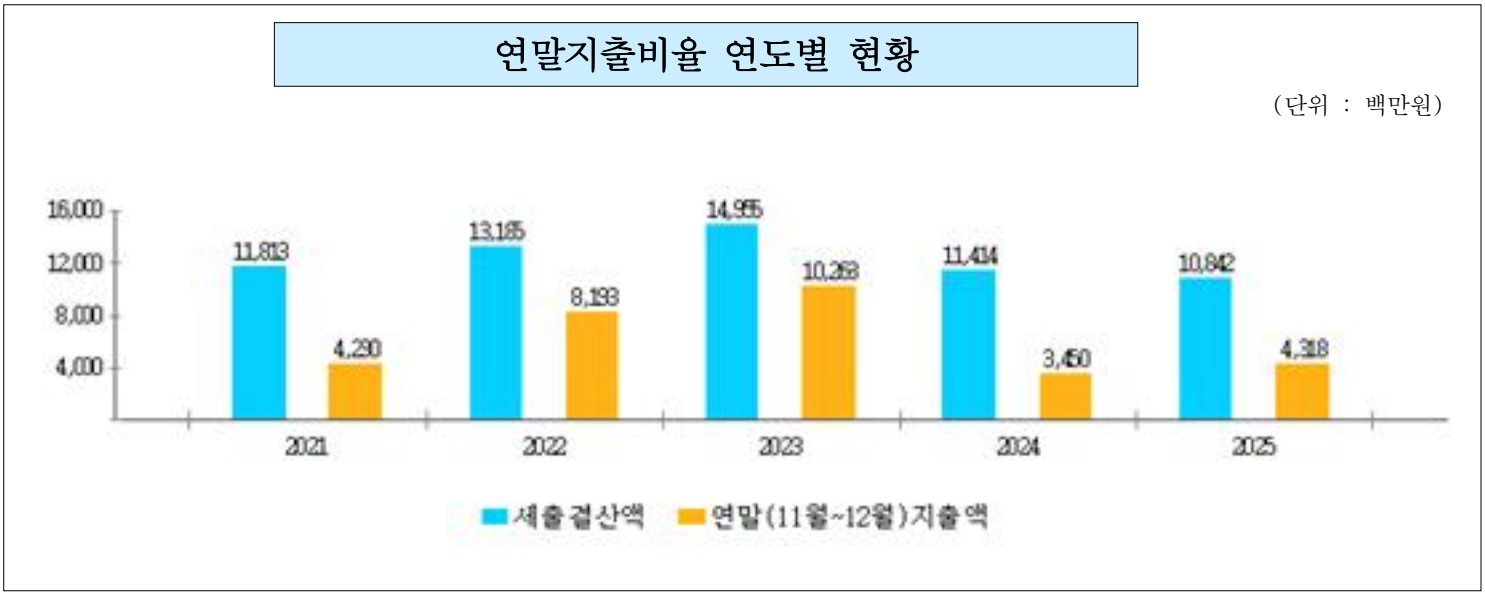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연말지출 비율은 39.8%입니다.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15-7-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말지출비율 (B/A×100)	35.81	62.14	68.63	30.23	39.83
세출결산액(A)	**11,813**	**13,185**	**14,955**	**11,414**	**10,842**
연말(11월~12월)지출액(B)	**4,230**	**8,193**	**10,263**	**3,450**	**4,318**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연말지출 비율은 39.83%로 전년대비 9.60%p 순증가함

작성부서	작성자	연락처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김유진	02-6033-6364

■ 특수공시

1 신청사 건립 사업

사업목적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6. ~ 2026. 2.

○ 위　　치: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27(후암동 168)

○ 대　　상: 지하3층/ 지상6층

○ '25년 사업비: 86,171백만원(※ 신청사건립기금 <100%>)

□ 추진상황

○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률: 100%, 업무환경 구성 및 개청준비(2025.12. 기준)

□ 추진성과

○ 신청사 건립공사 적기 완수

○ 신청사 사무환경조성을 위한 계약추진

○ 스마트오피스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계약추진(H/W, S/W, 네트워크)

○ 전직원 대상 스마트오피스 인식개선 교육

○ 26년 상반기 이전을 위한 이사계획 수립

○ 대·내외 홍보 및 협력추진(신청사 명칭공모, 지하철 역명변경, 용산구청 MOU 체결 및 주민간담회, 뉴스레터 홍보 등)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22년이전	'23년	'24년	'25년
사 업 비	129,817	9,217	6,826	27,658	86,171

2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사업목적

○ 교육(지원)청-자치구-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 학생 주도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1월 ~ 2026. 12월

○ 대　　상: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및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내　　용: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 및 학생성장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구청,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자치구 단위의 교육협력 체제

○ '25년 사업비: 4,919백만원

□ 추진상황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23. 7. 26. 전부개정)

○ 2025~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지구 지정(25개 자치구 대상, '25.3월)

□ 추진성과

○ 서울미래교육지구 명칭 변경 계획 알림: '25.2월

○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개최('25. 4. 7.)

○ 2025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 지역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역연계중점학교 운영(초 40교, 중 30교, 고 12교, 특수 2교 총 84교 운영),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지역연계교육과정 영역 1팀) 운영, 지역자원자료집 제작, 초등 3학년 보조교과서 인쇄·배부, 중등마을알기 배움책 수정·보완

- 자치구 대상 사업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별 1억원, 총25억원 교부)

교육지원청	자치구	대상	사업명(추진 실적)
동부	동대문구	초등 21교, 중학 15교, 고등 13교(총 49교), 지역아동센터 · 키움센터 11개소	2개 분야 5개 사업 / 대학연계 학과체험(경희대 · 서울시립대, 76명), 영어랑놀이랑(60명), 우리마을멘토단(11개소 33개 프로그램), 미래교육박람회(1,230명), 찾아가는 AI코딩교육(초등 10교 · 중등 1교)
	중랑구	초 24교, 중 14교, 고 10교(총 48교), 유관기관 217개, 청소년 16,830명	4개 분야 12개 사업 / 마을연계 환경 · 식생활교육, 장애이해교육, 어린이 놀이한마당, 청소년 역량강화 방학프로그램 · 꿈축제, 미래교육박람회 등
서부	마포구	관내 초 · 중 · 고 및 청소년시설	2개 분야 4개 사업 / 청소년 동아리(15개 기관 36팀 565명), 엄빠랑 캠프(40가족 80명), 미래교육 페스티벌(3,000여 명),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습공동체(20교 144명)
	서대문구	관내 초 · 중 · 고 40교	4개 사업 / 새학년 디딤돌 프로젝트(24교), 미래창의체험 놀이터(5교), 청소년 JUMP-UP 교육지원(13교), 서대문구-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20교)
	은평구	은평구 학생 · 교원 · 학부모 (학교 및 지역기관)	3개 분야 9개 사업 / 청소년 전일제 마을로 등교(중7교), 전일제 내일로 드림업(중8교), 은평대전 진로멘토링(중18교 · 일반고10교), 마을누림프로젝트(초3교), 학교맞춤형 교육활동(초중고 14교), 학생맞춤통합지원(초중고 26교), 건강한 밥상체험(초10교), 학교폭력예방사업, 교육협력체제운영
남부	구로구	관내 56교(초26 · 중14 · 고14 · 특수2), 교육관련 기관 70개	3개 운영과제 5개 사업 / 구로ON마을교육박람회(4,617명),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 역량강화(10교), 청소년 예술활동 지원(125+90+123+284명), 온마을교육대학 · 학부모연수(181명), 구로청소년축제(3,000명)
	금천구	초 18교, 중 10교, 고 6교(총 34교), 기관 2개, 청소년 5,967명	3개 분야 4개 사업 / 4대 체험학교 연계 자율프로그램(23교 5,843명), 청소년 리더십 캠프(29명), 금천사이언스큐브 AI교실(65명), 금천 청소년 과학탐험대(30명)
	영등포구	관내 초 · 중 · 고 학생 · 학부모 · 주민	4개 사업 / 청소년 진로축제 '자몽'(5,595명), 청소년 진로탐색 특강 · 포럼(618명), 과학문화 체험프로그램(300명),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 역량강화(초중 10교)
북부	노원구	초 40교, 중 20교, 고 23교, 특수 2교(총 85교), 기관 115개, 청소년 52,665명	3개 분야 15개 사업 / 운영협의체 · 분과협의회, HOT학생회(13교), 고등학교 프로젝트 진로지원(12교 1,007명), 마중물청소년동아리(40팀), 청소년창업동아리 · 아티스트장(3,364명), 꿈꾸는 마을 방과후(30센터), 초등상담사(13교), 노원미래교육지구 박람회(9,100여 명) 등
	도봉구	관내 초 · 중 · 고 (취약계층 포함)	5개 사업 / 만들고 치유하는 마음의 공작소(취약계층 청소년 170명), 4차산업 지역상품 개발 경진대회(9팀 97명), 디지털 리터러시 운영(8학급 160명), 진로 · 진학 동기부여 대학탐방(4개 대학 192명), 우리동네 돌봄터 가요(217명)
중부	용산구	초등학교 및 관내 초 · 중 · 고 22교	3개 사업 / 교실 속 숲 만들기 기후위기 환경교육(초3교 342명), 전환기 프로그램(초13교 979명), 문화체험 프로그램(초중고 22교 5,534명)
	종로구	초 13교, 중 9교, 고 14교(총 36교)	2개 분야 5개 사업 / 종로창의교실(18교 3,151명) · 창의프로젝트(8교 1,111명), 청소년 축제 〈통통〉(50여 부스 12개교 동아리), 어린이 역사 골든벨(11교 150명), 종로 모던 멘토링(360명), 진학 · 과학 특강(서울과학고 연계, 멘토링 54명 · 과학캠프 289명)
	중구	관내 초 · 중 · 고	3개 사업 / 청소년 진로 축제(2,300여 명, 만족도 90점), 중구 · 부안군 교육문화 교류(40명, 만족도 94점), 서울대 연계 꿈꾸는 나의 미래(96명, 만족도 99점)
강동송파	강동구	초 29교, 중 19교, 고 14교, 특수 2교, 청소년시설 22개 등, 청소년 69,417명	2개 분야 7개 사업 / 무대 위의 그림책 · 그림자극(초8교 879명), 생태 대탐험(1,114명), 강동애프터스쿨(30명),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중고27교 96팀), 슬기로운 학급생활(초30교 3,278명), 학교로 찾아가는 경제교실(초8교 1,624명), 강동교육주간(4,000여 명)
	송파구	92교(초41 · 중29 ·	2개 분야 8개 사업 / 교육박람회(3,000여 명), 청소년 영화제

		고20 · 특수2), 교육센터 4개소, 학생 58,733명	(15팀 출품), 청소년 동아리 '뭐든지'(30개 480명), 찾아가는 오케스트라(12교 4,598명), 글로벌 송파 캠퍼스 영어캠프(222명), 방과후 채움교실(15교 300명), 찾아가는 학습컨설팅(22교 2,620명), 경계선지능인 교육지원(31교 80명)
강서 양천	강서구	82교(초35 · 중22 · 고23 · 특수2), 기관 10개, 청소년 43,865명	3개 분야 11개 사업(11,051명) / 전환기 프로그램(10교 1,838명), 디지털 방과후 동아리(12교 157명), LG 디스커버리랩(14교 121명), 신산업분야 진로프로그램(2교 48명), AI · 로봇교실(4교 889명), 특성화고 취업역량 교육(4교 379명), AI 천문우주과학 융합(6교 450명), 청소년 미래교육한마당(21교 800명), 드림잡 · 학부모잡(21교 6,369명) 등
	양천구	관내 64교 및 유관기관, 협력강사 180명, 학부모 네트워크 118명	3개 분야 12개 사업 / 미래교육지구 협의체 · 학부모 네트워크(2개), 문화예술 · 창의체험 협력강사 지원 등(3개), 신나는 영어 뮤지컬 교실 등 학생맞춤통합지원(7개)
강남 서초	강남구	관내 초 · 중 · 고 · 특수학교	3개 사업 / 청소년 바둑 페스티벌(231명), 수업지원강사 지원(16교), 청소년 AI 맞춤형 진로 로드맵(9교 26학급)
	서초구	관내 초등학생 · 유아 · 학부모 50가정, 초등학생 440명	3개 사업 / 도슨트 투어(만족도 97~100%), 서초 아트힐링룸(50가정), 겨울방학 캠프(원어민 영어 · 과학실험, 440명)
동작 관악	동작구	초 21교, 중 16교, 고 8교(총 45교), 기관 3개	2개 분야 7개 사업 / 동작미래교육사업 18개 과정 · 미래과학페스티벌(7,331명), e스포츠 대회(2,132명) · 해외 과학창의 캠프, 학부모 · 자녀성장 특강(600명), 청소년의회(18명), 미래진로직업체험(7,140명) · 청소년 동아리(5,935명), 로봇 · 드론 경진대회, 부모와 함께하는 코딩교육
	관악구	초 10교, 중 16교, 고 17교(총 43교), 기관 70개, 청소년 3,563명	3개 분야 5개 사업 / 미래학교 학습공동체, 학교 밖 실험실 '미래채움GO'(320명), 성과공유회(100여 명), 마음의정원(3,000여 명), 'Game 디톡스!'(초등 223명)
성동 광진	성동구	초 21교, 중 11교, 고 7교(총 39교)	1개 분야 4개 사업 / 성동 온마을체험학습 축제(1,500여 명), 무브앤조이 꿈터교실(취약계층 527명), AI 아이디어 챌린지(초중생 53명), 지역연계 교육자료 제작 · 보급(280부)
	광진구	관내 초등학교 8~9개교 중심	4개 사업 /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8교 1,500명), 디지털 윤리교육(8교 1,624명), 학교폭력예방교육(9교 1,419명), 광진청소년 페스티벌(2,000여 명)
성북 강북	성북구	초 29교, 중 18교, 고 13교, 특수 1교(총 61교), 유치원 46교	3개 분야 6개 사업 /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마을강사 학교연계(37명 43교 66개 프로그램), 교육소통워크숍(43교 89명), 고3 맞춤형 프로그램(9교 16개 강의), 청소년 축제 까르페디엠(9교 19개 동아리), 창의뿜뿜 체험활동(중13교 18개 프로그램)
	강북구	관내 37교(초14 · 중13 · 고7 · 특수3)	2개 분야 4개 사업 / 강북구 스마트팜센터 체험(9교 23학급 448명), 찾아가는 미래과학교실(초35학급 · 중17학급),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프로그램(마을교사 26명 625회 6,414명), 학습 · 심리 지원(초6교 · 중5교 · 고2교)

※ 2025 자치구별 추진 실적 보고서 내용 요약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23년	'24년	'25년
사 업 비	27,920	14,285	8,716	4,919

3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목적

◦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단위 예산 편성 · 추진으로 학교 공사부담 경감 및 원활한 학사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위　　치 : 각 사업별 대상기관

○ 대　　상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 단위사업 : 노후시설개선(화장실개선 등 12개 사업)

○ '25년 사업비 : 626,731백만원

※ 재원별 확보내역: 특별교부금 50,213백만원<8.0%>, 서울시전입금 1,498백만원<0.2%>

□ 추진상황

○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학교 공사부담 경감 및 원활한 학사운영 지원

□ 추진성과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

구　분	화장실	전기시설	냉난방	창호	외벽	소방시설
물량(건)	123	138	194	80	47	115
구　분	방수	바닥	도장	외부환경	기타	급식시설
물량(건)	143	67	53	58	1,565	198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으로 시행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대상사업(3개년)의 체계적 사업관리로 학교별 공사횟수 감축 기여
- 석면해체・내진보강사업 해소 촉진 및 연계한 연차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집행률 제고

○ 2024~2026년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으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 및 공개

- 공개물량: 대상교 897교, 사업 수 2,017건, 총소요액 9,245억원
- 기준단가 평균 22.7% 상승[단가인상: 29개 분야, 단가신설: 4개 분야]
- 화장실 개선주기 5년 단축[20년→15년]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위생환경 조성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사 업 비	4,825,176	608,946	680,493	859,328	1,147,515	902,163	626,731

[붙임1]

2026년 시·도교육청 개별공시 예·결산 공시항목 비교

구분		결산기준(82개)		예산기준(당초, 최종)(32개)	
		분류	항목명	분류	항목명
일반현황		1-1.학교수 및 학급수	1.학교수 및 학급수(공·사립)		
		1-2.학생수	1.학생수(공·사립)		
		1-3.교육행정기관수	1.교육행정기관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1-4.교직원수	1.교직원수(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공통공시	총괄	1.공통공시 총괄	1.공통공시 총괄	1.공통공시 총괄	1.공통공시 총괄
	세입·세출 운용 상황	2-1.재정규모	1.총계 2.순계 3.통합재정규모	2-1.재정규모	1.총계 2.순계 3.통합재정규모
		2-2.교육비특별회계 장별 세입	1.총괄 2.이전수입 3.자체수입 4.차입 및 기타 5.내부거래	2-2.교육비특별회계 장별 세입	1.총괄 2.이전수입 3.자체수입 4.차입 및 기타 5.내부거래
		2-3.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세출	1.정책사업별 세출 2.세부사업별 세출	2-3.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세출	1.기능별·정책사업별 세출 2.세부사업별 세출
		2-4.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1.총괄 2.인건비 3.물건비 4.이전지출 5.자본지출 6.상환지출 7.전출금등 8.예비비및기타 9.내부거래	2-4.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1.총괄 2.인건비 3.물건비 4.이전지출 5.자본지출 6.상환지출 7.전출금등 8.예비비및기타 9.내부거래
		2-5.성과보고서	1.총괄 2.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2-5.성과계획서	1.성과계획서
	재무제표	3.재무제표	1.재정상태표 2-1.기능별 재정운영표 2-2.성질별 재정운영표 3.순자산변동표		
	채권관리	4.채권관리	1.총괄 2.채권 연도별 현황		
	기금	5.기금운용	1.기금 조성 총괄 2.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 3.기금 연도별 현황	3.기금운용	1.기금 연도별 현황
	공유재산	6.공유재산 및 물품	1-1.공유재산 현재액 1-2.물품 현재액 2-1.공유재산 연도별 현황		

구분	결산기준(82개)		예산기준(당초, 최종)(32개)	
	분류	항목명	분류	항목명
		2-2.물품 연도별 현황 3.폐교자산 4.폐교자산 연도별 활용률		
지역통합재정통계	7.지역통합재정통계	1.지역통합재정통계	4.지역통합재정통계	1.지역통합재정통계
중기지방재정계획			5.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1.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성인지	8.성인지 결산	1.성인지 결산	6.성인지 예산	1.성인지 예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9.예산 편성 기준별 운영상황	1.업무추진비	7.예산 편성 기준별 운영상황	1.업무추진비
재정운용상황	10-1.재정지표	1.재정자주도 2.통합재정수지 3.행정운영경비 비율 4.예비비 비율 5.기금전출금 비율	8-1.재정지표	1.재정자주도 2.통합재정수지 3.행정운영경비 비율 4.예비비 확보율 5.기금전출금 비율
	10-2.지방부채	1.통합부채 2.우발부채 3.지방채 부담률 4.민간투자사업(BTL)		
	10-3.재정분석	1.재정분석		
	10-4.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1.감사원 및 교육부 등 각종 감사결과		
	10-6.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1.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10-7.예산 집행비율	1.예산 집행비율	8-2.주민참여예산	1.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재정건전화관리계획	11.재정건전화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재정건전성관리계획	12.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13-1.투자심사 대상사업	1.투자심사 대상사업		
	13-2.지방채 발행사업	1.지방채 발행사업		
	13-3.민간투자사업(BTL)	1.민간투자사업(BTL)		
	13-4.보증채무사업	1.보증채무사업		

구분		결산기준(82개)		예산기준(당초, 최종)(32개)	
		분류	항목명	분류	항목명
			2.보증채무연도별 현황 3.보증채무 세부내역		
	지방 보조금	14.지방보조금(민간보조)	1.지방보조금(민간보조)연도별 현황 2.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집행내역 3.지방보조금(민간보조)성과평가 결과 4.지방보조금(민간보조)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5.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1.지자체 법정이전수입	1.법정이전수입 연도별 현황 2.법정이전수입 미전입내역		
		15-2.학교회계전출금	1.총괄 2.공립학교 전출금(성질별) 3.공립학교 전출금(학교급별) 4.사립학교 지원금(성질별) 5.사립학교 지원금(학교급별)		
		15-3.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1.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15-4.이월액	1.이월액		
		15-5.집행잔액	1.집행잔액		
		15-6.금고 현황	1.금고지정 현황 2.금고 협력사업비 현황		
		15-7.연말지출 비율	1.연말지출 비율 2.연말지출 연도별 현황		
특수공시		○ 당해 시·도교육청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및 사업 등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선정한 공시항목(가급적 3건 이상)			

[붙임2]

지방교육재정 공시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5.5.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제36조 및「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 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 5.28., 2014.11.19., 2017.7.26.> ④「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 5.28.,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법률 제13283호(2015.5.13.) 제1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지방자치법」제139조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1.1.12.>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 11.19., 2017.7.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8.29.]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2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전문개정 2014.11.28.]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9.6.]
제37조의4(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7조의3에서 이동 <2023. 4. 11.>]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2024. 1. 9.>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41조의2에서 이동 <2024. 1. 9.>]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 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3.3.> [제목개정 2020.3.3.]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28., 2020. 3. 3., 2021. 1. 5., 2021.12.31.>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12. 31., 2021. 1. 5.>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11.28.]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6.>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 (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4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 11. 28.]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28.]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 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6., 2014. 11. 28., 2021. 12. 16.> 1.「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예산보고서 2.「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지출에서 순 수입을 뺀 금액 나.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2018.3.27.> [전문개정 2011.8.4.]	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나. 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년도분 과오납 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다. 이하 "지방세 징수율"이라 한다)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2023.8.16.>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2018.3.27.,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23.8.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재정 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본조신설 2011.3.8.] [제목개정 2018.3.27.]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8. 12. 31.]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18. 12. 31.>]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①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 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본조신설 2011.3.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목개정 2018.3.27.]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31., 2023. 9. 26.>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 11. 28.> ④ 삭제 <2014. 11.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 10. 16., 2021. 1. 1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15. 5. 13.]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 11. 15.>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본조신설 2014.5.28.]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30.> 1.「지방재정법」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 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30.> [전문개정 2017.4.18.]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1.「초.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도 2.「지방재정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재정보고서의 내용 분석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도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2.26.]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① 교부금이 산정자료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되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4.18.]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8.4.>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3. 금고지정 평가기준

[3]『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현재 시·도교육청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10.1.부터 시·도교육청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금액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도교육청 공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③『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시·도교육청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